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9.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I. 결산 개요	3
1. 현 황	3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
II. 주요 현안 분석	15
1.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	15
1-1. 재해대책비(융자) 사업과 지역특화 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목적예비비 불용 및 이월 부적절	16
1-2. 농촌지역폐기물수거 사업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 부족	22
2.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양곡관리비의 증가와 쌀 농업 개선과제	25
2-1. 정부관리양곡의 재고 급증에 따른 관리비용 감축 필요	26
2-2. 농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실적제고 필요	29
III. 개별 사업 분석	33
1.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3
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은 집행지침 준수 필요	38

CONTENTS

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 중심의 융자지원 부적절	43
4. 산지생태복원사업의 실적 제고방안 마련 필요	47
5.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검토 필요	50
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대도시형 농산물직매장의 확대 설치 필요	54
7. 폐업지원 사업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56
8.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은 데이터 공개 필요	64
9.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68
10.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말 예방백신에 대한 걱정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 논의 필요	72
11. 스마트원예단지조성사업 및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익 목적에 따른 매각 대상의 구체화 필요	77
12.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인력운영비 중심의 예산 집행 필요	81
13. 정책연구개발 사업(R&D)의 이월 최소화 필요	84
14.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은 타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 축소 부적절	8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91

[해양수산부]

I. 결산 개요	95
1. 현 황	95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0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03



CONTENTS

II. 개별 사업 분석	104
1. 시험연구비 목적 외 사용	104
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이월 문제	107
3. 어업지도관리 사업 예비비 요건 미부합	110
4.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집행관리 필요	113
5.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적 미흡	117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	119
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 성과점검 및 사업관리 필요	122
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사전계획 철저	128
9.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미흡	132
10.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성과 제고 필요	135
1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민간사업자 사업포기 최소화 등	139
12. 천일염산업육성 사업 품질인증 성과개선 및 전략다변화 필요	142
13.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사업 사업목적 달성 미흡	145
14.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실시계획 및 심사위원 구성 보완 필요	147
※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50

[농촌진흥청]

I. 결산 개요	153
1. 현 황	153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9



CONTENTS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60
II. 개별 사업 분석	161
1.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의 예비비 지출근거 마련 필요	161
2.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 마련 필요	168
3.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의 경작 품목 다양화 필요	173
4. 농자재관리 및 평가의 내역사업인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의 확대 필요 ..	175
5. 농업기술사업화지원의 사업화 실적 제고 필요	178
6. 조사료 관련 연구과제의 협업추진체계 구축 필요	181
※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86

[산림청]

I. 결산 개요	189
1. 현 황	189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6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7
II. 주요 현안 분석	198
1.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의 문제점	198
1-1.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적시 집행 필요	199
1-2. 재해대책 관련 사업과의 유사성	202



CONTENTS

III. 개별 사업 분석	204
1. 목적예비비 배정 사업 실집행 저조	204
2.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사업관리 철저	207
3. 남북산림협력 사업 대북지원용 양묘장 운영계획 수립 필요	210
4. 산림경영인증 제도 확대방안 마련 필요	212
5. 사유림 매수단가 및 임대단가 현실화 필요	215
※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218

[해양경찰청]

I. 결산 개요	221
1. 현 황	221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26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7
II. 개별 사업 분석	228
1. VTS구축운영 사업 인력통합방안 마련 필요 등	228
2. 내구연한 도래 함정 안전진단 실시 필요	232
3. 마음돌봄 프로그램 이용 확대 및 내실화 필요	236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I. 결산 개요	241
1. 현 황	241



농림축산식품부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조 5,946억 7,000만원이며, 13조 7,397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13조 7,236억 8,000만원을 수납하고 159억 2,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2,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392	20,392	20,392	11,147	7,263	3,884	0	65.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740,144	9,745,244	9,745,244	11,372,036	11,361,563	10,473	0	99.9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42,925	42,925	42,925	18,688	18,688	0	0	10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000	9,000	9,000	9,060	9,060	0	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	18,854	18,854	18,854	20,897	20,020	877	0	95.8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255	1,758,255	1,758,255	2,307,901	2,307,086	691	124	99.9
합계	11,589,570	11,594,670	11,594,670	13,739,729	13,723,680	15,925	124	99.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9조 9,234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2.3%인 18조 3,92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4,557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755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116,794	6,116,794	6,268,906	6,235,556	9,317	24,033	99.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549,013	8,552,038	10,244,157	8,986,815	211,329	1,046,013	87.7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계	45,318	45,318	44,118	39,447	0	4,671	89.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0	0	0	0.0
지역발전특별회계	1,344,445	1,344,445	1,608,009	1,372,155	235,124	730	85.3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255	1,758,255	1,758,255	1,758,152	0	103	99.9
합계	17,813,825	17,816,850	19,923,445	18,392,125	455,770	1,075,550	92.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8조 6,558억 1,200만원이며, 10조 350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9%인 9조 2,253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8,095억 5,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7,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73,927	2,373,927	2,373,927	2,385,246	2,385,223	23	0	99.9
농지관리기금	2,579,759	2,579,759	2,579,759	4,672,559	3,867,966	804,419	174	82.8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101,960	1,101,960	1,101,960	603,520	603,520	0	0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510,777	510,777	510,777	508,674	508,674	0	0	100.0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706,004	706,004	706,004	663,209	660,831	2,378	0	99.6
축산발전기금	1,052,904	1,052,904	1,052,904	1,023,636	1,020,898	2,738	0	99.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30,481	330,481	330,481	178,198	178,198	0	0	100.0
합계	8,655,812	8,655,812	8,655,812	10,035,042	9,225,310	809,558	174	9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8조 6,573억 6,400만원이며, 이 중 106.6%인 9조 2,253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786억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73,927	2,373,927	2,373,927	2,385,223	0	58,964	100.5
농지관리기금	2,579,759	2,579,759	2,579,759	3,867,966	0	71,887	149.9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101,960	1,101,960	1,101,960	603,519	0	541,476	54.8
양곡증권정리기금	510,777	510,777	510,777	508,674	0	5,444	99.6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706,004	706,004	706,004	660,831	127	189,878	93.6
축산발전기금	1,052,904	1,052,904	1,054,456	1,020,898	1,793	11,005	96.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30,481	330,481	330,481	178,198	0	0	53.9
합계	8,655,812	8,655,812	8,657,364	9,225,309	1,920	878,654	106.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 6,985억 800만원(13.3%)이 증가한 22조 9,48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97억 4,400만원(0.4%)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2,287,092	11,589,570	11,594,670	13,723,680	2,129,010	1,436,588
기금	10,761,642	8,655,812	8,655,812	9,225,310	569,498	△1,536,332
합계	23,048,734	20,245,382	20,250,482	22,948,990	2,698,508	△99,7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1,447억 7,200만원(4.3%)이 증가한 27조 6,174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275억 원 8,100만원(3.2%)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7,783,373	17,813,825	17,816,850	18,392,125	575,275	608,752
기금	10,761,642	8,655,812	8,655,812	9,225,309	569,497	△1,536,333
합계	28,545,015	26,469,637	26,472,662	27,617,434	1,144,772	△927,5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산은 64조 6,247억 9,200만원, 부채는 10조 1,134억 7,000만원으로 순자산은 54조 5,113억 2,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7조 8,247억 5,800만원, 투자자산 11조 5,057억 2,400만원, 일반 유형자산 44조 7,340억 2,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353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469억 8,700만원(6.4%) 증가하였다.

부채는 유동부채 1조 6,826억 6,000만원, 장기차입부채 5조 4,050억 6,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조 6,568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145억 3,400만원(6.6%) 감소하였다. 이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감소 등에 따른 유동 부채 1조 4,583억 5,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64,624,792	64,377,805	246,987	0.4
Ⅰ. 유동자산	7,824,758	8,355,733	△530,975	△6.4
Ⅱ. 투자자산	11,505,724	10,167,081	1,338,643	13.2
Ⅲ. 일반유형자산	44,734,023	45,259,140	△525,117	△1.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24,974	10,688	14,286	133.7
Ⅵ. 기타비유동자산	535,314	585,163	△49,849	△8.5
부 채	10,113,470	10,828,004	△714,534	△6.6
Ⅰ. 유동부채	1,682,660	3,141,015	△1,458,355	△46.4
Ⅱ. 장기차입부채	5,405,063	5,325,069	79,994	1.5
Ⅲ. 장기충당부채	368,874	224,744	144,130	64.1
Ⅳ. 기타비유동부채	2,656,873	2,137,176	519,697	24.3
순 자 산	54,511,323	53,549,801	961,522	1.8
Ⅰ. 기본순자산	9,725,754	9,725,75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0,237,312	9,095,298	1,142,014	11.2
Ⅲ. 순자산 조정	34,548,257	34,728,749	△180,492	△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조 6,205억 3,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1

조 8,870억 5,100만원, 관리운영비 3,227억 6,400만원, 비배분비용 9,875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조 2,665억 1,3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5,003억 7,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조 5,003억 7,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14억 6,000만원(9.6%) 감소한 9조 4,305억 2,100만원이며, 이는 투자증권감액손실, 외환차손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1조 2,653억 4,2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1조 8,614억 600만원)과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1조 1,696억 9,500만원),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프로그램(1조 1,406억 8,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127억 4,700만원과 경비 1,100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감액손실 3,922억 3,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620,538	8,900,536	720,002	8.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1,887,051	10,418,044	1,469,007	12.4
나. 프로그램 수익	2,266,513	1,517,508	749,005	33.0
II. 관리운영비	322,764	310,789	11,975	3.9
III. 비배분비용	987,591	2,252,933	△1,265,342	△56.2
IV. 비배분수익	1,500,372	1,032,276	468,096	45.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430,521	10,431,981	△1,001,460	△9.6
VI. 비교환수익 등	1,268,701	1,395,488	△126,787	△9.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161,820	9,036,493	△874,673	△9.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53조 5,498억 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4조 5,113억 2,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615억 2,200만원(1.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8,746억 7,300만원 감소한 반면, 조정항목이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체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21조 3,133억 8,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2조 1,095억 4,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3억 2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871억 2,600만원, 기타 순자산의 감소 1,089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53,549,801	54,237,097	△687,296	△1.3
II. 재정운영결과	8,161,820	9,036,493	△874,673	△9.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303,833	9,679,836	△376,003	△3.9
IV. 조정항목	△180,492	△1,330,639	1,150,147	86.4
V. 기말순자산(I-II+III+IV)	54,511,323	53,549,801	961,52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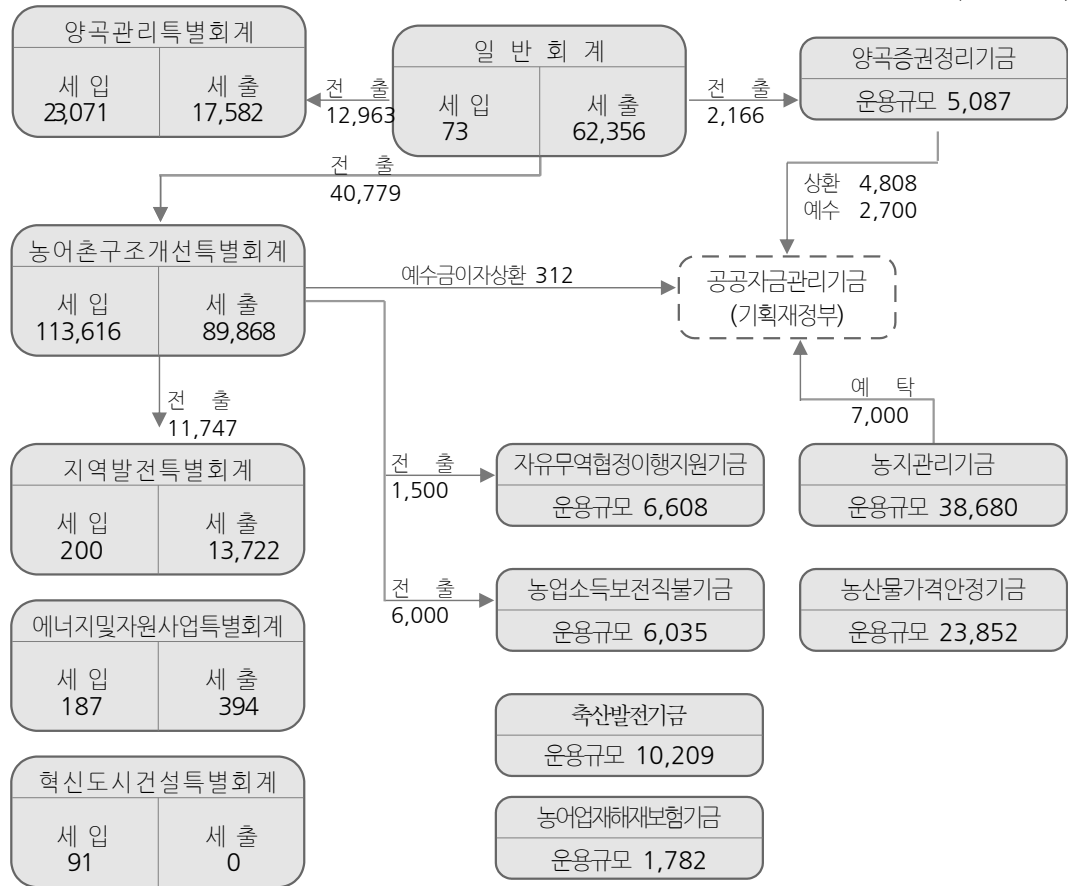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마.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779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2,963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2,166억원이 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조 1,747억원,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으로 6,000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1,500억원이 전출되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4,808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였다. 농지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000억원을 예탁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 ②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등이 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 사업은 수확기 쌀값 상승(130,356원/80kg→141,080원/80kg)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액 4,100억원이 감액(1조 4,900억원→1조 800억원) 되었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제도정착 등에 따른 사업숙성 정도를 고려한 적정 인원 조정으로 17억원이 감액(91억원→74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②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③시도가축방역 사업 등이 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재해 취약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한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편의 도모를 위해 515억원이 증액(5,065억원→5,580억원) 되었고,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농지 매입사업 및 사업지원단가 인상, 물량확대를 위해 100억원이 증액(3,783억원→3,883억원) 되었으며,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188억원이 증액(1,138억원→ 1,326억원) 되었다.¹⁾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 시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영농의지와 영농계획서, 가족이주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의무영농기간(총 6년) 부여, 연간 의무교육 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²⁾.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자료」, 2018.11.

2)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②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등이 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당초 선발예정이었던 1,200명에서 400명을 추가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9억 9,000만원이 증액(74억원→84억원) 되었고,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해 600억원이 증액(2,540억원→3,140억원) 되었다.³⁾

3) 국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 예산현액 19조 9,234억원 중 18조 3,921억원(92.3%)을 집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농업인의 소득안정, ②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③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사업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재정운용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및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폐업지원 사업,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농가의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집행실적 및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농가의 수요 확대,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8회계연도 사업시행 결과 일부 사업은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융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내 반입이 어려운 품목을 경작하는 기업에도 융자가 되었으므로, 사업대상 및 융자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경우 특정 농업법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승인하였으므로, 공익 목적에 따른 매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직전연도의 산지쌀값의 증가로 인해 수요가 부족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고,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센터운영비를 중심으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의 경우 노지채소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농가 및 기업·연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축적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며,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헌법」은 제55조제2항¹⁾에 예비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제51조²⁾),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절차(제52조³⁾) 등을 규정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 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분류되는데,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편성 및 심의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말하며,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목적이 예산총칙 등을 통하여 제한되어 있는 예비비이다.

1-1. 재해대책비(융자) 사업과 지역특화 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목적예비비 불용 및 이월 부적절

가. 현 황

정부는 2018년 추경예산에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해 목적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근거하여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 및 재해대책비 사업 등에서 목적예비비 1,085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 및 시도가축방역 사업에서 일반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2018년 결산 기준 1,278억 5,6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18,465	18,465	0	0
	시도가축방역		800	800	0	0
	소계		19,265	19,265	0	0
목적 예비비	재해대책	시도가축방역	29,787	28,437	0	1,353
		살처분보상금	34,271	34,271	0	0
		재해대책비(보조)	43,132	41,890	0	1,242
		재해대책비(융자)	2,193	2,193	0	0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농업기반정비	300	300	0	0
		푸드서비스 선진화	1,500	1,500	0	0
	소계		111,183	108,591	0	2,595
합계			130,448	127,856	0	2,5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해대책비(응자) 사업

재해대책비(응자) 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 등 농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농업인 및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재해대책비(응자) 사업 예산은 285억원이었으나, 살처분보상금 등으로 270억 3,700만원을 이전용하였고, 이전용 후 하반기에 재해가 발생하자 재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목적으로 21억 9,3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비 사업의 예산현액 36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재해대책비(응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해 대책비 (응자)	28,500	28,500	0	△27,037	2,193	3,656	3,656	0	0

주: 전용(2.10.)은 AI살처분 보상금 부족재원 80억원이다.

이용(8.16.)은 2018.4.7~8일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보전금) 부족재원 190억 3,700만원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② 지역특화 음식거리조성 사업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특화음식거리 조성 사업⁴⁾은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인하여 군산, 목포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신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2018년도 예비비 1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70

[2018회계연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푸드서비스 선진화	1,450	1,450	0	0	1,500	2,950	2,950	0	0
지역특화 음식거리 조성	0	0	0	0	1,500	1,500	1,5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예비비는 보충적인 성격의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비(용자)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 21억 9,300만원 중 98.6%인 21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고, 지역특화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 예비비 전액을 이월하였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용자) 사업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용자하기 위한 사업으로 ‘7~8월 폭염 및 가뭄’을 위해 10억 300만원을 배정받았고, 태풍(솔릭)과 8.26~9.1일 발생한 호우에 따른 재해대책비로 11억 9,0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2018회계연도 재해대책비(용자) 사업의 예비비 추진 일정]

	예비비 신청 (농식품부 → 기획재정부)	→	예비비 의결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예비비 배정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	예비비 교부 (농식품부 → 시·도)
7~8월 폭염 및 가뭄	’18.9.13		’18.9.18		’18.9.21		’18.9.27
태풍(솔릭) 8.26~9.1 호우	’18.9.20		’18.10.8		’18.10.17		’18.10.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억 9,300만원의 예비비를 교부하였으나, 예비비가 배정된 ‘7~8월 발생 폭염·가뭄’의 경우 피해농가가 25,891호에 이르고, ‘태풍(솔릭)’과 ‘8.26~9.1 발생한 호우’는 피해농가가 17,331호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1.0%인 2,3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다.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NH농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융자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1.5%의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된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7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낮은 대출 실행률을 감안하여 27억 6,7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였으나, 농업인의 수요 저조로 900만원만 대출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다.

[연도별 재해대책비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보조사업자				
			교부액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2	70,000	70,000	56,088	19,520	13,912	22,656	27.9
2013	90,000	103,912	14,973	1,574	0	13,399	1.5
2014	90,000	90,000	9,832	1,650	0	8,182	1.8
2015	26,200	26,200	636	0	0	636	0.0
2016	28,300	18,300	17,998	2,707	0	15,291	14.8
2017	28,500	13,500	2,767	9	0	2,758	0.1
2018	본예산	28,500	1,463	522	0	941	35.7
	예비비	-	2,193	23	8	2,162	1.0

주: 교부액이란 복구지원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교부된 금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수요저조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재해대책비(융자)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비비를 과도하게 배정한 결과 당초 계획의 1.0%만이 실집행되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당 융자지원 한도액이 낮았기 때문에 실수요가 저조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융자지원 한도액은 전체 융자액을 재해발생 농가의 수로 단순하게 나눈 수치로 실제 융자를 수혜할 때의 대출한도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피해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융자의 한도액은 없거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예비비를 배정하여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비비가 보충적인 성격의 예비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특화음식거리 조성 사업**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를 신청(2018.09.12, 이하 연도 생략) 및 배정(09.21)하였고, 전라북도 군산과 전라남도 목포에 각각 7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짬뽕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짬뽕특화거리 조성,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목포시는 남도음식에 특화하여 관광 상품개발, 홍보동영상 제작, 팸투어 및 공모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비비를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승인(목포 10.29, 군산 11.2)하고 예비비를 집행(11.20)하였으나, 지방 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목포 11.31, 군산 12.13) 지방비 확보가 지연(목포 12.27, 군산 12.21)되었고, 그 결과 교부된 국비가 전액 이월되었다. 이월된 국비의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목포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군산도 관광 안내자료 등 짬뽕 특화거리 환경조성(7월~11월), 교육프로그램 운영(7월 이후), 블로그마케팅 및 페스티벌 개최(10월~12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8년 배정된 예비비는 대부분 2019년에 하반기를 중심으로 소진될 예정이다.

[2018회계연도 지역특화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예비비 추진 일정]

예비비 신청 (농식품부 → 기획재정부)	→	예비비 의결 (기획재정부 → 국무회의)	→	예비비 배정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	교부요청 (시·도 → 농식품부)	→	예비비 교부 (농식품부 → 시·도)
'18.9.12		'18.9.18		'18.9.21		군산 11.14 목포 11.19		'18.11.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회계연도 지역특화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예비비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라북도(군산)	750	750	750	750	0	0	0	750	0
전라남도(목포)	750	750	750	750	0	0	0	75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며⁵⁾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하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은 정부의 임의적인 재량지출을 확대하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비의 당초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배정된 예비비가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와 같은 예산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기획재정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6

-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
- 다만,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함**

1-2. 농촌지역폐기물수거 사업 예비비 지출의 시급성 부족

가. 현 황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등을 통해 농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지역폐기물 수거¹⁾ 사업을 통해 일반예비비 18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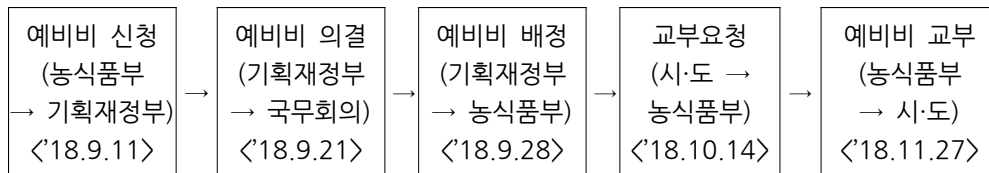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	13,703	13,703	0	0	18,465	32,168	32,156	0	13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0	0	0	0	18,465	18,465	18,465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폐기물수거 사업은 농촌 내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일반예비비 184억 6,500만원을 배정받았다. 집행 결과 152억 2,200만원을 실집행하고, 5억 6,700만원을 이월, 26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월액은 2019년 징수된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등이며, 불용액은 인력채용지연과 기상악화로 인한 휴무 등이 원인이다.

[2018회계연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의 예비비 집행 일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60-405

[2018회계연도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금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차	2차	계			
12,251	6,214	18,465	15,222	567	2,6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일반예비비를 통해 추진한 농촌지역폐기물수거 사업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예비비를 교부받은 11개²⁾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5,683명을 고용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였고, 이들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인 7,530원이 지급되었다. 영농폐기물이란 농촌 내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의미하며, 사업 추진 결과 배정된 예비비는 폐기물 수거 인력의 근무수당 및 식대 등 인건비³⁾와 운영비⁴⁾에 집행되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예측불가능성) 또는 예산에 일정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보충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

3) 인건비는 근무수당, 기타수당, 4대보험료, 식대로 구성된다.

(근무수당) 60,240원/일(최저임금 7,530원×8시간)

(기타 수당) 수거·처리반의 팀장, 운전원 등 특수 근로자에게는 가용 가능한 인건비 내에서 추가 수당 지급 가능

(4대 보험료) 사업체(지자체) 부담분인 10.4% 기준으로, 근무자 자부담 보험료는 미포함 지원

(식대) 인당 7,000원/일 이내 정액 지원(간식비 3,000원/일 추가 지원 가능)

4) 운영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차량 임차 및 물품 구입 등에 집행되었다.

그러나 농촌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배정된 예비비로 창출된 일자리는 6주 간 고용되는 한시적인 일자리이며, 농촌지역의 폐기물 수거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시급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가 보충적인 예비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배정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양곡관리비의 증가와 쌀 농업 개선과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을 쌀 산업, 원예·특작, 축산, 식품 등 4개 품목으로 나누어 보면, 2018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쌀 산업이며 원예·특용작물, 축산, 식품의 순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6조 1,223억원을 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재정현황]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135,268	136,371	140,431	143,681	144,887	144,996
쌀 산업	48,503 (35.9)	48,629 (35.7)	53,060 (37.8)	58,500 (40.7)	63,059 (43.5)	61,223 (42.2)
원예·특작	23,882 (17.7)	21,539 (15.8)	21,555 (15.3)	19,762 (13.8)	19,909 (13.7)	19,553 (13.5)
축산	13,899 (10.3)	15,159 (11.1)	14,589 (10.4)	14,701 (10.2)	13,840 (9.6)	14,391 (9.9)
식품	7,339 (5.4)	7,723 (5.7)	8,401 (6.0)	8,208 (5.7)	7,478 (5.2)	6,938 (4.8)
기타	41,645 (30.8)	43,321 (31.8)	42,826 (30.5)	42,509 (29.6)	40,601 (28.0)	42,890 (29.6)

주: 예산액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쌀 수급추이를 살펴보면, 양곡연도 기준 공급량은 2008년 536만톤에서 2017년 633만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산과 수입이 지속되면서 이월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반면, 소비량은 먹거리의 다양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감소 추세에 있어 2017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하루 평균 169.6g)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급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쌀 재고량은 2008년 69만톤에서 2017년 189만톤까지 증가하고 있고,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한 재고 증가는 재고관리비용, 쌀 직불금 등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쌀 수급 추이]

(단위: 천톤, kg)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 급 량 (A)	5,361	5,786	6,216	6,131	5,645	5,294	5,311	5,553	5,968	6,326
소 비 량 (B)	4,675	4,793	4,707	5,164	4,883	4,493	4,436	4,199	4,220	4,439
재고량 (A-B)	686	993	1,509	967	762	801	874	1,354	1,747	1,888
1인당연간 소비량	75.8	74.0	72.8	71.2	69.8	67.2	65.1	62.9	61.9	61.8

주: 1) 양곡연도(전년도 11월 1일 ~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이며, 정부양곡 기준임

2) 감모(減耗)는 생산부터 유통관리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소를 의미하며, 기타는 해외원조, 중차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1. 정부관리양곡의 재고 급증에 따른 관리비용 감축 필요

가. 현 황

정부양곡관리비¹⁾ 사업은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가공·운송 등 양곡을 관리하고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자체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공장주 및 보관 창고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와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자체에 관련 경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3,814억 3,400만원 중 이·전용을 포함하여 3,878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정부양곡관리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양곡 관리비	381,434	381,434	0	6,557	387,991	387,888	0	103
정부양곡 관리비	379,894	379,894	0	6,658	386,552	386,449	0	103
정부양곡 관리비 (지자체)	1,162	1,162	0	0	1,162	1,162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코드: 양곡관리특별회계 2131-366

나. 분석의견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의 재고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양곡관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관리비용의 감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쌀 수급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공급량은 2008년 536만톤에서 2017년 633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산과 수입이 지속되면서 이월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소비량은 2008년 468만톤에서 2017년 444만톤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1인당 연간 소비량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공급량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공급량과 소비량의 차이는 2008년 69만톤에서 2017년 189만톤까지 증가하고 있다.

[쌀 수급 추이]

(단위: 천톤, kg)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 급 량 (A)	5,361	5,786	6,216	6,131	5,645	5,294	5,311	5,553	5,968	6,326
이 월	695	686	993	1,509	1,051	762	801	874	1,354	1,747
생 산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4,230	4,241	4,327	4,197
수 입	258	257	307	327	370	526	280	438	287	382
소 비 량 (B)	4,675	4,793	4,707	5,164	4,883	4,493	4,436	4,199	4,220	4,439
식 량	3,755	3,683	3,678	3,612	3,554	3,435	3,340	3,239	3,199	3,199
가 공	436	366	549	644	566	526	535	575	659	708
수 출	-	3	4	4	3	2	2	2	2	2
사 료	-	-	-	-	-	-	-	-	86	378
감 모	443	701	432	867	724	494	524	348	241	117
기 타	41	40	44	37	37	36	35	35	34	36
차 이 (A - B)	686	993	1,509	967	762	801	874	1,354	1,747	1,888
1 인 당 연 간 소 비 량	75.8	74.0	72.8	71.2	69.8	67.2	65.1	62.9	61.9	61.8

주: 1. 양곡연도(전년도 11월 1일 ~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이며, 정부양곡 기준임

2. 감모(減耗)는 생산부터 유통관리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소를 의미하며, 기타는 해외원조, 종자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양곡관리비는 2013년 1,524억 7,400만원에서 2017년 2,529억 6,600만원, 2018년 3,878억 8,800만원으로 매년 지출소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양곡관리비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매년 양곡을 매입(2015년 747,000톤, 2016년

689,000톤, 2017년 720,000톤, 2018년 350,000톤)함에 따라 관리해야 할 물량이 2013년 801,000톤에서 2018년 1,435,000톤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연도별 정부양곡관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3	208,251	208,251	0	△54,928	153,323	152,474	0	849
2014	201,649	201,649	0	△16,347	185,302	181,253	0	4,049
2015	202,811	202,811	0	0	202,811	202,496	0	315
2016	202,811	202,811	0	50,086	252,897	252,693	0	204
2017	247,796	247,796	0	5,369	253,165	252,966	0	199
2018	381,434	381,434	0	6,557	387,991	387,888	0	103

주: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의 상승에 따라 정부양곡관리비에서 정부양곡매입비로 전용이 발생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회계연도의 경우 2017년 10월말 기준 재고량이 189만톤에 이르고, 2017년 수확기 매입량(72만톤)이 추가되면서 연도 내에 관리해야 할 물량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상황과 급증한 쌀값의 추이를 고려하여 방출량을 확대(2017년 88.5만톤→2018년 129.1만톤)하였고, 2018년산에 대해서는 공공비축 매입 외에 시장격리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 양곡연도 말 기준(2018년 10월 31일 기준) 기준 재고량은 143만 5,000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18회계연도 정부양곡관리비 사업은 양곡의 보관, 가공, 방출 물량의 증가로 인해 2017년(결산 기준 2,529 6,600만원) 대비 53.3% 증가한 3,87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8년 말 기준(143만 5,000톤) 정부양곡 재고량은 여전히 FAO(세계식량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800,000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쌀의 공급과잉은 재고관리비용 및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쌀 산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방안

의 마련,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전작지원 등을 통해 정부 관리 양곡의 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정부 관리양곡 재고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FAO(세계식량기구) 권장 재고량	800	800	800	800	800	800
실재고량(누적)	801	874	1,354	1,747	1,888	1,435
당해연도 매입량	370	640	747	689	720	350

주: 실재고량은 양곡연도 말 기준 수치이다. 양곡연도란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를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실적제고 필요

가. 현 황

논타작물재배지원(생산조정제) 사업²⁾은 쌀수급안정을 위하여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해당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368억 2,900만원 중 67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689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논타작물 재배지원	136,829	136,829	0	0	136,829	67,880	0	68,949
소득보전	136,000	136,000	0	0	136,000	67,055	0	68,945
이행점검	829	829	0	0	829	825	0	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10-310

나. 분석의견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참여자는 산지쌀값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산지쌀값이 급증하여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의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쌀 수급추이를 살펴보면, 양곡연도 기준 공급량은 2017년 633만톤으로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2008년 468만톤에서 2017년 444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1인당 연간소비량의 감소 등 식량 부문의 소비 감소 등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쌀 재고량은 2008년 69만톤에서 2018년 144만톤까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쌀의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신규로 도입되어 한시적(2018~2019년)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논을 이용하여 밭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50,000ha의 농지에 ha당 34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결과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여 30,962ha만이 타작물 재배를 신청하였고, 신청한 물량 중 26,447ha만 타작물을 재배하였다. 즉, 당초 계획의 61.9%만 신청하여 계획 대비 신청 물량이 저조한 상황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벼를 재배하거나 휴경 등으로 인하여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는 26,447ha만 타작물이 재배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동 사업은 예산현액의 49.6%인 678억 8,8000만원만 집행되어 사업 실적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2018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신청 및 이행 결과]

(단위: ha)

품목		신청면적	이행면적
조사료	수단그라스	4,269.5	3,751.2
	총채벌	3,347.8	2,180.1
	옥수수	2,860.2	2,182.8
일반	인삼	918.7	677.9
	들깨	629.4	579.6
	옥수수	615.5	557.0
	마늘	609.2	661.3
	감자	490.2	381.9
	참깨	436.4	383.3
	양파	379.8	301.6
	철쭉	287.9	264.9
	고구마	253.5	229.0
	잔디	236.7	218.4
꽃거름	수단그라스	668.8	1,196.2
	호밀	163.3	181.8
	옥수수	123.5	268.4
두류	콩	8,163.2	6,944.5
	팥	133.5	116.1
	녹두	46.1	48.6
기타		6,328.8	5,322.2
합계		30,962.0	26,446.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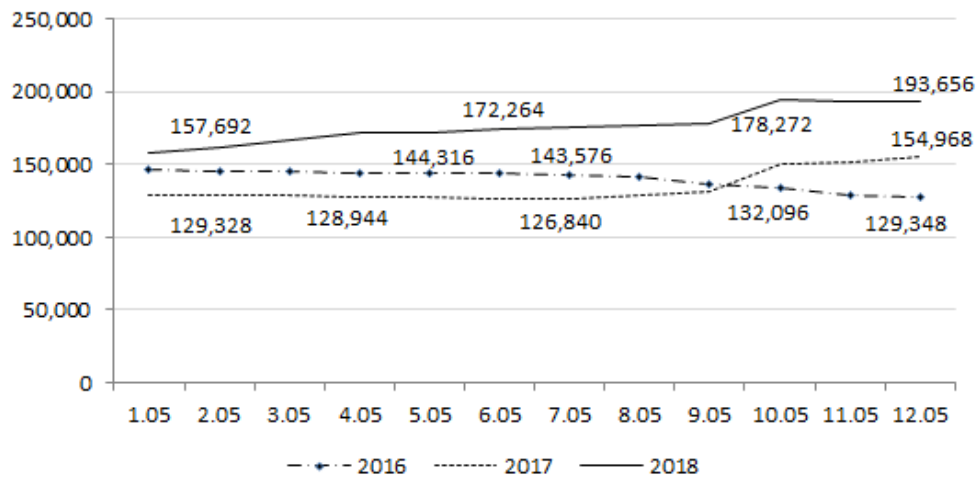
동 사업은 농가의 입장에서 논에 벼를 재배할 때보다 타작물을 재배할 때 수익성이 높을 경우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높기 때문에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참여자는 산지쌀값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2018년 동 사업의 사업 신청 기간(2018년 1~4월)의 경우 전년 수확기(2017년 10~12월) 산지쌀값이 직전연도 수확기(2016년 10~12월) 대비 23,406원/80kg 상승하였고, 사업신청 기간 중에도 쌀값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이 밖에 파종기 잦은 강우, 농가의 타작물 재배 경험 부족 등도 사업수요가 저조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쌀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실적 저조는 농지에서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공급량 감축이라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2018년 산지쌀값 현황]

(단위: 원/80kg)

2016	일자	01.05	02.05	03.05	04.05	05.05	06.05
	산지쌀값	146,560	145,864	144,972	144,316	144,052	143,576
	일자	07.05	08.05	09.05	10.05	11.05	12.05
	산지쌀값	142,900	141,896	137,152	134,076	129,348	128,328
2017	일자	01.05	02.05	03.05	04.05	05.05	06.05
	산지쌀값	129,328	129,372	128,944	127,952	127,280	126,840
	일자	07.05	08.05	09.05	10.05	11.05	12.05
	산지쌀값	126,732	129,232	132,096	150,892	152,224	154,968
2018	일자	01.05	02.05	03.05	04.05	05.05	06.05
	산지쌀값	157,692	161,792	167,480	171,376	172,264	174,096
	일자	07.05	08.05	09.05	10.05	11.05	12.05
	산지쌀값	175,784	177,252	178,272	194,772	193,696	193,6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가. 현 황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은 동물용의약품산업 관련 기업의 수출시장개척과 우수제조시설(이하 GMP¹⁾)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GMP를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에 대한 용자와 수출업체 운영자금 용자 지원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221억 2,300만원 중 4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88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22,123	22,123	1,193	0	23,316	4,502	18,814	0
용자	21,403	21,403	1,193	0	22,596	3,782	18,814	0
보조	720	720	0	0	720	72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서 추진하는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은 2018년 편성된 본예산이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기준) : 품질이 고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입고부터 출고까지 제조·품질관리규범 운영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융자)의 내역사업인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²⁾은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은 214억 300만원 중 37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188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다.

내역사업인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두 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제조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이하 신축 및 개보수) 사업과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의 구축을 위한 융자(이하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이다.

[2018회계연도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21,403	21,403	1,193	0	22,596	3,782	18,814	0
신규 설치 및 개보수	1,589	1,589	0	0	1,589	1,589	0	0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18,814	18,814	1,193	0	20,007	1,193	18,814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 중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제조시설을 신축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백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70%)를 지원해주는 사업³⁾이다. 동 내내역 사업의 2018년 예산은 구제역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689억원)의 70%에 대해 융자(483억원)하고, 이에 건축률(40%) 등을 감안하여 18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2017년 9월 ㉠, ㉡, ㉢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을 선정⁴⁾하였다.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50

3) 30%는 자부담이다.

4)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부지와 운영비 및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자부담(30%)을 충족해야한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주주 간 합작투자계획서를 체결한 결과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에 기술이전⁵⁾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8년 12월 2개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㉔ 회사가 2개사의 지분을 인수(12월 19일)하고, ㉕ 컨소시엄은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에 관한 턴키계약⁶⁾(12월 21일)을 체결하여 착공식을 개최(12월 27일)하였다. 즉, 동 내내역사업은 3개사 간의 컨소시엄(㉕)을 선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단일한 기업이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해외 기술이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시공업체와의 계약이 2018년 12월 21일에 이르러서야 체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 전액(188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다. 예산의 이월은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재정 운용에 취지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편성된 예산의 전액을 이월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의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21,403	20,403	1,193	21,596	2,782	18,814	12.9%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구축 지원	18,814	18,814	1,193	20,007	1,193	18,814	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업무협약 및 기술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

- 1) 구제역 방역을 위한 기술 및 학술 교류 협력
- 2) 구제역 백신 항원 및 부형제 개발 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조사
- 3) 구제역 백신 제조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공유
- 4) 구제역 백신 제조기술 고도화 연구
- 5) 구제역 백신 항원 제조·평가·비축 기술 공유
- 6) 구제역 백신 효능 제고를 위한 신규물질 개발 연구
- 7) 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실 이용 등 시설 공유

<기술이전>

중자바이러스 개발 및 백신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이전 중(2018.8월~현재)

6)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유지 관리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의 지원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고한 내용을 준수하여 참여 업체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보조)⁷⁾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6억 2,000만원을 전액 한국동물약품협회에게 집행하였다.

동 사업 통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별로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된 국비는 자부담(300만원)과 매칭하여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료와 운송비 등에 사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2월 사업대상자를 모집 공고한 후 서면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를 선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⁸⁾이었으나, 7개 업체가 지원하자 7개를 모두 선발하였고, 2018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7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⁹⁾ 8개 업체가 지원하자 지원한 업체를 전부 선발하였다.

[연도별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사업 선정 현황]

2017		2018	
신청	선정	신청	선정
7개소	7개소	8개소	8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국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총 341개¹⁰⁾가 있으며, 이 중 2018년에는 78개 업체가 해외에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사업의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수출액, 수출국가수, 수출품목수, 전시회 참여 경험 등을 기준으로 개별전시회에 참여할 업체를 선발할 계획¹¹⁾이었으나, 2018년의 경우 선정된

7)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49

8) 한국동물약품협회, 「2017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2017.02

9) 한국동물약품협회, 「2018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2018.02

10)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다.

8개 업체 중에는 해외수출경험이나 해외전시회 참여 경험이 없는 업체도 포함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공고에서 수출 추진계획서 및 업체수출실적 등을 종합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¹²⁾를 고려하여 당초 공고한 내용을 준수하여 참여 업체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해외전시회개별참가지원 사업 서류평가 현황]

(단위: 개, 회, 천원)

업체명	수출액 (백만원)	수출 국가수	수출 품목수	특허 보유수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참가실적	국고보조금 신청액
D	900	15	25	2	4	2	2,520
M	2,518	7	32	1	4	0	5,950
SA	296	2	18	1	3	2	5,337
SB	3,510	11	70	1	0	1	1,633
J	7,138	15	30	11	4	2	783
C	0	0	0	5	0	0	6,098
CM	13,668	27	88	0	4	0	7,000
K	1,620	7	40	0	5	1	6,1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한국동물약품협회, 「2018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2018.02

12) 한국동물약품협회, 「2018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2018.02

가. 현 황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¹⁾은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60억원을 30억원으로 수정하고, 이후 계획현액 30억원 중 24억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지원	6,000	3,000	0	0	3,000	2,400	0	600
보조	3,000	1,500	0	0	1,500	1,200	0	300
융자	3,000	1,500	0	0	1,500	1,200	0	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식육판매점포(점업 음식점 포함)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 기존 건물의 매입, 건물 임차료와 냉장·냉동 판매를 위한 시설(진열장)과 포장, 인테리어 시설, 음식 조리 및 판매 장비, 소 부산물 추출 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 30%의 보조금과 30%의 융자금²⁾을 지원하는 사업²⁾이다. 보조금과 융자금은 각각 3억원을 한도로 총 6억원까지 지원되며, 이 중 융자금은 2~3%의 금리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된다. 지원대상은 한우와 육우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으로서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이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3-331, 332

2)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나. 분석의견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이 발생하였고,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도 내 실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2016년까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하자 2017년부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환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매년 수요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5	6,000	6,000	0	6,000	1,321	2,760	1,919
2016	6,000	5,619	2,760	8,379	1,807	2,505	4,067
2017	4,000	4,000	2,505	6,505	5,031	0	1,474
2018	3,000	1,500	0	1,500	1,200	0	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환된 첫해인 2017년의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이월액 25억 500만원과 2017년 예산 4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5억원은 집행하였고, 10억 500만원은 결국 불용처리하였다. 2017년 본예산(40억원)의 경우 12개 법인을 선정하여 수요 부족으로 인한 불용액(4억 6,900만원)을 제외한 35억 3,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이 중 1개소(3억원)을 제외한 11개소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사업포기,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연도 내에 실집행되지 못하였고, 2018년으로 이월되었다. 이월된 예산의 2018년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 선정된 12개소 중 5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4개소는 2018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2019년으로 재이월되어 결과적으로 단 1개소만이 2017년 내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법인명	선정일	교부일	실집행일	사업포기	개장일	현황
1.홍천축산업협동조합	'17.4.5	'17.6.12	-	'18.1.10	-	포기
2.농업회사법인(주)대관령	'17.4.5	'17.6.12	-	'17.10.25	-	포기
3.농업회사법인 청풍호청정한우	'17.4.5	'17.7.19	-	'17.12.12	-	포기
4.(주)박달재엘피씨	'17.4.5	'17.7.19	'19.6.5 (1차)	-	-	추진 중
5.(주)화평한우영농조합법인	'17.4.5	'17.7.19		'17.12.12	-	포기
6.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	'17.4.5	'17.6.12	'18.3.7	-	'18.3.14	완료
7.장수젊은한우영농조합법인	'17.4.5	'17.6.12	'18.6.29 '18.12.28	-	'19.3.01	완료
8.선진축산영농법인	'17.4.5	'17.9.8	'17.11.9	-	'17.11	완료
9.나주축산업협동조합	'17.4.5	'17.9.8	-	'18.10.15	-	포기
10.김해축산업협동조합	'17.4.5	'17.6.12	'18.5.21	-	'18.5.25	완료
11.둔덕농업협동조합	'17.4.5	'17.6.12	'18.1.12	-	'18.9.17	완료
12.영풍영농조합법인	'17.4.5	'17.6.12	'18.3.30	-	'18.12.7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2019년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당초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수요부족으로 인해 30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당초 5개소를 개설할 계획과 달리 4개소가 선정되어 1개소에 해당하는 3억원의 보조금은 불용하였다. 이후 4개소의 개설을 위한 지원금³⁾ 중 보조금 1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지만, 실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2018회계연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액	지방자치단체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강원도(1)	300	0	300	0	300	0
강원도(2)	300	0	300	0	300	0
경상남도	300	0	300	0	300	0
경상북도	300	0	300	0	300	0
합계	1,200	0	1,200	0	1,20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융자금과 보조금이 50:50으로 지원된다.

이는 4개소 중 2개소만 당해 연도에 착공하였으며, 지원된 모든 식육판매점포가 공사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연도 내에 개장하지 못하고 2019년 개장할 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된 첫해에 사업자 공고·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실효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식육판매점포가 예산이 교부된 이듬해 개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연차별 지원 비율을 차등 조정하는 등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법인명	선정일	교부일	착공일	개장(예정)일
갑(강원)	‘18.1.9	‘18.3.8	‘18.1.10	‘19.6.10
을(강원)	‘18.8.17	‘18.9.12	‘18.8.22	‘19.7.11
병(경남)	‘18.1.9	‘18.3.8	‘19.8(예정)	‘19.12
정(경북)	‘18.1.9	‘18.2.7	‘19.1.2	‘19.8.9

주: 4개 법인은 한우를 판매하는 점포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은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

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⁴⁾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의 일부를 교부한 뒤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남은 잔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월 3일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에 각각 3억원을 교부하였고, 6월과 10월에는 강원도는 2개소가 선정되어 각 3억원씩 교부하였다. 집행지침은 1차 교부 이후에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검토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괄 교부하여 이러한 검토 과정이 생략되었고, 교부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의 이월은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재정 운용에 취지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행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이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일	건명	수령인	예산액	집행액
2018-04-03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경상남도	300	300
2018-04-03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경상북도	300	300
2018-06-21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강원도(1)	300	300
2018-10-11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강원도(2)	300	300
합계			1,200	1,200

주: 강원도의 경우 2개소가 선정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1, p.101.

가. 현 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¹⁾ 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12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농식품 산업해외 진출지원 (융자)	12,600	12,600	0	0	12,600	12,6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8회계연도 사업추진결과 126억원의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융자액 중 87.3%(110억원)를 대기업에 지원하였으므로 대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해외식량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농기계 구입비,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등),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지관리기금 5032-302(융자)

비 등을 용자²⁾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용자 금리는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총 126억원을 용자하였고, 이 중 87.3%(110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총 702억원을 2%의 고정금리로 대출하였는데, 이 중 62.0%인 435억원이 대기업에서 용자된 결과 농지관리기금 435억원이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이 지원 대상에서 대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업체당 용자 횟수나 한도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도별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대기업 용자 비율]

(단위: 백만원)

연도	용자지원액(A)		
		대기업(B)	비중(B/A)
2014년	28,000	16,500	58.9%
2015년	14,000	11,000	78.6%
2016년	12,600	2,000	15.9%
2017년	3,000	3,000	100.0%
2018년	12,600	11,000	87.3%
합계	70,200	43,500	6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사업인 신성장기반자금 사업³⁾의 금리를 살펴보면, 기준금리+0.5%p로 용자되어 2018년 4사분기 기준 2.80% 대출되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⁴⁾의 경우 기준금리+1.05%p로 대출되어 2018년 4사분기 기준 용자 금리는 3.35% 수준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대기를 대상으로 2% 금리를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용자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 용자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익성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원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대기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2) 전체 사업비의 70%를 용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3) 코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1

4) 코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61-302

둘째,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용자 대상 및 자금사용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자금사용용도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①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③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④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⑤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해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다⁶⁾. 해외농업자원이란,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농산물⁷⁾ 중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⁸⁾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2018년 사업추진 결과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밀 소 구입비 및 사료비, 자재구매비 등에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농업정책융자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지침을 변경하여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2018.1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2018회계연도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융자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업체명	국가	품목	융자지원	내용	기업유형
L	러시아	콩, 옥수수, 귀리	4,000	종자, 농약, 농기계 등	대기업
S	인도	옥수수 배합사료	1,000	원료구입, 공장운영비 등	대기업
	중국	비육우	3,000	밀소구입비, 사료비 등	대기업
E	중국	토마토, 파프리카	1,600	스마트팜 건설공정 자재 구매 등	중소기업
P	인도네시아	오일팜	3,000	시설투자(착유공장) 등	대기업
합계			12,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법적근거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⁹⁾,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목적을 우리 농산업의 외연확장 및 비상시 대비 안정적인 해외식량 확보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업 및 자재구매비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재정적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옥수수 배합사료 등)이나 저장성의 문제로 인해 비상시 식량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비육우, 오일팜 등)에 대한 융자 지원도 사업의 목적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시 해외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융자 대상 및 자금사용용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현 황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¹⁾은 유희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²⁾를 자급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32억 7,500만원 중 7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산지생태 목장조성	3,540	3,275	0	0	3,275	742	0	2,53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은 산지생태축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지생태축산이란 자연 그대로의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환경 친화적 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초지조성, ② 초지조성부담금, ③ 컨설팅, ④ 기계·장비, ⑤ 기반시설 구축, ⑥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다.

초지조성 사업은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경우 필요한 인건비·자재비·측량수수료 등을 1ha당 764.7만원(보완 조성은 219.9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³⁾하는 사업이며, 초지조성부담금 사업은 초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축산발전기금 3735-315, 3735-321의 내역사업

2) 조사료(粗飼料)란, 가축의 사료 중 일반적으로 부피에 비하여 가소화영양소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의 총칭. 이에선 각종 짚류(straw), 건초류(hay), 생초류와 청예작물 그리고 사일리지와 근채류 등이 포함된다.

3) 보조 50%, 융자 50%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법정비용 및 부담금을 보조⁴⁾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초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용⁵⁾ 및 기계·장비비용⁶⁾,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용도 지원⁷⁾ 등도 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은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 2018년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실적 제고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생태목장조성 사업을 통해 20ha 규모의 초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 5개 목장에서 55.8ha의 초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32억 7,500만원의 계획현액 중 7억 4,200만원을 교부하고, 25억 3,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선발된 산지생태목장의 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된 결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고, 교부된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된 상황이다. 그로 인해 2018년 동 사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제 산지생태목장 조성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보조사업자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대구시	96	0	96	0	96	0
강원도	44	0	44	0	44	0
전라북도	111	0	111	0	111	0
전라남도	128	0	128	0	110	18
경상북도	163	0	163	0	91	72
합계	542	0	542	0	452	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5)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보조 1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30%

7) 용자 80%, 자부담 20%

산지생태복원 조성 사업은 내내역 사업인 초지조성 사업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 및 컨설팅 수요도 극히 저조하여 초지조성부담금 사업은 전액 교부하지 못하였고,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은 각각 1,200만원(10.0%)과 2억 8,300만원(44.6%)을 교부하였지만, 전액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사업의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의 88.8%가 불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실행되지 못하였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자
	계획		계획 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집행률 (B/A)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보조)	1,530	1,530	1,530	314	20.5%	1,216	0
- 초지조성	660	660	660	77	11.7%	583	0
- 초지조성부담금	400	400	400	0	0.0%	400	0
- 산지생태축산 컨설팅	120	120	120	12	10.0%	108	0
- 기계장비(산지생태)	150	150	150	25	16.7%	125	0
- 교육·홍보(산지생태)	200	200	200	200	100.0%	0	200
산지생태축산 농장조성(융자)	2,010	1,745	1,745	428	24.5%	1,317	0
- 초지조성	660	660	660	71	10.8%	589	0
- 기계장비	450	450	450	74	16.4%	376	0
- 기반시설	900	635	635	283	44.6%	352	0
합계	3,540	3,275	3,275	742	22.7%	2,533	2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¹⁾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부대시설인 비축기지의 현대화 및 광역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개 권역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에 종료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72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비축기지 광역화 및 현대화	6,791	7,232	0	0	7,232	7,232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은 2019년 내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공공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비축해야할 농산물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축기지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정부비축기지의 시설노후화 및 전국 분산으로 인한 물류효율성 저하에 따라 기존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를 통해 농산물 물류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지방의 8개 비축기지를 4개 권역별로 1개씩의 새로운 비축기지로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1-337

통·폐합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기존 7개 비축기지(청주, 회덕, 전주, 광주, 학장, 노포, 이현)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대금(659억원)을 발생편익에 포함하여 B/C 0.98로 평가(2012, KDI)되어 예비타당성을 통과(총사업비 1,075억원)²⁾하였다.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구분	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권	부산·경남권
기존	청주, 회덕	이현, 안심	전주, 광주	학장, 노포
현대화	청원	안심(대구 동구)	장성	부산(강서구)
	(완공 2016.10)	(완공 2016.11)	(완공 2017.4)	(완공 2018.12)
매각 대상(7개)	청주, 회덕	이현	전주, 광주	학장, 노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은 지방의 8개 비축기지를 4개 권역별로 통·폐합하는 현대화·광역화사업이 종료(2018년)됨에 따라 기존 7개 비축기지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비축기지가 순차적으로 완공됨에 따라 기존 비축기지의 매각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매각 대상인 기존 비축기지 7개소(청주, 회덕, 전주, 광주, 학장, 노포, 이현) 중 이현비축기지만 국토교통부 재생활성화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대구시에 매각(2018년)되었고, 나머지 비축기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공공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6개 비축기지의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내에 aT에 공공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① 당초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사업이 지역적으로 중복 또는 산재하여 물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비축기지를 통폐합하여 인력 및 일반관리비 절감 및 품질관리의 고도화 등 광역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비축기지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② 기존 비축기지의 건축연수가 39~43년 이상이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비축기지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

2) AHP가 0.5를 초과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고, ③ 기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할 경우 약 137억 4,100만원의 대수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④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비축기지를 신축한 후 노후화된 비축기지를 매각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며, 기존 비축기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³⁾도 감안해야 하며, 정부가 보유한 비축기지의 연평균가동률에 다소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비축기지 보유 현황]

(단위: m², 톤)

구분	면적	최대비축 가능물량 (A)	2018년		2019년	
			연평균 비축물량 (B)	연평균 가동률 (B/A)	연평균 비축물량 (C)	상반기 평균가동률 (C/A)
1.김포	24,534	9,090	5,488	60%	3,738	41%
2.평택	43,749	9,649	7,874	82%	7,423	77%
3.이천	160,027	22,554	18,744	83%	15,592	69%
4.인천	19,273	8,169	6,116	75%	5,294	65%
5.청주	10,488	3,082	1,055	34%	1,334	43%
6.청원	27,660	8,018	4,853	61%	2,628	33%
7.회덕	18,811	4,047	3,017	75%	2,636	65%
8.전주	9,836	2,537	1,477	58%	1,923	76%
9.광주	16,678	3,479	3,430	99%	3,348	96%
10.장성	47,425	8,417	10,096	120%	10,155	121%
11.안심	33,126	8,178	5,863	72%	5,785	71%
12.화강	11,207	2,175	2,940	135%	2,973	137%
13.노포	11,218	2,175	1,884	87%	1,863	86%
14.부산	31,586	8,225	-	-	3,478	42%
합계	465,618	99,795	72,837	80%	68,170	73%

주: 음영은 aT가 인수할 예정인 비축기지(2019.하반기 완료 예정)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aT가 비축기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연 1.25%의 용자를 지원⁴⁾할 계획이며, 매입이 완료된 후 aT는 거치기간(10년)이 종료된 후 약 887억원에 이르는 매입대금을 10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다.

3) KDI,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사업」, 2012.10

4)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00-3031의 내역사업

[비축기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상환 총액	연도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원금상환	743	-	-	-	-	-	-	-	-	-	-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이자상환	144	9	9	9	9	9	9	9	9	9	9	9	8	7	7	6	5	4	3	2	1
합계	887	9	9	9	9	9	9	9	9	9	9	84	83	82	81	80	79	78	77	76	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매입한 비축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aT가 부담해야하는 막대한 재정소요를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서의 수준보다 증가한 비축물량(2012년 45,473톤→2018년 72,837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aT가 비축해야할 농산물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비축기지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그 외의 비축기지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감정평가 금액]

(단위: m², 천원)

대상기지	면적	감정평가액	실제 매각금액
회덕	18,443	5,532,900	8,732,422
청주	10,488	3,356,160	5,590,406
광주	16,720	15,048,000	18,474,259
전주	9,836	2,950,800	4,499,732
이현	14,422	11,537,600	20,269,600
학장	11,207	20,172,600	29,929,386
노포	11,218	7,291,700	9,829,288
합계	-	65,889,760	97,325,093

주: 1.감정평가액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발췌함

2.이현비축기지는 대구광역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활성화 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현비축기지의 편입으로 대구광역시 및 LH공사에 매각완료(2018년 12월)됨

자료: KDI,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사업」, 2012.10

가. 현 황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직매장설치지원 사업¹⁾은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52억 5,000만원을 전액 aT에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직매장설치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직매장 설치지원	5,250	5,250	0	0	5,250	5,25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직매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기 위한 판매장을 말하며, 생산지 부근에 설치되는 로컬푸드직매장(100㎡ 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대도시형직매장(200㎡ 이상)으로 구분된다.

동 내역사업은 농산물 직거래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농협협동조합·산림조합·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건축비·인테리어비·기자재 구입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²⁾이며,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직매장의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 직매장의 개보수와 농가레스토랑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대도시형직매장을 매년 1개소씩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까지 개소된 대도시형직매장이 없으므로 대도시형직매장의 확대 설치 및 조속한 개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c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9-310의 내역사업

2)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카페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도시형직매장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위치한 곳에 농산물직매장을 개설할 수 있어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유통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가 축소되어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6~2021년)」에 따라 2021년까지 매년 1개소씩 개설할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사업자 공고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고, 2018년의 경우 전체 24개소의 직매장 중 8.3%인 2개소만 대도시형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2018년 선정된 2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 등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 이월된 결과 2019년 6월까지 개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도시형직매장은 200㎡ 이상의 규모에 설치되기 때문에 판매해야 할 물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광역 단위 농가의 조직화 및 품목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도시형 직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차등지원 등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도시 직매장을 확충하여 유통비용 축소 및 농가소득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선정된 대도시형직매장의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2019년 하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조속한 개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직매장설치지원 자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획현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2015	로컬푸드직매장	5,460,000	5,460,000	1,456,204	2,871,900
2016	로컬푸드직매장	7,875,000	7,875,000	1,448,427	3,753,000
2017	대도시 직매장	600,000	600,000	0	0
	로컬푸드직매장	5,700,000	5,700,000	685,732	4,029,000
	소계	6,300,000	6,300,000	685,732	4,029,000
2018	대도시 직매장	780,000	780,000	0	780,000
	로컬푸드직매장	4,470,000	4,470,000	1,220,910	2,130,000
	소계	5,250,000	5,250,000	1,220,910	2,91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폐업지원 사업¹⁾은 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1,027억 1,700만원 중 368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658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폐업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폐업지원	102,717	102,717	0	0	102,717	36,825	0	65,89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폐업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 사업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폐업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피해보전직불금²⁾의 발동요건³⁾을 갖춘 품목 중 시설투자 등이 이루어진 품목⁴⁾에 한해,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72-393

2)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시 도입되었으나 이전까지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없어 지원이 되지 않다가, 2013년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

3) 가격: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올림픽 평균 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올림픽 평균 총수입량보다 증가

농업인이 폐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순이익의 3년치를 폐업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018년 폐업지원 사업은 3개의 품목(호두, 양송이, 염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액을 교부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집행물량이 저조하여 1,027억 1,700억원의 예산 중 368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64.1%인 658억 9,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폐업지원 사업은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모든 농업인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FTA 체결 이전부터 재배해온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폐업지원 사업의 지급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는 11,150가구에 이르는 반면, 실제 동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1,680호 수준이다⁵⁾.

[폐업지원 사업 신청 및 집행 현황]

(단위: 호)

구분	품목	대상 농가수	신청 농가수
2014	한우송아지	69,075	2,701
2015	체리 · 노지포도 · 시설포도 · 닭고기 · 밤	52,031	4,610
2016	노지포도 · 시설포도 · 블루베리	58,377	5,995
2017	없음	-	-
2018	호두, 양송이, 염소	11,150	1,680

주: 1) 지자체에서 최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식품부로 교부금을 신청함에 따라, '신청'은 지자체가 교부금 신청한 농가 수를 말함

2)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더 적은 규모의 농가에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지급 규모를 파악 중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보다 증가

-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①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하거나, ②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거나, ③그 밖에 필요성 인정되는 품목
- 5)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더 적은 규모의 농가에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은 가격, 총수입량, 수입량의 요건⁶⁾을 갖춘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총 5개 품목이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하고,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 신청한 사업규모(51억원)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4억원이 불용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도 마찬가지로 FTA 체결 이전부터 재배해온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품목을 경작하는 농가는 17,941가구에 이르는 반면, 실제 동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3,728호 수준이다⁷⁾.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 사업과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하여 품목마다 시장규모, 협정의 이행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재배해 온 농가 수, 지급액 등이 달라 선정된 품목에 따라 사업집행금액이 영향을 받는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폐업지원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요건에 더하여 품목재배기간, 시설투자비 등 추가적인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는 점, 폐업지원 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려는 농가가 존재하는 점 역시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
- 6) ①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기준수입량이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7)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더 적은 규모의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보전직불 사업 신청 및 집행 현황]

(단위: 호)

구분	품목	대상 농가수	신청 농가수
2014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	618,022	119,451
2015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밥	1,012,301	126,936
2016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66,591	28,364
2017	도라지	10,605	1,515
2018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	17,941	3,728

주: 지자체에서 최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식품부로 교부금을 신청함에 따라, '신청'은 지자체가 교부금 신청한 농가 수를 말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폐업지원금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5년간 동일한 품목을 재배·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폐업한 농업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동일한 품목을 사육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경작 품목을 전환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폐업지원사업과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사업수요가 저조하여 예산액 대비 실행률이 각각 21.9%와 3.5%로 나타나, 75% 이상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폐업지원	예산액	102,717	102,717	102,717	102,717	102,717
	예산현액(A)	143,009	114,987	196,724	102,717	102,717
	실집행액(B)	184,409	19,344	151,588	110,548	12,561
	집행률(B/A)	128.9	16.8	77.1	107.6	21.9
피해보전 직불	예산액	100,478	100,478	100,478	100,478	100,478
	예산현액(A)	60,478	88,208	40,086	100,478	100,478
	실집행액(B)	32,734	38,812	39,439	10,272	3,552
	집행률(B/A)	54.1	44.0	98.4	10.2	3.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폐업지원 사업과 피해보전직불의 재원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고,⁸⁾ 동 기금은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및 마사회 출연금 등⁹⁾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업이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지원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은 이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폐업지원 신청자의 원활한 전작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폐업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이월액은 폐업지원 사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폐업을 이행하지 않아 농가에 지급되지 않은 폐업지원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행 지연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폐업지원을 신청한 물량을 고려하여 36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지만, 이 중 실제 농가의 집행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출하 물량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소에 한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한을 연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 7월 현재 농가에 지원된 금액이 126억원에 불과하며, 243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
-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금의 조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따라서 예산의 이월은 가급적 축소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취지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가 및 농업법인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폐업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3	30,000	81,882	81,590	81,590	0	81,590	0	81,590	0
2014	102,717	143,009	134,540	134,540	81,590	216,130	184,409	0	31,721
2015	102,717	114,987	114,981	114,981	0	114,981	19,344	93,233	2,404
2016	102,717	196,724	196,724	196,724	93,233	289,957	151,588	122,531	15,838
2017	102,717	102,717	0	0	122,531	122,531	110,548	0	11,983
2018	102,717	102,717	36,825	36,825	0	36,825	12,561	24,264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1,0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물량 등을 고려하여 51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이 중 36억원이 농가에 실집행되었고, 15억원이 이월된 상황이다.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3	60,000	60,000	26,102	26,102	0	26,102	25,857	0	245
2014	100,478	60,478	33,619	33,619	0	33,619	32,734	0	885
2015	100,478	88,208	49,524	49,524	0	49,524	38,812	9,271	1,441
2016	100,478	40,086	40,086	40,086	9,271	49,357	39,439	7,926	1,992
2017	100,478	100,478	3,276	3,276	7,926	11,202	10,272	0	930
2018	100,478	100,478	5,067	5,067	0	5,067	3,552	1,515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사업에서 매년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당해 연도에 폐업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촌경제연구원 산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수입기여도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품목을 선정하여 이를 고시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데 기인한다. 이후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에 약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지원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의 이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이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사업 월별추진현황]

품목·수입기여도 조사·분석 및 품목선정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2017년12~1월
	○모니터링·신청품목 발동요건 및 수입기여도 조사·분석,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	2~3.31.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 행정예고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	4.30~5.20.
	○수입기여도 재검증 실시	5.20~5.30.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 확정·발표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 확정	6.1.
	○지급품목 및 수입기여도 고시	6.5.
↓ 사업신청	○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	6.5~7.31.
↓ 신청심사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지급대상자 확정 및 결과 보고	8.1~11.8.
↓ 자금배정/지급	○자금 배정 요청, 자금 배정 ○직불금 지급(지자체→신청인)	11.1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폐업지원 사업을 받은 농가의 83.6%는 작목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폐업 신청 후 이를 철회한 농가를 대상으로 철회사유를 조사한 결과 69.8%는 대체할 작목을 찾지 못하여 폐업지원을 철회하였다고 설명하였다.¹⁰⁾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촌진흥기관과 연계한 전작교육의 확대, 작목별 수익률에 대한 통계조사의 강화, 농업인 전작 지원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작목별 수익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원활한 전작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폐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0) 송우진, 유정호, 명수환, 「2016년 폐업지원 대상 농가의 작목전환 의향 분석과 시사점」, 2017

가. 현 황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¹⁾은 노지채소에 ICT 장비를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1억원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노지채소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지채소 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1,100	1,100	0	0	1,100	1,1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노지채소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노지채소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농가 및 기업·연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ICT 장비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의 도입 당시 5대작물(무·배추·고추·마늘·양파)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ICT 시설장비를 국비 100%로 보급하여 환경·생육·경영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동 사업은 노지작물에 ICT 장비를 적용함으로써 농업편의성 향상과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76

이에 따라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59개 농가에 비치할 ICT장비를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장비는 점적테이프²⁾, 풍향·풍속·온습도 등을 체크하는 외부기상대, CCTV, 모터펌프, 스프링쿨러 등이다. 이와 함께 통합제어시스템인 제어패널 60대도 구입 및 배포되었다. 제어패널이란, 노지채소작물 관련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통합 제어시스템으로 ICT·관수·관비를 운영하고 운영데이터 등을 기록·보관하며 운영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2018회계연도 노지채소스마트팜 장비 공급 현황]

(단위: 대)

구분	태백	안동	고창	무안	해남	합계
제어패널	10	11	10	11	18	60
외부기상대	4	2	2	1	3	12
토양센서	20	11	10	20	36	97
CCTV	4	11	7	16	18	56
모터펌프	10	11	19	22	0	62
Row스위치	10	11	10	11	30	72
전자밸브	37	23	50	50	65	225
스프링쿨러	581	0	1,300	1,225	0	3,106
점적테이프	150	33	0	0	0	1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노지채소에 스마트팜이 보급되면, 도입 전에 비해 생산량(27.9%)이 증가하고, 인건비(△15.9%)는 절감되어 1인당 생산량이 증가(40.4%)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⁴⁾. 따라서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관련 장비의 설치비용 등에 소요된 국비가 9억 9,8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비가 설치

2) 점적테이프란, 관수장비의 일종이다.

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2018년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제안요청서」, 2018.6

4)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수치는 시설원에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술한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지채소의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4.24% 증가하고 노동시간은 21.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된 농가가 설치 이전 보다 사업성이 증진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데이터가 공시되지 않아 생산성 향상 등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9,000만원)이 2018년 10월에 발주되어 2019년 5월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아직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의 공개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현재 정보공유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수 중인 상황이며,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2019년 12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 사업은 노지채소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농가 및 기업·연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겠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공개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축적된 자료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은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한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없었으므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5)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1, p.101.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11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뒤 교부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남은 잔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특히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집행지침에 따라 11억원의 국비를 나누어 교부하고, 교부한 금액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간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사업추진결과를 보면, 보조사업자인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8년 6월 ICT 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발주한 용역에서 낙찰차액 9,602만원이 발생⁶⁾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2018년 3월에 11억원을 일괄 교부한 상황이었다. 이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며, 간접보조사업자의 계약내용 및 낙찰차액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집행지침의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므로, 이러한 예산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 사업의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집행일	건명	수령인	예산액	집행액
2018-03-27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비 교부	농림축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1,100	1,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낙찰차액을 정보보안(개인정보 방지 솔루션 도입 등) 활용에 사용(2018년 12월)하였다.

가. 현 황

친환경농업직불 사업¹⁾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435억 4,500만원 중 366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친환경 농업직불	43,545	43,545	0	0	43,545	36,643	0	6,902
친환경 농업 직불	26,392	26,392	0	0	26,392	22,717	0	3,6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농업직불 사업과 축산직불 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 인증 면적에 직불금 단가를 곱해 산정된다.²⁾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는 2018년 인상되어 유기(논 70만원/ha, 밭 140만원 또는 130만원/ha)³⁾와 무농약(논 50만원/ha, 밭 120만원 또는 110만원/ha)⁴⁾으로 나뉜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5년,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3년 간 지급한다. 또한 유기농산물에 한하여 3년간 유기지속직불금(논 35만원/ha, 밭 70만원 또는 65만원/ha)을 지급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0-383
- 2)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 및 건강한 생태계의 유기를 목적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등 합성물질을 제한하는 농업형태이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등으로 구분된다.
- 3) 유기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 4) 무농약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2017년도			⇒	2018년도		인상금액
논	유기	60만원/ha		유기	70만원/ha	
	무농약	40만원/ha	무농약	50만원/ha		
밭	유기	120만원/ha	⇒	채소·특작·기타	130만원/ha	10만원/ha
	무농약	100만원/ha		과수	140만원/ha	2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10만원/ha	10만원/ha
				과수	120만원/ha	20만원/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 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5)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을 말하며,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51.8%~79.5%로 매년 예산액의 20%~48% 가량이 불용 및 전용되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농업직불금 227억 1,7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인증관리 강화로 인한 부적격 판정, 농가의 인증포기 및 인증취소 등의 영향으로 16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다. 그로 인해 당초 예산액은 263억 9,200만원이 편성된 반면, 79.5%인 209억 8,000만원이 실집행되었다. 실집행 실적은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수준인데, 이러한 집행실적의 확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인상과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지급면적의 확대 등에 기인한다.

-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도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26,909	32,849	25,893	23,943	26,392
예산현액	26,909	32,849	25,893	23,943	26,392
집행액	16,747	21,169	18,470	17,946	22,717
집행률	62.2%	64.4%	71.3%	75.0%	86.1%
실집행액	16,528	17,010	16,911	16,737	20,980
실집행률	61.4%	51.8%	65.3%	69.9%	7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당초 39,549ha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신청면적은 32,886ha로 저조하여 계획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농약이나 비료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가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 면적은 29,370ha인 바, 당초 계획한 지급 면적의 74.3%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급되었다.

[친환경농업직불 계획 대비 지급실적 추이]

(단위: ha)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면적 (A)	40,420	53,920	40,496	35,837	39,549
신청면적 (B)	40,714	29,653	28,799	29,775	32,886
이행점검결과 부적격, 사업포기 등 (C)	15,331	3,552	2,335	2,922	3,516
지급면적 (D=B-C)	25,383	26,101	26,464	26,853	29,370
계획 대비 지급률 (D/A)	62.8%	48.4%	65.3%	74.9%	7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의 경우 5년,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3년 간 지급하고, 이후에는 관행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직불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중 일부만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량 및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생산량은 2017년 49.6만톤에 이어 2018년 45.1만톤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배면적도 2018년 7만 8,544ha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농산물 재배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5.2%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수준으로 목표로 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친환경농업생산모델 개발 및 관련 농법의 개선을 통한 재배비용 감소, 친환경 농업과 관행농업 간의 생산비 격차 보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의 유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 현황]

(단위: 천톤, ha)

연도	친환경 생산량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B)	비중 (A/B)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소계(A)		
2012	1,498	25,467	101,657	37,165	164,289	1,729,982	9.5%
2013	1,181	21,206	98,237	22,208	141,651	1,711,436	8.3%
2014	825	18,306	65,061	16,679	100,046	1,691,113	5.9%
2015	577	18,143	56,996	7,629	82,768	1,679,023	4.9%
2016	571	19,862	59,617	-	79,479	1,643,599	4.8%
2017	496	20,673	59,441	-	80,114	1,620,796	4.9%
2018	450	24,666	53,878	-	78,544	1,595,614	4.9%

주: 저농약 인증은 2016년부터 폐지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6)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8.2.)」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점검·보완(2016.3.)」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전체 농산물의 5.2%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말 예방백신에 대한 적정 지방비 및 자부담 비율 논의 필요

가. 현 황

시도가축방역 사업¹⁾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목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축방역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1,631억 9,000만원 중 1,605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시도가축방역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시도가축방역	132,603	132,603	0	0	163,190	160,584	0	2,606
수의사 연수 교육 등	2,893	2,893	0	300	3,993	3,932	0	61
예방주사 등 지원	114,776	114,776	0	△300	144,263	142,063	0	2,200

주: 2018년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예비비(305억 8,700만원)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내역사업인 수의사 연수교육 등으로 8억원, 예방주사 등 지원 사업으로 297억 8,700만원이 집행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말 예방백신 사업은 국비 100%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지자체의 가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지방비 부과방안을 모색하고, 마주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자부담 차등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평의회계 3940-335

시도가축방역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의사 연수교육 등 사업을 통해 시행하는 말 예방백신 접종 사업은 말 방역수의사를 활용하여 전국의 말 19,000두에 대한 예방백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국에 있는 말 27,829두²⁾중 마사회 보유 말이나 접종을 희망하지 않은 농가의 말 등은 제외되고, 접종을 희망하는 가구의 경우 전액 국고를 지원하여 접종하고 있다.

[예방접종 관련 시도가축방역 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내용
수의사 연수교육 등	○ 말 예방백신 접종 : 4.8만두×39.8천원× <u>100%</u> =191,000만원
예방주사 등 지원	○ 구제역·AI 등 예방약품 구입비 : 178,637.8만두×59.4원× <u>70%</u> ≒743억 2,142만원 ○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 240만두×5천원× <u>50%</u> =600,00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 수의사 연수교육 등은 예방백신 접종 이외에, 말 전염병 모니터링, 방역수의사별 백신접종 및 시료채취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었으며, 한국마사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수의사 연수교육 등 상세내역]

구분	집행내역
말 예방백신 접종 사업	말인플루엔자 36,815두×13천원×100%≒469,427천원 일본뇌염 18,053두×0.9천원×100%≒15,180천원 선역 18,762두×25천원×100%≒463,528천원 비강폐렴 7,300두×23천원×100%≒167,659천원 백신접종비 708,874천원
말 전염병 모니터링	시료채취비 1,007건×10천원×100%=10,070천원
시료채취물품비	14,854건×3.5천원×100%≒47,865천원
말방역수의사 운영비	3,428천원
말 예방백신 사업 운영비	23,969천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2017년 기준 수치이다.

3)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2017년 말산업 실태조사」, 2018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4)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지원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대부분 가축의 예방접종을 국비 및 지방비와 일부 자부담을 매칭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키우는 소(한육우, 젖소) 및 돼지 예방백신의 경우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국고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보조한다. 또한 염소 및 사슴 등 다른 축종도 일정 부분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예방접종 및 검진 현황]

(단위: 원, %)

구분	축종	질병	예산액	집행액	보조금 요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방 주사	소	구제역(전업농)	3,549,891	3,549,891	35	15	50
		구제역(소규모)	3,404,046	3,404,046	70	30	0
		탄저·기종저	34,320	34,320	53	47	0
		전염성비기관염	277,980	277,980	67	33	0
		유행열	798,000	798,000	68	32	0
		아카바네병	990,360	990,360	69	31	0
		설사병	2,321,480	2,321,480	70	30	0
		부제병	551,250	551,250	50	50	0
	돼지	구제역(전업농)	19,626,411	19,626,411	35	15	50
		구제역(소규모)	4,931,055	4,931,055	70	30	0
		돼지열병·단독	3,262,976	3,262,976	50	50	0
		일본뇌염	278,000	278,000	56	44	0
		유행성설사병	976,142	976,142	66	34	0
		썌코바이러스(PCV-2)	9,000,000	9,000,000	30	30	40
	염소, 사슴 등	구제역	1,177,704	1,177,704	70	30	0
	개	광견병	556,542	556,542	65	35	0
		진도개 방역	198,800	198,800	70	30	0
	닭	뉴캐슬병(부화장)	3,359,760	3,359,760	50	50	0
		뉴캐슬병(농가)	1,654,192	1,654,192	50	50	0
		마이코플라즈마	319,963	319,963	70	30	0
	오리	바이러스 간염	149,985	149,985	50	50	0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소독·역학조사·이동제한·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축종	질병	예산액	집행액	보조금 요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1,954,260	1,954,260	70	30	0
		살포실시비	415,800	415,800	70	30	0
	말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선역, 비강폐렴	1,852,065	1,852,065	100	0	0
검진	소	젖소 결핵(PPD)	238,164.9	238,164.9	87	13	0
		한·육우 결핵(거래가축)	2,022,790	2,022,790	50	50	0
		브루셀라(MRT)	25,223.2	25,223.2	87	13	0
		브루셀라(RB)	638,931	638,931	72	28	0
	사슴	사슴 결핵	177,500	177,500	50	50	0
	돼지	오제스키병	161,480	161,480	94	6	0
	닭	추백리(평판)	8,450.8	8,450.8	60	40	0
		추백리(ELISA)	24,693.5	24,693.5	97	3	0
		조류인플루엔자	2,913,065	2,913,065	50	50	0
	말	전염성자궁염(CEM), 전염병 9종	57,935	57,935	100	0	0
기생충 구제 등	소	진드기	40,700	40,700	70	30	0
	꿀벌	응애류	2,006,375	2,006,375	70	30	0
		노제마병	1,431,108	1,431,108	70	30	0
		낭충봉아부패병	1,388,977.8	1,388,977.8	70	3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5)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이며, 말을 제외한 모든 축종이 지방비를 매칭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의 소유자인 마주의 경우 말의 질병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 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참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예방 및 1차적인 관리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말 사육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전액 국고지원의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비해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영세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말이나 소가 아닌 제3의 축종의 경우에도 일부 자부담과 지방비가 매칭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접종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지자체의 가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지방비 부과방안을 모색하고, 마주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여 적정 수준의 자부담 차등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원예단지조성사업 및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익 목적에 따른 매각 대상의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¹⁾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원예단지 7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반조성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은 10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10,500	10,500	0	0	10,500	10,50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사업의 개소당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사업시행주체가 확보한 토지에 국비(70%)와 지방비(30%)를 재원으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7~2018년에 걸쳐 1개소(충남 부여)를 시범조성하였고, 2018년에는 2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를 선정하였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선정한 1개소의 2년차 사업비와 2018년 신규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한 1년차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2018년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사업 예산 내역]

- 1개소 × 100억원 × 70% × 50%(2년차) = 35억원
- 2개소 × 100억원 × 70% × 50%(1년차) = 7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20-370

한편, 맞춤형농지지원 사업²⁾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 농업인·귀농인·전업농 등이 필요로 할 경우 매도·임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기존 2개 사업(농지규모화, 농지매입비축)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4,183억원 중 3,466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716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맞춤형 농지지원	388,300	418,300	0	0	418,300	346,661	0	71,63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조성된 스마트원예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경영체에게 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승인하였으므로, 공익 목적에 따른 매각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선정되어 2018년 착공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충청남도 부여군)의 토지확보주체는 입주경영체(농업회사법인 W 등)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주경영체가 확보한 토지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을 이용하여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을 조성하였다.

2) 코드: 농지관리기금 2631-350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추진현황]

	2017-2018 사업(부여)
사업목적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집적화 및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건인
사업자	시·군
조성방법	지자체에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구축 → 입주경영체 주도로 생산시설(온실), 유통시설(APC) 등 조성
토지확보주체	입주경영체
착공	2018.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공사에서 매입하여 보유한 농지를 전업농 육성대상자(2030세대 등 청년농, 후계농, 귀농인, 일반농)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인 임차료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합의하여 5~10년간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가 2017년 선정된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대상지역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충청남도 부여군 일대 토지(10,943㎡)를 농업회사법인 W³⁾에 매각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2018.07)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지의 매각을 승인(2018.09)하였다⁴⁾.

매입비축농지를 매입한 농업법인은 해당 지역에 입주할 경영체 중 한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매각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각은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2의2항⁵⁾에 규정되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사는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

3) 농업회사법인 W가 전체 입주경영체의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1%이다.

4) 매도 시 원금과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2019년 7월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었다.

5)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2(농지의 매입·매도 등) ② 공사는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간척농지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농지 활용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단지는 재배시설의 집적화,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업구조개선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매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스마트원예단지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특정 법인인 바, 매각필지의 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특정 법인이라는 점에서 공익목적으로 매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토지 매각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농어촌공사법」에 규정된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 목적에 따른 매각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관련 토지 매각 현황]

(단위: m², 천원)

대상농지	매입연도	공사매입액(A)	공사매도액	
			감정평가액(B)	차액(B-A)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0-1	2011	41,211,000	71,577,000	30,366,000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0-2	2011	77,254,000	134,178,000	56,924,000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0-3	2011	14,174,000	24,618,000	10,444,000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43-4	2014	99,050,000	130,746,000	31,696,000

주: 매입, 매도 가격은 감정평가액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¹⁾은 농촌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농촌의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의 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은 24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촌고용 인력지원	2,440	2,440	0	0	2,440	2,440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센터운영비를 중심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인력운영비를 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번기에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중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 농협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 위치한 인력중개센터에 일자리 중개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영농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개소당 6,800만원씩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 사업비 34억원 중 국비보조율 70%를 적용한 2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6-333

동 사업의 지원자금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중개 전담인력의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 센터운영비와 실제 농작업 희망자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인력운영비로 구분된다. 2018년 사업추진결과에 따른 집행실적을 보면, 센터운영비의 경우 당초 10억 7,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81.8%인 8억 7,582만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3억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48.5%인 6억 3,481억원을 사용하였다. 인력운영비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성격으로 농가인력 중개에 따라 농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의 집행실적은 농촌인력중개센터가 활발하게 인력을 중개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나 2018년 사업추진 결과 인력운영비 사업의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의 예산이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비를 중심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만원)

구분		계획액	집행액
센터운영	인건비	80,461	70,044
	일반수용비	21,035	15,414
	기타운영비	2,393	992
	여비	2,602	1,042
	공공요금 및 제세	609	90
	소계(A)	107,100	87,582
	A/C	45.0%	58.0%
인력운영	교육비	12,796	6,147
	교통비	93,601	42,045
	숙박비	1,624	83
	기타	22,879	15,206
	소계(B)	130,900	63,481
	B/C	55.0%	42.0%
합계(C)		238,000	151,064

주: 도표의 수치는 국고지원액에 한하며, 국고의 비율은 70%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예산의 내역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보조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 있으므로, 승인 기관을 보조사업자가 아닌 주무부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예산은 중개 전담인력의 인건비, 여비, 회의비 등 센터운영비와 실제 농작업 희망자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인력운영비²⁾로 나뉜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농협중앙회가 인력운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역변경을 할 수 있고, 센터운영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의 승인에 의해 세부항목 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사업자의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지침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 내역 간 승인기관을 정비하여 승인기관을 보조사업자가 아닌 주무부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내역간 승인기관 현황]

항목	승인기관	세부항목	승인기관
센터운영비 (총사업비 45%)	농림축산 식품부	인건비(총사업비 35%이내)	농협중앙회
		운영비(총사업비 5%이내)	
		홍보비(총사업비 5%이내)	
인력운영비 (총사업비 55%)		교육비(총사업비 5%이내)	농협중앙회
		교통·수송·숙박비 (총사업비 45% 이내)	
		기타(총사업비 5%이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인력운영비 중 교육비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농작업 초보자에 대한 교육비로 농가에 지급되며, 농작업자 1인당 1일 2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장 3일까지 지급되는 비용이다. 교통비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 가는 왕복 교통비이고, 숙박비는 농작업 참여자의 숙박비로 인당 1일 최대 2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농협인력중개센터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농기구, 장갑, 모자, 토지, 작업복 등 작업도구와 물이나 간식비도 구입할 수 있다.

가. 현 황

정책연구개발 사업(R&D)¹⁾은 농식품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연구개발 사업(R&D)의 2018년도 예산액 21억 3,900만원 중 21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R&D)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 연구개발 사업 (R&D)	2,139	2,139	370	0	2,509	2,105	388	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정책연구개발 사업(R&D)은 매년 반복되는 이월을 시정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해 44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사업추진결과 25개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되었으나, 19개 과제는 2018년 12월 말까지 미완료되어 이월되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31-300

[2018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R&D) 이월과제 현황]

(단위: 천원)

과제명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1)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 연구	44,520	19,080	18.06.05~19.03.18	19.03.18	농촌경제연구원
(2) 환경친화 축산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31,500	13,500	18.10.30~19.01.27	19.01.27	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3) 동물용의약품 관리법령 법제 연구	50,400	21,600	18.06.27~19.03.22	19.03.22	한국법제연구원
(4)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110,400	73,600	18.06.05~19.01.01	18.12.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5) 학교 과일간식 지원 타당성 연구	17,595	20,405	18.08.24~19.01.19	18.01.1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6) 대한민국 농정역사 집대성 및 발전방향 모색	42,500	42,500	18.07.30~19.01.25	19.01.25	농촌경제연구원
(7) 지방분권 농촌지역개발의 거버넌스 정립방안 연구	14,000	6,000	18.09.05~19.02.08	19.02.08	농촌경제연구원
(8) 공익형 직불제 이행체계 구축 방안	33,900	15,700	18.10.08~19.04.04	19.04.04	(사)농정연구센터
(9) 사설동물보호소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0	29,400	18.12.20~19.03.19	19.03.19	잘기움 행동치료동물병원
(10) 계란의 유통단계별 가격연동성 분석 연구	18,550	7,950	18.11.08~19.03.05	19.03.0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1) 가금(오리) 사육제한 시행 결과 평가 및 실행지침 수립연구	33,250	14,250	18.12.03~19.05.02	19.04.2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2) 김치산업 통계조사의 정확도 제고 방안 연구	34,650	14,850	18.10.04~19.01.31	19.01.31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3) 급식 실태 및 식품지원제도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44,520	19,080	18.10.31~19.04.30	19.04.30	농촌경제연구원
(14)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27,566	11,814	18.11.08~19.02.05	19.02.05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5)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성공요인 분석 연구	9,750	9,750	18.10.18~19.01.15	19.01.25	(재)전북연구원
(16) 사슴 산지가격의 공정성 제고 및 유통투명성을 위한 가격조사 개선방안 연구	0	36,695	18.12.24~19.05.23	19.05.23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7)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및 농민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방안	31,780	13,620	18.12.04~19.05.05	19.05.05	농촌경제연구원
(18) 농업 관련 정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19,040	8,160	18.11.30~19.04.29	19.04.29	농촌경제연구원
(19) BSE 관련 한·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 경과와 정책적 시사점	9,800	9,800	18.09.05~19.02.01	19.02.01	(유)농업무역 개발원
합계	573,721	387,754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이월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년 10% 이상의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방식의 사업 추진은 결산 시점에서 재정 투입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게 하므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사업은 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 연도에 집행할 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연구개발 과제 역시 사업성과 결산 시점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후 신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되도록 연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추진한 정책연구개발 사업 과제 44개 중 43.2%인 19개 과제를 연도 내에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제추진은 농식품 정책수립 관련 기초 자료 제공의 적시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도별 정책연구개발 사업(R&D)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3	3,260	3,260	561	3,068	1,875	762	431
2014	2,580	2,580	762	3,342	2,914	414	14
2015	2,503	2,503	414	2,917	2,250	620	47
2016	2,252	2,252	620	2,872	2,551	319	2
2017	2,139	2,139	319	2,458	2,075	370	13
2018	2,139	2,139	370	2,509	2,105	388	16

주: 2013년 예산현액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부 신설(2013.3.23.)로 이체로 인해 발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연도별 정책연구개발 사업(R&D)의 종료 현황]

(단위: 건, %)

연도	연도내 완료	연도내 미완료(A)	합계(B)	비율(A/B)
2013	16	27	43	62.8
2014	52	10	62	16.1
2015	22	22	44	50.0
2016	32	14	46	30.4
2017	33	16	49	32.7
2018	25	19	44	4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 현 황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¹⁾은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식진흥원에 전액 보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액 121억 600만원을 전액 한식진흥원에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2,106	12,106	0	0	12,106	12,106	0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식진흥원은 2017년까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던 전문인력양성 사업과 한식문화 해외 홍보 사업을 2018년부터 이관받았으나, 이관받은 1차연도에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은 한식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하여 한식진흥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내기반정립(46억 6,300만원), 음식관광활성화(17억 5,000만원), 전문인력양성(25억 2,700만원), 한식해외확산(31억 6,600만원)을 계획으로 121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4-332

한편, 한식해외확산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한식문화 해외홍보 사업은 2017년까지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이었고, 전문인력양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7년까지는 중소식품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소관하였으나, 업무적합도 등을 이유로 2018년부터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이관되어 한식진흥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aT에서 한식진흥원으로 이관된 한식문화 해외 홍보 사업의 경우 20억원이 이관되었으나 6억 8,510만원(△34.3%)이 집행되었고, 전문인력양성 사업 중 해외 한식교육 사업도 계획대비 크게 위축(△11.6%)되었다.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에서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이관한 것은 적합도가 높은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이관한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한식진흥원은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 한식진흥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2019년 예산액
	계획			집행액	
	당초(A)	수정(B)	(B-A)		
1. 국내기반정립					
1-1. 한식콘텐츠 DB구축 및 개발·응용	325	494.8	169.8	494.8	850
1-2.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522.0	31.0	522.0	491
1-3. 한식관련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60	42.0	△18	42.0	-
1-4. 한식진흥원 운영비	3,787	5,077.4	1,290.4	5,077.4	3,668
2. 음식관광활성화					
2-1. 음식관광상품 개발·보급	500	355.0	△145	355.0	700
2-2. 음식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홍보	1,250	934.6	△315.4	934.6	-
2-3.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	-	-	-	1,109
3. 전문인력양성					
3-1. 국내 한식교육	926	1,040.0	114	1,040.0	2,500
3-2. 해외 한식교육	1,601	1,414.6	△186.4	1,414.6	

사업명	2018년				2019년 예산액
	계획			집행액	
	당초(A)	수정(B)	(B-A)		
4. 한식해외확산					
4-1.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540	1,295.0	755	1,295.0	-
4-2. 글로벌 한식산업조사 및 DB활용	626	245.5	△380.5	245.5	-
4-3. 한식문화 해외 홍보	2,000	685.1	△1,314.9	685.1	-
합 계	12,106	12,106.0	0.0	12,106.0	9,858

주: 음영은 2018년부터 동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마사회 보수, 복리후생비의 문제점 분석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07
2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제 필요 대비 새만금 유지관리금 적립 미흡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13
3	한국농어촌공사 장기임대차 융자 사업의 연례적 계획변경 및 불용액 과다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17
4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가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20
5	한국농어촌공사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간 배수시설 개선 목표 미달성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24
6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의 수행방식 개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29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PLANET 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 조정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33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신비즈니스모델 민간 공모 사업의 품목 지원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36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연례적인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의 기금 관리 정원 대비 현원 부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38
1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수매지원 융자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41
1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부처 사업인 술산업 관련 용역 추진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44
1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조직원 직원의 자녀 입학금 지원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47
13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비정보화 사업을 통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51
1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예산상 계획 대비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지연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55



해양수산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5,176억 2,000만원이며, 1조 5,783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1%인 1조 5,483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300억 5,3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8,243	68,243	68,243	165,437	162,131	3,305	0	9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3,543	23,543	23,543	15,041	12,251	2,790	0	81.5
교통시설특별회계	1,411,675	1,411,675	1,411,675	1,383,107	1,360,025	23,082	0	98.3
에너지개발사업특별회계	3,840	3,840	3,840	1,608	1,350	257	0	84.0
지역발전특별회계	10,319	10,319	10,319	13,174	12,556	618	0	95.0
합계	1,517,620	1,517,620	1,517,620	1,578,373	1,548,321	30,053	0	98.1

자료: 해양수산부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9,070억 1,8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5조 4,833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3,016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20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545,503	2,550,903	2,674,762	2,590,480	43,291	40,991	96.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44,437	1,057,482	1,108,775	1,055,801	41,353	11,621	95.2
교통시설특별회계	1,393,985	1,411,675	1,641,710	1,357,093	215,207	69,410	8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0,585	73,127	73,127	73,127	0	0	100
지역발전특별회계	402,519	402,519	408,644	406,855	1,780	9	99.6
합계	5,437,029	5,495,706	5,907,018	5,483,356	301,631	122,031	92.8

자료: 해양수산부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7,269억 2,800만원이며, 6,768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6,752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7,9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수산발전기금	726,928	726,928	726,928	676,806	675,227	1,579	0	99.8

자료: 해양수산부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7,269억 2,8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6,752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0억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수산발전기금	726,928	726,928	727,360	675,227	948	36,049	92.8

자료: 해양수산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23억 9,400만원 (3.7%)이 증가한 2조 2,23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205억원 (12.6%)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836,568	1,517,620	1,517,620	1,548,321	30,693	△288,255
기금	707,450	726,928	726,928	675,227	△51,701	△32,223
합계	2,544,018	2,244,548	2,244,548	2,223,548	82,394	△320,478

자료: 해양수산부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40억 5,100만원(1.0%) 이 감소한 6조 1,58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982억 5,600만원 (3.1%)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649,389	5,437,029	5,495,706	5,483,356	△12,350	△166,033
기금	707,450	726,928	726,928	675,227	△51,701	△32,223
합계	6,356,839	6,163,957	6,222,634	6,158,583	△64,051	△198,256

자료: 해양수산부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해양수산부의 자산은 31조 1,001억 3,700만원, 부채는 1,530억 9,200만원으로 순자산은 30조 9,470억 4,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6,928억 3,600만원, 투자자산 2조 2,507억 5,400만원, 일반유형 자산 7조 1,785억 1,900만원, 사회기반시설 20조 5,798억원, 기타비유동자산 3,768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조 1,056억 9,600만원(15.2%) 증가하였다. 이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투자자산 2,565억 8,200만원 증가, 민간자본투자사업 관련 누락자산 등재 등으로 사회기반시설 3조 809억 1,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56억 1,400만원, 장기차입부채 209억 5,100만원, 장기충당부 채 53억 2,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812억 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95억 4,400만원(20.5%)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533억 1,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 한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1,100,137	26,994,441	4,105,696	15.2
Ⅰ. 유동자산	692,836	674,878	17,958	2.7
Ⅱ. 투자자산	2,250,754	1,994,172	256,582	12.9
Ⅲ. 일반유형자산	7,178,519	6,436,144	742,375	11.5
Ⅳ. 사회기반시설	20,579,800	17,498,881	3,080,919	17.6
Ⅴ. 무형자산	21,371	13,961	7,410	53.1
Ⅵ. 기타비유동자산	376,857	376,405	452	0.1
부 채	153,092	192,636	△39,544	△20.5
Ⅰ. 유동부채	45,614	30,198	15,416	51.0
Ⅱ. 장기차입부채	20,951	74,263	△53,312	△71.8
Ⅲ. 장기충당부채	5,322	2,395	2,927	122.2
Ⅳ. 기타비유동부채	81,205	85,780	△4,575	△5.3
순 자 산	30,947,046	26,801,805	4,145,241	15.5
Ⅰ. 기본순자산	5,706,306	5,706,306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2,929,661	18,880,659	4,049,002	21.5
Ⅲ. 순자산 조정	2,311,079	2,214,840	96,239	4.4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142억 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조 3,188억 1,300만원, 관리운영비 3,776억 9,100만원, 비배분비용 5,448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038억 2,800만원, 비배분수익 3조 3,651억 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582억 3,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조 212억 1,700만원(81.8%) 감소한 6,724억 4,000만원이며, 이는 민투자업(BTO) 관련 전기오류수정이익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2조 8,273억 6,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항만개발 및 관리 프로그램(7,645억 6,400만원)과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프로그램(3,413억 6,000만원), 해양수산연구개발 프로그램(2,715억 3,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513억 7,100만원과 경비 1,263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전기오류수정손실 4,855억 2,700만원과 평가손실 477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114,985	3,170,940	△55,955	△1.8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18,813	3,279,844	38,969	1.2
나. 프로그램 수익	203,828	108,904	94,924	87.2
II. 관리운영비	377,691	370,557	7,134	1.9
III. 비배분비용	544,873	689,902	△145,029	△21.0
IV. 비배분수익	3,365,108	537,741	2,827,367	525.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72,440	3,693,657	△3,021,217	△81.8
VI. 비교환수익 등	58,232	60,103	△1,871	△3.1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14,208	3,633,554	△3,019,346	△83.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26조 8,018억 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0조 9,470억 4,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조 1,452억 4,100만원(15.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6,142억 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962억 3,9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조 6,632억 1,0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6조 161억 8,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3,529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이익 △4억 1,0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966억 4,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6,801,805	26,404,380	397,425	1.5
II. 재정운영결과	614,208	3,633,554	△3,019,346	△83.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663,210	3,951,302	711,908	18.0
IV. 조정항목	96,239	79,677	16,562	20.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0,947,046	26,801,805	4,145,241	15.5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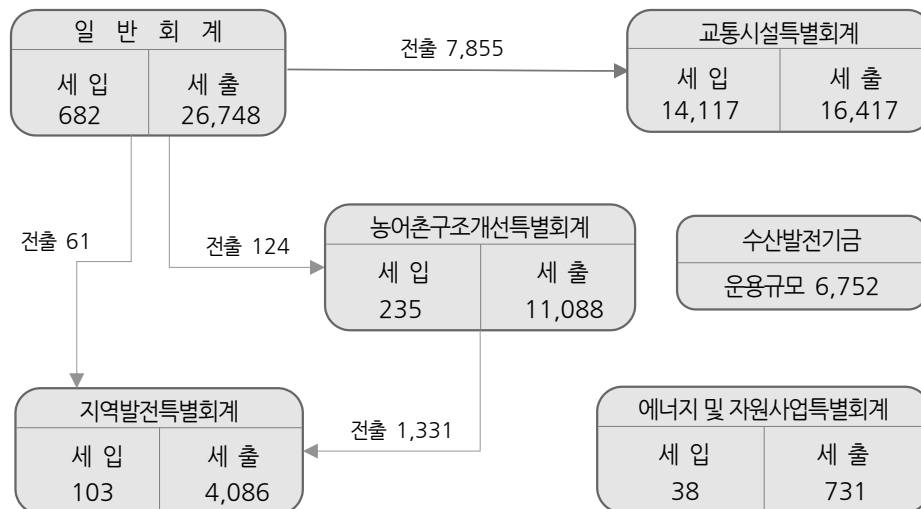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7,855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61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124억원 전출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331억원 전출되었다.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TAC참여 어업인경영개선자금 사업, ② 본부인건비 사업이 있다.

TAC참여 어업인경영개선자금 사업은 연내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9억원이 감액(92억원→83억원)되었고, 본부인건비 사업은 10억원이 감액(389억원→379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한국해양진흥공사출자 사업, ②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처리 사업 등이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출자 사업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300억원이 증액(1,000억원→1,300억원)되었고,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수거 처리 사업은 침몰선박 현장조사 및 선박 잔존유 제거를 위하여 3억 5,000만원이 증액(117억원→120억 5,000만원)되었다.¹⁾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② 국가어항 사업 등이 있다.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은 육상전원공급설비 모델개발을 위하여 90억원이 증액되었다.²⁾ 국가어항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을 위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³⁾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5.

3)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8.5.

해양수산부는 ① 안전한 유통인프라 구축과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② 해운시장 경쟁력 확보, ③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④ 국가 해양력 증대와 해양생태계 보전, ⑤ 해양수산분야 기술 개발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목인 시험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홍보물품 구입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집행하였다. 시험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시험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 등이 정한 시험연구비의 집행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이월이 2,123억원 발생하였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과소 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세입이 부족한 경우 사업 자체의 지연사유가 없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세입재원의 부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어업 실태조사 사업은 육상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명예 어업조사원 221명을 채용하는 내용으로 예비비 4억 7,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연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예측불가능성 및 시급성 등 예비비 집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시험연구비 목적 외 사용

가. 현 황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관련된 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9개 경비를 통합하여 설치된 비목이며,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시험연구비(210-13목)의 집행범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목)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중 시험연구비는 수산시험연구(R&D) 사업¹⁾에 184억원, 수산생물방역 체계 구축(R&D) 사업에 45억원 등 총 22개 세부사업에 417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0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시험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총계(시험연구비)	41,761	41,761	2,079	△2,475	41,365	40,727	74	563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632-300

나. 분석의견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할 수 있으나, 2018년도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물품 구입, 직원 워크숍 개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지급,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지급 등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에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시험연구비 부적정한 집행 사례]

(단위: 원)

세부사업명	금액	내용
수산시험연구(R&D)	5,500,000	기관홍보용 기념품 미백비누 구입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기본경비(R&D)	9,000,000	수산과학조사선 직원 워크숍 장소 임차료
	4,499,900	수산과학조사선 선박직원 워크숍 기념품 화장품세트 구입
	600,000	워크숍 강사료 지급
	350,000	수산과학조사선 선박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지급
수산시험연구(R&D)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R&D)	6,530,000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지급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기관 홍보자료 인쇄 또는 홍보물품 구입비, 법정교육 또는 일반 교양 교육 강사료,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등은 기관 운영비에서 지출함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총액)국립수산과학원기본경비(R&D) 사업²⁾에 일반수용비 1억 3,200만원, 임차료 6,600만원, 국내여비 1억 8,6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3618-200

연구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시험연구비를 기관의 운영비 성격의 항목에 잘못 집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시험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소하므로, 해양수산 분야 R&D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관련 지침 등이 정한 시험연구비의 집행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18년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 결산은 1조 3,600억 2,500만원, 세출 결산은 1조 3,570억 9,300만원 규모이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조 6,417억원 중 1조 3,571억원을 집행하고 694억원을 불용, 2,152억원을 이월하는데, 이 중 2,123억원은 세입 재원 없는 이월이다.

[2018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결산	2018			수납률· 집행률 (B/A)	2019예산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A)			
세입	1,761,194	1,763,008	1,411,675	1,411,675	1,360,025	96.3	1,379,238
전년도 이월금	280,208	395,936	396,405	396,405	384,052	96.9	0
일반세입	231,571	207,279	229,746	229,746	190,449	82.9	239,294
일반회계 전입금	1,249,414	1,159,793	785,524	785,524	785,524	100.0	1,139,944
세출	1,114,603	1,335,490	1,393,985	1,411,675	1,357,093	94.9	1,367,604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2,123억원 규모의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시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의 전년도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 편성 시 그간 과소

계상된 전년도 이월금을 확대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고 세입예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전년도 이월액만큼 재원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2013~2017년 세계잉여금은 △465억원~1,569억원 규모이고 2017년 세출예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2,300억원, 923억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였음에도 2018년 세입예산 전년도 이월금은 예년 대비 3,000억원 가량 높은 3,964억원을 편성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 결산액은 3,841억원이나 이 중 2,300억원은 전년도 세출예산 이월에 따른 것으로, 세입결산액이 세출예산현액 대비 2,817억원 부족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연도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계정	2013			2014			2015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 잉여금 (A-B)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 잉여금 (A-B)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 잉여금 (A-B)
항만계정	0	1,359	1,359	1,092	1,554	△462	2,830	2,417	413

계정	2016			2017			2018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 잉여금 (A-B)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 잉여금 (A-B)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 잉여금 (A-B)
항만계정	3,715	2,146	1,569	3,841	2,300	1,540	29	2,152	△2,123

자료: 해양수산부

결과적으로 2018년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에서는 2,123억원 규모의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전년도의 세출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¹⁾

해양수산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이월액 2,152억원의 94.4%인 2,032억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세입재원

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부족한 경우 사업 자체의 지연사유가 없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2019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5,828억원으로, 세입예산 1조 3,792억원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다시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이월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세입의 수납률을 개선하는 등 세입 재원의 부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어업지도관리 사업¹⁾은 연·근해어선에 대한 조업지도, 불법어업을 단속을 수행하고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관리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210억 8,800만원 중 1,58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83억 8,700만원을 이월, 7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실태조사(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예비비 4억 7,000만원을 배정받아 명예 어업조사원 221명을 채용하였으나, 채용기간 종료(2019.1) 후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 4억 200백만원 중 3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어업지도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어업지도관리	121,088	121,088	36,943	470	158,501	149,383	8,387	731

자료: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실태조사(일자리)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규모	8개 권역, 39개 위판장에 명예 어업조사원 221명 투입
채용대상	해양수산 분야 경력자 및 관련 학교 졸업생 우대
근로조건	주5일, 1일 4시간 근무 / 일당 6만원
근로기간	약 6주 (실근무일 30일)
주요임무	미성어 어획, 불법어구 사용 실태 파악 및 보고서 작성
기대효과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유형 등 기초자료 수집

주: 계획된 채용인원은 236명이었으나 일부가 채용을 포기하여 실제 221명 채용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132-303

나. 분석의견

불법어업 실태조사(일자리) 사업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미흡하고, 연내 집행가능성도 낮은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²⁾ 및 「국가재정법」 제22조³⁾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 1% 이내의 금액을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⁴⁾ 예비비는 예산 성립 후 변화한 여건 또는 정세변동에 대응하여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입법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예측불가능성, 긴급성이 인정되고 이·전용 등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불법어업 실태조사(일자리) 사업은 명예어업 조사원을 채용하여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행위의 유형과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육상 불법어업 단속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에 집중되어 있던 단속행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나, 이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건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명예 어업조사원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기초조사 역할에 그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명예어업 조사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육상에서의 불법어업행위 실태보고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나, 동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9년 7월까지로 2019년 5월말 기준 동 사업의 결과 및 활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2018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예비비 3조원이 편성되었다.

[2018회계연도 불법어업 실태조사(일자리) 사업 추진 경과]

내용	일자
예비비 신청	2018.10.24
예비비 배정	2018.10.31
명예어업 조사원 채용공고	2018.11.9. ~ 2018.11.16
명예어업 조사원 채용공고(2차)	2018.11.20. ~ 2018.11.27
명예어업 조사원 채용(1차)	2018.11.29 ~ 2019.1.11
명예어업 조사원 채용(2차)	2018.12.10 ~ 2019.1.22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2018년 11월 또는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인 명예 어업조사원의 채용기간 종료 후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예비비로 배정된 금액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을 위한 예비비를 2018년 10월 24일에 신청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절차와 인력모집을 위한 공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채용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당시부터 예비비가 연내에 집행되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예비비가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¹⁾으로, 해양안전 인식 제고,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행동 요령 교육을 위하여 각각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에 해양안전체험관과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 50억원, 56억 3,8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다. 사업시행주체인 경기도와 진도군은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57억 600만원, 141억 3,200만원 중 각각 22억 4,900만원, 23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34억 5,700만원, 117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개요]

구분	규모	주요시설	총사업비	운영비
해양안전체험관 (경기 안산)	연면적 9,550㎡, 지상 3층	선박안전체험, 해양생존체험 등	400억원 (국비 75%)	국비 100%
국민해양안전관 (전남 진도)	연면적 7,155㎡, 지하1층/지상4층	해양재난대응관, 해양생존체험, 추모관 등	270억원 (국비 100%)	국비 100%

자료: 해양수산부

[2018회계연도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13,542	13,542	497	0	14,039	13,811	102	126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5,000	5,000	0	0	5,000	5,000	0	0
국민해양 안전관 건립	5,638	5,638	0	0	5,638	5,638	0	0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6332-302의 내역사업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의 실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시행 주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경기도	5,000	10,706	15,706	2,249	13,457	0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진도군	5,638	8494	14,132	2,353	11,779	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사업 지연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후 3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²⁾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심의·의결이 2017년 4월 완료되어 2017년 8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함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다.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추진계획]

구분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설계	~2016	2017.8~2018.8	~2016	2017.8~2019.1
건립	~2017	2018.12~2020.12	~2018	2019.6~2020.12
전시물 설치·시범운영	-	2020.12~2021.2	-	2020.12~2021.3
개관	2018~	2021.3~	2019~	2021.4~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의 경우 2015년 국비교부액 13억원 중 10억 8,000만 원을 재이월하였으나 2017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2018년 12월 국고반납 처리하였고, 2016년 국비교부액 50억원 중 2018년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7억 2,424만원이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의 경우 2016년 국비교부액 42억 5,200만원 중 2018년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11억 6,300만원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³⁾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2018년 8월까지로 연도말 착공소요는 2016년과 2017년 교부액으로 충당이 가능하고,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2019년 1월까지로 연내 착공이 불가함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차례에 걸쳐 2018년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전액이 이월되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이월·재이월할 수 있으나 재재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⁴⁾ 해양수산부는 2016년 교부액 중 2018년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을 요청하고, 향후 보조금 교부 시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의 교부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해양안전체험관	2015년 1,300 교부	전액 이월	전액 재이월	220 집행 1,080 반납	-
	2016년 5,000 교부	-	전액 이월	11 집행 4,989 재이월	2,265 집행 2,724 반납요청
	2017년 5,700 교부	-	-	19 집행 5,681 이월	이월액 전액 재이월
	2018년 5,000 교부	-	-	-	전액 이월
국민해양안전관	2015년 200 교부	전액 이월	165 집행 35 재이월	35 집행	-
	2016년 4,252 교부	-	전액 이월	736 집행 3,516 이월	2,353 집행 1,163 반납요청
	2017년 5,174 교부	-	-	전액 이월	전액 재이월
	2018년 5,638 교부	-	-	-	전액 이월

자료: 해양수산부

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가. 현 황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¹⁾은 노후·손상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여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요 예산을 미리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비충액사업으로 편성하고,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충액계상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예산현액 2,119억 7,800만원 중 1,412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506억 7,400만원을 이월, 201억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항만시설유지 보수(비충액)	131,834	149,524	18,269	△2,172	165,621	107,381	41,695	16,545
항만시설유지 보수(충액)	32,466	32,466	12,609	1,282	46,357	33,823	8,979	3,555
합계	164,300	181,990	30,878	△890	211,978	141,204	50,674	20,10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실적이 미흡하므로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항만시설유지보수(비충액) 사업에서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통영·군산·목포에 소규모 항포구의 접안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176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나, 7개 내역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하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비충액) 교통시설특별회계 5060-300
(충액) 교통시설특별회계 5060-460

[2018회계연도 항만시설유지보수(비충액) 추경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항만시설유지보수 (비충액)	131,834	149,524	18,269	△2,172	165,621	107,381	41,695	16,545	64.8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0	9,000	0	0	9,000	8,843	127	30	98.3
소매물도 접안시설	0	2,355	0	0	2,355	1,707	486	162	72.5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0	785	0	0	785	22	703	60	2.8
기항지(통영~제승당) 등 접안시설	0	998	0	0	998	559	387	52	56.0
통영 여객터미널	0	1,252	0	0	1,252	61	1,034	157	4.9
관리도 선착장	0	1,300	0	0	1,300	689	437	174	53.0
기항지(외달도, 달리도) 접안시설	0	2,000	0	0	2,000	601	1,258	141	30.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²⁾ 7월 이전에 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 및 예산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9~10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차년도 1월에 이르러서야 공사에 착공하였다. 또한 유사한 시설공사의 평균적인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추경예산 반영 사업의 공사기간이 최대 12개월 가량 소요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018년 추경예산 반영 사업의 추진경과]

사업명	설계기간	공사기간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18.7~'19.1	'19.1~'19.12
소매물도 접안시설	'18.6~'18.10	'18.11~'19.7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18.6~'18.9	'19.1~'19.10
기항지(통영~제승당) 등 접안시설	'18.6~'18.10	'18.11~'19.3
통영 여객터미널	'18.6~'18.9	'19.1~'19.6
관리도 선착장	'18.6~'18.9	'18.10~'19.5
기항지(외달도, 달리도) 접안시설	'18.6~'18.10	'18.11~'19.10

자료: 해양수산부

2)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6일 국회 제출되고 5월 21일 확정되었다.

가. 현 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¹⁾은 도서지역 거주 어가에 대하여 수산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로 8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20,120→20,820어가)하고 지원액을 증액(연 55만원→60만원)함에 따라 예산이 전년대비 12억원(12.9%)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01억 9,3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실집행액은 80억 4,100만원이다.

[2018회계연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193	10,193	0	0	10,193	10,193	0	0

자료: 해양수산부

[2018회계연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천광역시	726	726	726	0	726	171	305	250
경기도	81	81	81	0	81	32	49	0
충청남도	637	637	637	0	637	551	0	86
전라북도	637	637	637	0	637	502	0	135
전라남도	5,238	5,238	5,238	0	5,238	4,460	77	701
경상북도	83	83	83	0	83	66	0	17
경상남도	881	881	881	0	881	700	0	181
제주특별자치도	1,910	1,910	1,910	0	1,910	1,559	0	351
합계	10,193	10,193	10,193	0	10,193	8,041	431	1,721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60-310

나. 분석의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월부터 전체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등 2018년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 정비를 통하여 사업시행주체가 수산직불금 지급요건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 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2)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도서지역 거주 어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³⁾ 이 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는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한 조건불리보조금(이하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이 포함된다.⁴⁾

이와 관련하여 2018년 하반기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과 수산직불금 동시수급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⁵⁾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 옹진군, 전남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수급적격성 심사가 예년대비 대비 지연되었고, 예산 일부가 이월되었다.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산직불금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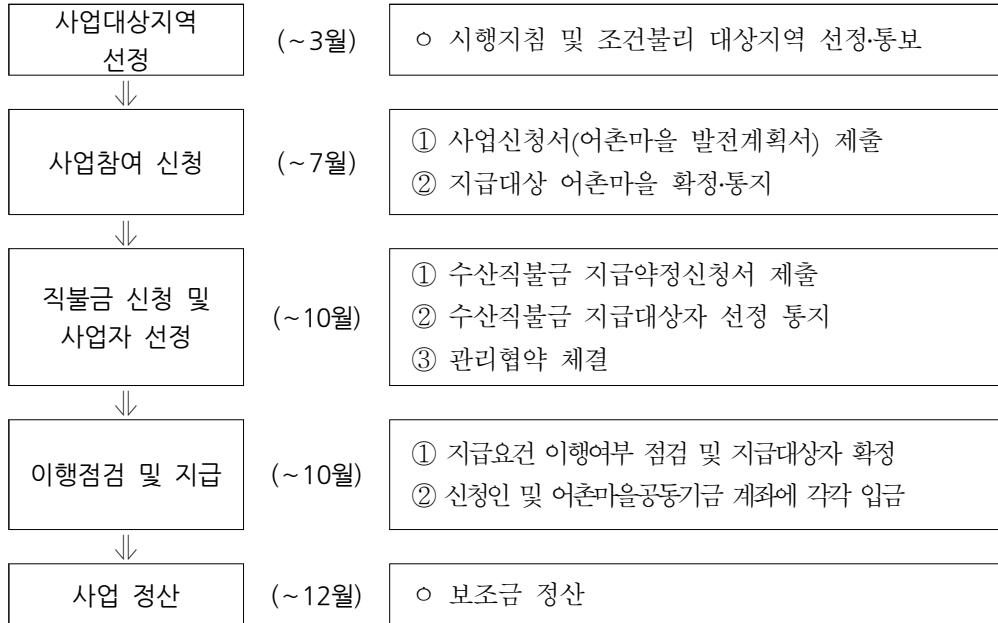
4)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산직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법 제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사람

5)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2018.11~2018.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 지급액이 50만원 이상이라도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연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동시수급 여부 점검 시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전적으로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금·수산직불금 동시수급자 선별 등 부정수급 방지조치를 면밀히 하지 않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정당한 수급자에 대하여도 수산직불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산직불금 지급 시 조건불리지역 계속 거주 여부, 어촌마을 공동기금 사용내용 외에도 전년도 농업직불금 수급액을 점검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⁶⁾하고, 향후 보조금 교부 시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6)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산직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수산직불금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가. 현 황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¹⁾은 지역별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물식품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20개 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역별로 연구중심, 유통중심, 가공중심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총 사업예산의 60% 이상을 연구·가공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33억 3,900만원 중 115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산물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13,339	13,339	0	0	13,339	11,559	1,780	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완공 단지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8년까지 완공된 12개 거점단지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영덕 거점단지의 계획대비 입주업체 수가 부진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2835-302

영덕 로하스수산물식품거점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당시 입주 의사를 밝힌 사업자 중 시설비 부담 및 이미 가동 중인 시설을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거점단지 운영·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기에 입주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이 낮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거점단지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제품개발, 가공, 보관, 유통 등 집적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성 완료된 수산물식품거점단지의 계획 대비 입주 업체 수]

(단위: 개)

지 역		거점단지 명	계획	실적
부산	부산	수산물식품가공산업산학연구센터	1	1
	부산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23	17
전북	고창	풍천장어웰빙센터	1	1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6	6
전남	목포	고기능수산물식품지원센터	15	15
	여수	수산물종합센터	52	47
	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13	11
경북	영덕	로하스수산물식품거점단지	24	9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1	1
	울진	붉은대게식품산업단지	1	1

주: 2018년 완공된 2개소(괴산, 보령)는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자료: 해양수산부

[조성 완료된 수산식품거점단지의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거점단지명		준공연월	주요 내용	연간 매출액		
				2016	2017	2018
부산	부산	'10.11	연구용역, 품질검사	5	3	3
전북	부안	'13. 2	어패류 유통	8	10	8
	고창	'15.12	민물장어 가공	404	450	500
	군산	'15. 8	쭈꾸미, 오징어 가공	64	127	222
전남	목포	'12. 6	연구, 제품개발	164	174	106
	여수	'13.10	어류, 멸치 유통	1,750	1,868	2,215
	영광	'16. 2	어패류 유통	-	20	17
경북	영덕	'16.12	대게 등 가공	-	113	132
	포항	'17. 7	과메기, 청어 등 가공	20	23	48
	울진	'17. 7	붉은대게 가공	-	12	47
합계				658	902	1,058

주: 2018년 완공된 2개소(괴산, 보령)는 제외하고 작성하였다.

자료: 해양수산부

둘째, 조성 중인 단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경과 점검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속초시에 수산식품거점단지(붉은대게타운)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2월 강원도가 사업추진을 최종적으로 포기함에 따라 2017년까지 기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이자 48억 4,500만원에 대한 국고 반납을 통보²⁾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축소(150억원→95억원³⁾), 예정부지의 항만계획 미승인으로 부지 선정 장기화, 지방재정여건의 어려움 및 예산투자 대비 사업효과 미비, 지역주민 반대의견 등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속초 거점단지 조성이 계획된 사업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사업공모 당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한 주민반대와 부지 선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공모 시에 사업계획 상 시설 종류와 비중, 부지선정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150억원→95억원)로 '17.12월 반납한 27억 5,000만원은 제외하였다.

3)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계획 상 홍보관, 연구시설 등의 비중이 낮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판매장을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

[속초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중단에 따른 보조금 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진행경과			반납금액	
사업 취소 승인 신청 (강원도→해수부)	사업 취소 승인 및 국고반납 통보 (해수부→강원도)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납 (강원도→해수부)	2017 교부	
			보조금	이자
2019.2.20	2019.3.11	2019.6~7월(예정)	4,750	95

자료: 해양수산부

현재 조성 중인 거점단지 역시 지자체 공모, 사업계획 변경, 사업부지 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해 거점단지의 경우 2017년 교부금 33억 7,500만원이 전액 2018년으로 이월되어 2018년에 전년도 이월액조차 소진하지 못하였음에도 2018년 예산 35억 8,3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2017년 교부금 일부와 2018년 교부금 전액이 이월되었다. 태안 거점단지와 해남 거점단지의 경우 2018년 예산 20억원, 3억 7,500만원이 각각 전액 교부되었으나 2019년 5월말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 못했다.

[수산물식품거점단지조성 사업의 추진경과]

지자체	추진경과	비고 (완공계획)
충남 보령	부지조성 및 설계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지연 - 기본공사 준공('18.12월) - 현재 추가공사 중으로 '19.10월 준공예정	(당초) '18 (지연) '19
경남 남해	날씨 등 현장여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지연	(당초) '18 (지연) '19
전남 화순	토지의 협의 보상 및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양돈단지 철거 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지연 - '19.3.12~7.9 실시설계 진행 중 '19.8월 중 시설공사 착공 예정	(당초) '18 (지연) '20
경기 화성	환경부가 '마른김 가공공장'을 폐수배출처리시설로 규정('18.3월)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 마른김 가공공장 51억원 → 0원 조미김 가공공장 61억원 → 111억원 (생산규모 확대) - '18.11월~'19.6월 실시설계 진행 중 - '19.8월 시설공사 착공 계획	(당초) '19 (지연) '20
충남 태안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 순연 - '19.5월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중 '19.7월 시설공사 착공 예정	(당초) '19 (지연) '20
전남 해남	- 실시설계 기간('19.4~'19.9) - 착공 예정('19.11)	(당초) '20

자료: 해양수산부

[조성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자체 (총사업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충남 보령 (176억원)	예산	3,965	-	4,381	-	-
	교부	3,965	-	4,381	-	-
	실집행	3,965	-	3,172	-	-
경남 남해 (147억원)	예산	375	3,375	3,583	-	-
	교부	375	3,375	3,583	-	-
	실집행	375	3,375	804	-	-
전남 화순 (140억원)	예산	375	3,000	-	1,100	2,525
	교부	375	3,000	-	100	2,525
	실집행	375	104	-	-	-
경기 화성 (150억원)	예산	-	375	3,000	3,375	750
	교부	-	375	1,220	2,580	-
	실집행	-	-	-	-	-
충남 태안 (100억원)	예산	-	375	2,000	2,625	-
	교부	-	375	2,000	625	-
	실집행	-	375	-	-	-
전남 해남 (150억원)	예산	-	-	375	2,250	4,875
	교부	-	-	375	1,250	-
	실집행	-	-	-	-	-

주: 실집행액은 2019년 4월말 기준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움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⁴⁾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 황

갯벌생태계 복원사업¹⁾은 폐염전·폐양식장 등 경제적 가치 상실로 훼손·방치되어 있는 과거 갯벌지역을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70%)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55억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갯벌생태계 복원	5,454	5,454	57	0	5,511	5,511	0	0

자료: 해양수산부

[2018회계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의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태안 갯벌생태계 복원	202	202	202	0	202	202	0	0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	934	934	934	321	1,255	630	625	0
서천유부도 갯벌생태계 복원	1,187	1,187	1,187	179	1,366	1,366	0	0
고창곰소만 갯벌생태계 복원	1,187	1,187	1,187	168	1,355	1,207	148	0
서산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	757	757	757	210	967	853	114	0
웅진 시·모도 갯 벌생태계 복원	1,187	1,187	1,187	22	1,209	0	1,209	0
합계	5,454	5,454	5,454	900	6,354	4,258	2,096	0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031-304

나. 분석의견

인천광역시 옹진 시·모도, 전라남도 순천만 등 일부 사업지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인근 토지소유자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 사전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옹진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8년 예산 반영된 실시설계비 11억 8,7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억 9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교량안전성 향상 등 주민 요구 반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여 부처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일시중지(실시설계 종료 '18.2월→'19.6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은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구조상 해수가 드나들지 못하여 발생하는 갯벌 퇴적·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고 대체 교량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2017년 사업 추진 당시 해양수산부는 도로 전체구간 570m 중 중앙부분 150m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교량구간 연장과 안전성 보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었다.

[옹진 시·모도 지역 사업 비교]

구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옹진 시·모도 갯벌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시행주체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업기간	2017~2021	2019~2022
총사업비	70억원	150억원
국비보조율	70%	80%
사업내용	- 갯벌모니터링 및 해양환경조사 - 기존구조물(제방 및 PC박스)철거 - 해상교량 축조(150m)	- 기존구조물(제방 및 PC박스)철거 - 해상교량 연장(150m→320m) - 접속도로 개량

자료: 해양수산부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총사업비 46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 9억 3,4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5,500만원 중 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다. 동 사업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외 인근 토지소유자의 추가 토지매입 민원제기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후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해역이용협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6월초에 공사에 착공하였다.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경과]

사업내용	추진일정	비고
부지 매입	2016.5. ~ 2018.8.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19.2. ~ 2019.3.	「지방재정법」 제37조
실시설계	2018.4.3.~2018.12.20.	계약금액 53,893천원
복원 공사	2019.6.3.~2019.12.30.	계약금액 558,277천원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해양수산부는 1회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2)을 위반하였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2018회계연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교부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일자	교부액
인천광역시	2018.06.25.	1,187
충청남도	2018.06.01.	2,146
전라남도	2018.03.15.	934
전라북도	2018.06.15.	1,187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웅진 시·모도와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조율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지연 및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¹⁾은 재해, 적조, 홍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기간은 최대 3년, 한도는 재해피해복구 자부담액에 대하여 최대 2,000만원²⁾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이후 매년 30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집행액은 8~39억원에 불과하다.

[2016~2018회계연도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6	30,000	30,000	0	30,000	796 [796]	0	29,204
2017	30,000	30,000	0	30,000	4,070 [3,753]	0	25,930
2018	30,000	30,000	0	30,000	14,371 [3,872]	0	15,629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과거 최대 지원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 피해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303억원을 지원한 사례를 기준으로 매년 3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2016~2018년 기간 동안 매년 50% 이상을 불용하였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03

2)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태풍, 저·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중 어업인이 자부담해야하는 105억원과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액 71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으나, 실제 융자액은 39억원에 불과하였다.

[2016~2018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피해유형	융자가능 대상	융자가능 금액(A)	융자 인원	융자금액 (B)	1인당 평균 융자금액	융자비율 (B/A)
2016	고수온	-	3,500	26명	346	13.3	9.9
	태풍	848명	3,004	15명	225	15.0	7.5
	고수온·적조	847명	7,500	40명	644	16.1	8.6
2017	한일어업협정 지연	384척	10,272	111척	3,220	29.0	31.3
	세월호 인양	13명	260	8명	133	16.6	51.2
	유류오염						
2018	저수온	118명	2,000	1명	50	50.0	2.5
	한일어업협정 지연	281척	7,100	21척	3,521	167.7	49.6
	고수온	455명	5,600	16명	265	16.6	4.7
	태풍	1,431명	4,950	2명	36	18.0	0.7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상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³⁾한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5. 다른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개, 건, 백만원, %)

연도	재해보험 품목 수	재해보험 가입규모		재해보험 가입률	
		건수	보험가입금액	넙치 등 5개 품목 기준	전품목 기준
2014	18	2,770	1,231,977	39.8	30.0
2015	21	3,275	1,395,201	48.3	35.5
2016	24	3,570	1,411,464	56.1	37.8
2017	27	4,037	1,545,179	60.8	42.1
2018	28	4,250	1,550,690	58.3	44.3

주: 2017년까지 성과지표에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5개 품목에 대한 가입률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이후 성과지표를 전품목에 대한 가입률로 변경함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과거 최고지원액 외에 융자실적, 융자 신청비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액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원양어선현대화(융자) 사업¹⁾은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또는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계획액 24억 3,0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고 16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한편 동 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펀드 출자로 변경할 예정으로, 정부출자금 50%를 포함한 85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2023년까지 노후 원양어선 17척의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회계연도 원양어선현대화(융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원양어선현대화	2,430	2,430	0	2,430	800	0	1,630
노후원양어선 대체	1,630	1,630	0	1,630	0	0	1,630
원양어선설비현대화	800	800	0	800	800	0	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연례적인 사업성과 저조로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외에 중고선 구매를 통한 대체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으나 사업포기가 두 차례 발생하여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510-301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인 원양어선 대체건조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중고선 대체를 사업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2018년 계획에 1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용자대상으로 선정된 1차 및 2차 선정 사업자 모두 적정 선령 및 선가의 중고선 매물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다.

2차례의 사업포기가 발생한 것은 사업자 선정 시 대체가능한 중고선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9년 조성한 원양어선현대화펀드의 지원 대상에는 중고선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개요]

구분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노후원양어선대체
지원 대상	선령 21년 이상 원양어선의 설비 현대화를 하고자 하는 원양선사	선령 21년 이상 원양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운 선박을 건조 또는 20년 이하의 중고선을 도입하고자 하는 원양선사 및 수산물운반선사
2018년 예산	8억원	16.3억원
용자 조건	- 비율 : 100% - 금리 : 연 3.0% - 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비율 : 신조 대체(용자70%) 중고선 대체(용자80%) - 금리 : 연 3.0% - 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추진경과	- 사업자 공모 : ~2018.01.10. - 사업자 선정: 2018.03.06. - 용자금 교부결정: 2018.03.16. - 용자 : 2018.04.30.~2018.11.29.	- 사업자 공모 : ~2018.01.10. - 사업자 선정(1차): 2018.01.25. - 사업자 사업포기(1차): 2018.06.04. - 사업자 선정(2차) : 2018.09.11. - 사업자 사업포기(2차): 2018.12.05.

자료: 해양수산부

둘째, 2014년 이후 노후 원양어선 대체실적이 없으므로 원양어선현대화펀드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 원양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업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업수요 예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서는 금리 하향 조정(2015)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로 노후 원양어선 대체실적이 전무하다. 해양수산부는 높은 이율 및 담보 부족²⁾으로 대체건조 신

청이 부족했다는 입장으로, 2019년부터는 원양어선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선사의 자부담률을 10~20%로 낮추겠다는 계획³⁾이다.

[원양어선현대화 사업 연혁]

	용자 조건			용자 실적			비고
	비율	한도	금리	계획	신청	지원	
2010	신조 70% 중고선 80% 설비현대화 100%	해당 없음	4%	신조3척 (완공1척, 착공2척) 설비1식	신조3척 (완공1척, 착공2척)	신조3척 (완공1척, 착공2척)	94% 집행
2011				신조2척 (완공) 설비1식	신조2척 (완공) 설비1척	신조2척 (완공) 설비1척	100% 집행
2012				신조4척 (착공) 설비1식	신조4척 (착공) 설비1척	신조4척 (착공) 설비1척	100% 집행
2013				신조4척 (완공)	신조4척 (완공)	신조4척 (완공)	97% 집행
2014			3%	대체 (신조3척 중고선5척) 설비1식	설비1척	설비1척	사업수요 부족
2015				대체 (신조1척 중고선3척)	-	-	사업수요 부족
2016				신조1척 설비1식	신조1척	-	여신심사 부결
2017				신조1척 설비1식	설비4척	설비4척	사업수요 부족
2018				신조1척 설비1식	중고선2척 설비3척	설비3척	중고선 매물확보가 어려워 사업포기

자료: 해양수산부

- 2) 해양수산부는 기존 선박으로 충당할 있는 담보 비율이 50%에 불가하기 때문에 20~30%의 다른 담보 제공 또는 신용이 필요하고, 20~30%의 자부담금이 필요하나 원양선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3)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자부담 10~20%로 구성되며, 선박대여회사를 설립하여 선박 건조 및 용선하고, 선사는 선박운영 수입으로 용선료를 지급하다가 펀드 만기 시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원양어선 17척을 대체건조한다는 계획이나, 2012년 이후 원양산업 생산금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감사원도 2016년 감사보고서⁴⁾에서도 조사 대상 43개 업체 중 22개 업체는 사업비를 지원 받더라도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재무 상태인 것으로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수요를 현실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선현대화펀드 사업의 운영계획]

(단위: 척,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이후
건조척수	2	6	3	3	3	매년 1~2척
건조가액	200	600	360	360	300	120~240
정부출자	50	200	180	180	225	0 (회수금 재투자)

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단위: 천톤,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잠정)
생산량	592	511	575	550	669	578	454	436	462
생산금액	13,645	14,660	16,554	14,080	12,752	10,237	10,778	11,127	11,087

자료: 해양수산부

4) 감사원,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2016.8

가. 현 황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¹⁾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식기술·기반 구축 및 민간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적조피해를 예방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314억 8,800만원 중 30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식기술 기반구축 사업은 지자체에, 첨단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과 적조피해 예방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에 양식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으로 총 261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다.

[2018회계연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친환경양식어업육성	30,538	31,038	450	0	31,488	30,143	1,241	104
양식기술 기반구축	6,125	6,125	0	0	6,125	6,125	0	0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지원	13,213	13,213	0	0	13,213	13,185	0	28
적조피해 예방지원	6,810	6,810	0	0	6,810	6,810	0	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실효행이 부진하므로 민간사업자 선정 이전에 자부담비용 개산 내역 및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포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01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중 시설 지원의 성격인 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 261억 2,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01억 4,6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9.9%에 불과하다.

[2018회계연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중 자치단체보조사업의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 체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강원도	100	100	100	500	600	0	600	0	0.0
충북도	1,250	1,250	1,250	0	1,250	750	500	0	60.0
충남도	2,893	2,893	2,893	755	3,648	2,957	569	122	85.6
전남도	9,470	9,470	9,470	1,000	10,470	784	7,478	2,209	8.4
경북도	750	750	750	0	750	739	0	11	98.5
경남도	8,183	8,183	8,183	761	8,944	2,993	5,845	106	36.6
제주도	3,475	3,475	3,475	250	3,725	2,193	1,531	1	63.1
합계	26,120	26,120	26,120	3,266	29,386	10,146	16,522	2,449	39.9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① 민간사업자가 입찰의뢰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②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장비 구입 시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가격이 높거나, 입찰과정에서 감리비와 같은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당초 예상보다 자부담금이 높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라남도의 경우 적조피해예방 지원 사업에서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악화로 보조사업자 일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2억 900만원이 불용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다만 장비 구입가격, 조달수수료나 감리비 등 부대비용은 사전에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부담금 예상액과 행정절차에 관하여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더라면 절차 지연 또는 포기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조피해예방 지원 사업 내 가두리시설 현대화 예산은 3월에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수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부진 등 어업인의 자부담액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불용이 발생하였다.

둘째, 건축 또는 기술도입을 포함하는 사업은 설계, 입찰, 시설설치 등 사업추진에 1년반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기간과 실제 사업기간이 일치하도록 편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설지원 사업 중 기존 양식장의 시설 보강 또는 장비 구입 등의 경우 단년도에 추진이 가능하나, 새로운 시설을 건축하거나 바이오플락²⁾ 등 친환경양식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경우 시스템기술검토, 설계, 개발행위허가, 건축 공사 등 사업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예산 상당부분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유형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은 다년도(2년)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지원 사업 유형별 사업기간]

구분	단년도 추진 가능 사업	다년도 편성 검토 사업
유형	- 기존 양식장에 시설을 보강·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전 행정절차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 소규모 가설건축물 사업	새로운 건축물 건축과 첨단친환경 시설·기술도입을 동반하는 사업으로서 기술검토, 설계, 개발행위허가, 건축 공사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시	2018 친환경예방양식시설(보강)지원 ('18.10월 집행 완료) 2017 육상양식장용수정화시설지원 ('17.9월 집행 완료)	2017 바이오플락양식시설지원 ('18.12월 집행 완료) 2016 순환여과개체굴종자대량생산 시설지원 ('17.10월 집행 완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양식수조에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 등 오염물 분해능력이 뛰어나고 양식생물에 유익한 미생물을 함께 기르는 양식 기술로,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고 물갈이가 거의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다.

가. 현 황

천일염산업육성 사업¹⁾은 갯벌천일염의 안전성,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내 천일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천일염이력제 관리, 생산시설지원, 소비 촉진홍보,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85억 3,100만원 중 7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2,200만원을 이월,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천일염산업육성	8,165	8,165	366	0	8,531	7,796	622	113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천일염 품질인증 제도 운영은 2014~2018년 기간 동안 인증 실적이 단 4건으로 미흡하다.

천일염 품질인증제 운영은 천일염품질관리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위치,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 2014~2018년 기간 동안 4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인증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²⁾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10

2) 2018년말 기준 염전허가업체는 1,093개, 가동업체는 1,047개이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예산 집행액]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91	35	32	88	95	442

자료: 해양수산부

[천일염 품질인증 운영 현황]

구분	인증 건수	신청일자	인증일자	비고
우수천일염인증	1	2015.10.29.	2015.12.02.	
		2017.11.10	2017.12.14	갱신
천일염생산방식인증	3	2017.12.20.	2018.01.20.	
		2018.08.31.	2018.10.05.	
		2018.08.31.	2018.10.05.	
친환경천일염인증	-	-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운영실적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 품질인증 종류를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3종에서 우수천일염인증 1종으로 통합하고, 시설 기준(접합재료 비부식성 재질→내부식성 재질), 거리 기준(도로 및 양식장·농경지로부터 200m 이상 거리 규정 삭제, 공장 및 축사로부터 200m 이상 거리 규정 유지) 등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³⁾ 인증기준 변경에 따라 인증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소금제조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홍보하는 등 취득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천일염의 국내 식용 소비 촉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 지원, 제품 원료사용 등 산업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전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은 천일염 생산시설개선 지원 및 내수용·식용 천일염의 소비촉진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 이와 관련하여 2018.12.11.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19.6.12. 해양수산부 고시 「우수천일염의 생산기준」이 시행되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권고 중으로 1인당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 추세⁴⁾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식용 천일염 소비 촉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일염산업육성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2018년 예산
품질관리 및 홍보	천일염이력제관리	1,900
	천일염품질관리	740
	천일염소비촉진홍보	224
	소계	2,864
생산·저장 시설지원	포장재지원	353
	염전바닥재개선	2,290
	장기저장시설설치	900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60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지원	1,198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00
	소계	5,301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천일염 생산 및 저장 시설 지원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상품 이미지 고급화, 화장품 원료 등 식용 외 소비 촉진, 수출 지원 등 천일염산업육성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안군이 건립을 추진 중인 천일염종합유통센터⁵⁾에 대한 총사업비 150억원 중 일부(국비 75억원)를 지원 중이나, 부지확보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체결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4)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 추이: (2005) 5,257mg → (2010) 4,831mg → (2015) 3,890mg → (2017) 3,477mg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5) 현재 생산되는 천일염의 염도는 85~90% 수준으로, 기존 처리장은 세척, 선별, 탈수 등 단순가공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천일염종합유통센터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염도 기준(97%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가공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가. 현 황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¹⁾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교육, 해양문화 사업 지원을 통하여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 청도지역 등 장보고 유적지 답사 기회를 제공²⁾함으로써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교육 현장에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장보고 유적지 답사의 2018년도 예산액 1억 2,900만원 중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4,635	4,635	240	0	4,875	4,106	567	202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129	129	0	△6	123	123	0	0

주: 600만원은 장보고대상 시상식 개최장소 변경에 따른 임차비용 증가에 충당하기 위해 조정함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장보고 유적지 답사 사업은 장보고 유적지가 아닌 관광지가 일정에 다수 포함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2031-300

2)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교사 외에도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답사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2015년 예산안 심사 시 부처 출입기자, 해양관련 단체장 등이 답사단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2015년부터 초·중·고 교사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동 사업은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배우고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
나, 실제 답사단의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장보고 유적지 답사와 관련성이 적은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 주요일정]

일자	일정
1일차	• 이동
2일차	• 봉래각, 고선박물관, 등주수성 답사
3일차	• 교주만 고려정관 답사 •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견학 • 장보고 및 해양사 관련 전문가 강의
4일차	• 위해 대광화 국제학교 견학 • 성산두, 북여동해(진시황제 유적지) 답사
5일차	• 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관 답사 • 답사내용 수업적용방안 세미나
6일차	• 이동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답사 후 수업적용 지도안을 결과보고서로 제출받고 있으나 2018년 참가자 99명
중 74명만이 제출하였고 그 활용성과도 미흡하다. 참여자 모집 공고 당시 수업적용
지도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고, 우수사례에
대한 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결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유인이 부족하
다.

제출된 수업적용 지도안 중 우수작 12편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300부)하였으
나 배포처가 참가자, 해양수산관련단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수작을 해양교육포털사이트에 게시
하여 누구나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2013~2015년 답사기를 2016년
12월에, 2016~2018년 답사기를 2019년 5월에 일괄 게재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고
2018년 사업 결과인 수업적용 사례집은 1개월 간 조회수가 100회 미만에 불과하다.

동 사업은 장보고 유적지 답사 경험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는 당초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답사내용 및 사후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사업의 내내역사업¹⁾인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사업은 세월호참사 이후 「선원법」 개정(2015.7)에 따라 여객선선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성심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²⁾ 여객선선장 중 만 65세 이하인 자는 3년마다, 만 65세를 초과하는 자는 2년마다 적성심사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³⁾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5,000만원 중 1,600만원을 선원수첩 제작비로 조정하고, 3,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 강화	150	150	0	16 △16	150	148	0	2
여객선선장 적 성심사	50	50	-	△16	34	32	-	2

자료: 해양수산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6131-305의 내내역사업

2) 「선원법」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②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이하 "적성심사"라 한다) 결과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한 날부터 3년(여객선선장이 적성심사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018년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실시 현황]

(단위: 명, %)

연도	신청인원	실시인원(A)	합격인원(B)	합격률(B/A)
2016	302	291	245	84.2
2017	354	343	272	79.3
2018	560	538	451	83.8

주: 동일 인물이 한 해에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중복 계상하였다.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사업은 하루에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하거나 심사위원이 재직·퇴직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등 엄밀한 심사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양항만관청은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연간 6회 이상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연초에 공고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추가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지방청이나 심사시기에 심사인원이 편중되어 균질한 심사가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1인~2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경우도 다수 있는데 비해, 일부 회차는 하루에 최대 25명을 심사하였다. 목포청의 경우 2018년 5월 심사 및 7월 심사 시 각각 18명이 응시하여 5월 16~17일, 7월 18~19일 이틀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반면, 마산청의 경우 2018년 6월 26일에 25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동 조항에 따라 적성검사심사위원회는 ① 해운·선박안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2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 면허를 받고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해운업과 관련한 사업장에서 선원·선박안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학교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과 관련한 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 항목은 ① 운항사고 이력, ② 해당 항로 운항경력 등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외에 ③ 취항항로 표지 숙지, ④ 특정항로 특성 숙지, ⑤ 출항전 감항성 검사 능력, ⑥ 비상상황 대응 능력, ⑦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 ⑧

조난 통신 능력⁴⁾이 포함되어 이에 구술면접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예산은 재직공무원 외 외부위원 3명이 포함될 경우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사위원 전원 또는 5명 중 4명이 재직·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마산청의 2월 심사, 여수청의 5월 심사, 인천청의 3월 심사 및 6월 심사 2차례, 제주단의 6월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재직·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⁵⁾

여객선선장 적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심사일 2주 이후 심사에 응할 수 있고 최대 3회까지 응시하여 1회만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적성심사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⁶⁾ 적성심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여객선선장 중 부적격자를 판별하여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의 달성이 제한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특정 회차에 심사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이틀 이상에 걸쳐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심사위원회가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

5)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의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중 심사대상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직 또는 퇴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대부분 항로표지, 여객선 담당 공무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 3회 연속 불합격 시 1년간 재응시가 금지된다.

※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부산항만공사의 국외 자비 유학 직원의 항공료 지원 규정 변경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94
2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 물동량 비중 하락 및 계획 대비 목표 미달성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05
3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침을 위반한 휴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09
4	인천항만공사의 크루즈 승객 이용 저조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20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도서 및 문헌 구입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24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다음연도 필요 용역의 연도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27
7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30
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인건비를 활용한 정규직인 청원경찰 인건비 편성·집행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34
9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효과 증대를 위한 예산 적정 집행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37
10	국립해양박물관의 지침을 위반한 직원 대상 휴직 제도 운영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43
11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경상운영비로 특정 사업에 해당하는 사무실 관리비의 집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47
12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촌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50
13	해양환경공단의 지침을 위반한 직원 대상 주택 자금 융자 지원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53
14	해양환경공단의 지침을 위반한 해양환경·생태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의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61
15	해양환경공단의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사업의 추진 지연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464



농촌진흥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9억 2,100만원이며, 225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225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1,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451	9,451	9,451	8,555	8,543	12	0	99.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774	1,774	1,774	356	356	0	0	100.0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1,496	11,496	11,496	12,039	12,039	0	0	100.0
지역발전 특별회계	1,200	1,200	1,200	1,603	1,603	0	0	100.0
합계	23,921	23,921	23,921	22,553	22,541	12	0	99.9

자료: 농촌진흥청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780억 9,5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9,603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44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97,150	797,780	837,098	820,478	14,407	2,213	98.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41,529	41,529	41,532	40,432	0	1,100	97.4
균형발전특별회계	99,465	99,465	99,465	99,437	0	28	99.9
합계	938,144	938,774	978,095	960,347	14,407	3,341	98.2

자료: 농촌진흥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8,000만원(△ 6.1%)이 감소한 22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9억 6,100만원(△ 8%)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4,502	23,921	23,921	22,541	△1,380	△1,961
합계	24,502	23,921	23,921	22,541	△1,380	△1,961

자료: 농촌진흥청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15억 7,300만원 (2.3%)이 증가한 9,60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50억 3,600만원 (3.8%)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925,311	938,144	938,774	960,347	21,573	35,036
합계	925,311	938,114	938,774	960,347	21,573	35,036

자료: 농촌진흥청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농촌진흥청 자산은 3조 1,656억 5,131만원, 부채는 593억 2,462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1,063억 2,669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50억 5,516만원(1.4%)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29억 9,146만원, 투자자산 43억 3,76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1,472억 4,012만원, 무형자산 103억 2,872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억 5,34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공사 선급금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106억 6,477만원 감소와 국유재산 가격평가 및 기관이전사업 진행으로 인한 일반유형자산 586억 6,349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568억 1,449만원, 장기차입부채 25억 1,01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전부동산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유동부채 101억 2,828만원 증가, 금융리스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0억 1,291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3,165,651	3,120,596	45,055	1.4
Ⅰ. 유동자산	2,991	13,656	△10,665	△78.1
Ⅱ. 투자자산	4,338	5,531	△1,193	△21.6
Ⅲ. 일반유형자산	3,147,240	3,088,577	58,663	1.9
Ⅳ. 무형자산	10,329	11,599	△1,270	△10.9
Ⅴ. 기타비유동자산	753	1,233	△480	△38.9
부채	59,325	48,183	11,142	23.1
Ⅰ. 유동부채	56,814	46,686	10,128	21.7
Ⅱ. 장기차입부채	2,510	1,497	1,013	67.7
순자산	3,106,327	3,072,413	33,914	1.1
Ⅰ. 기초순자산	3,072,413	2,873,437	198,976	6.9
Ⅱ. 재정운영결과	935,883	940,257	△4,374	△0.5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968,552	919,623	48,929	5.3
Ⅳ. 조정항목	1,245	219,610	△218,365	△99.4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358억 8,337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7,960억 3,047만원, 관리운영비 1,385억 7,402만원, 비배분비용 200억 9,356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9억 5,748만원, 비배분수익 168억 5,721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3억 7,383만원(△0.5%) 감소한 9,358억 8,337만원이며, 이는 유형자산 재평가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547억 9,794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프로그램(3,984억 9,144만원)과 농축산물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프로그램(1,653억 3,0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84억 6,867만원과 경비 401억 53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 손실 184억 2,116만원과 기타비용 11억 9,421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94,073	744,848	49,225	6.6
가. 프로그램 총원가	796,030	747,557	48,473	6.5
나. 프로그램 수익	1,957	2,709	△752	△27.8
II. 관리운영비	138,574	139,525	△951	△0.7
III. 비배분비용	20,094	74,892	△54,798	△73.2
IV. 비배분수익	16,857	19,007	△2,150	△11.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35,883	940,257	△4,374	△0.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35,883	940,257	△4,374	△0.5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3조 724억 1,272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1,063억 2,669만원으로 기초 대비 339억 1,397만원(1.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전기 대비 43억 7,383만원(△0.5%)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전기 대비 489억 2,9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전기 대비 2,183억 6,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9,930억 4,183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44억 8,944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2억 4,494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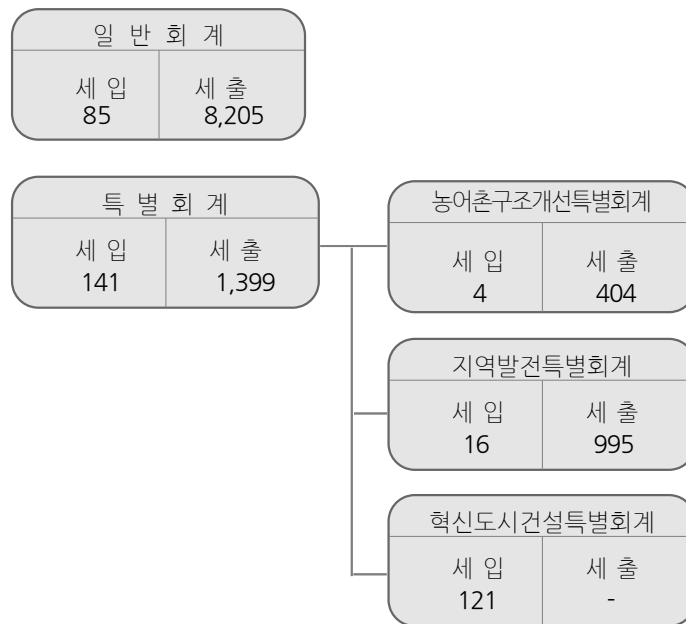
구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072,413	2,873,437	198,976	6.9
II. 재정운영결과	935,883	940,257	△4,374	△0.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68,552	919,623	48,929	5.3
IV. 조정항목	1,245	219,610	△218,365	△99.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106,327	3,072,413	33,914	1.1

자료: 농촌진흥청

라.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회계 간 전출입 없음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반려동물 산업활성화 핵심기반 기술개발 사업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산학관연 사업단간 구체적 협력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4억 5,000만원이 감액(48억원→43억 5,0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농자재관리 및 평가 ② 농작물병해충예찰 방제사업 등이 있다.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은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PLS)을 위하여 63억 500만원이 증액(73억 2,900만원→136억 3,400만원)되었고, 농작물병해충예찰 방제사업은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등 손실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15억원 증액(93억 7,800→108억 7,800만원)되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은 ① 농가경영개선지원, ②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이 중 농가경영개선지원은 청년창업농의 자립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억 6,000만원을 추가편성(85억 1,800만원→88억 7,800만원)하였다.

농촌진흥청은 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②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③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지원, ④ 6차 산업화 지원 및 농업인복지 향상 등 농업·농촌 활력 증진, ⑤ 개도국 농업기술 공여 확산 및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농촌진흥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약 8배인 196억 7,200만원을 타 사업에서 이·전용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이·전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식물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자재관리 및 평가의 내역사업인 농자재직권등록 사업은 2019년 6월 현재 국내 농산물 분류코드가 있는 농산물 357종 중 자몽·연근·알로에·야콘 등 125개 농산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실정이므로, 농촌진흥청은 적격 농약이 없는 농작물이나 병해충이 없도록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의 예비비 지출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의 내역사업인 손실보상금 사업¹⁾은 「식물방역법」 제36조²⁾에 의한 방제명령에 따른 보상금³⁾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수화상병⁴⁾ 긴급방제 등 손실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15억원 증액(93억 7,800만원→108억 7,800만원)되었다. 농촌진흥청 손실보상금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은 25억 200만원으로 이·전용액 196억 7,200만원을 포함한 221억 7,400만원의 예산현액을 전액 집행하였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231-301의 내역사업

2)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3) 「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수화상병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2018회계연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10,878	10,878	0	18,680	29,558	29,553	0	5
손실보상금	2,502	2,502	0	19,672	22,174	22,174	0	0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손실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8년 농촌진흥청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약 8배인 196억 7,200만원을 타 사업에서 이·전용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이·전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와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한 농가의 과수 등을 매몰하였고⁵⁾, 매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⁶⁾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안성·천안에 위치한 55개 농가(31.7ha)에 대해 5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안성·천안 지역을 포함한 6개 지역의 135개 농가(80.2ha)에 205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밖에 과수가지검은마름병(3,600만원), 씨스트선충(11억 4,100만원), 붉은불개미(4억 5,1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손실보상금으로 22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다.

5)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는 뿌리째 뽑아 구덩이에 넣고 생식회를 살포한 후 흙을 복토하여 매몰한다.

6)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국고 100%)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하며,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잔존가치 보상)과 농작물 보상(당해연도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이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해당 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별도의 제한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2018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단위: 개, ha)

구분	합계		발생		인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2015	68	59.9	43	42.9	25	17.0
2016	32	19.7	17	15.1	15	4.6
2017	55	31.7	33	22.7	22	9.0
2018	135	80.2	67	48.2	68	32.0
안성	39	16.3	16	8.2	23	8.1
평창	10	5.2	5	3.6	5	1.6
원주	2	1.7	2	1.7	0	0.0
제천	61	47.1	32	27.7	29	19.4
천안	10	5.9	9	5.5	1	0.4
충주	13	4.0	3	1.5	10	2.5

주: 인근이란, 발생주 반경 100m 인근 과수원을 말함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135개 농가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집행 내역을 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221억 7,400만원이었으나, 당초 편성된 예산은 25억 200만원에 불과하여 196억 7,200만원을 이·전용하여 충당하였다.

[2018회계연도 손실보상금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금액
이용	1.본청인건비	5,131
	2.농업과학원인건비(R&D)	2,431
	3.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R&D)	75
	4.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R&D)	34
	5.국제농업기술협력(R&D)	22
	6.논이용밭농업안전생산기술개발(R&D)	22
	7.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203
	8.농업기술경영연구(R&D)	96
	9.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606
	10.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정보화)	233
	11.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215
	12.농업기초기반연구(R&D)	1,384

7) 2018년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씨스트선충, 붉은불개미이다.

구분	사업명	금액
	13.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60
	14.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130
	15.농업첨단핵심기술개발사업(R&D)	125
	16.농자재관리 및 평가(R&D)	25
	17.농촌지원국기본경비	137
	18.농축산물수출확대 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R&D)	52
	19.무인이동체(드론) 활용 농경지관측과 현장적용기술개발(R&D)	14
	20.반려동물산업활성화 핵심기반기술개발(R&D)	17
	21.생물다양성위협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R&D)	72
	22.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5
	23.시험연구활동지원(R&D)	24
	24.식량과학원기본경비(R&D,총액인건비대상)	19
	25.식량과학원인건비(R&D)	498
	26.신기술보급사업(보조)	198
	27.신품종 지역적응연구(R&D)	121
	28.연구정책국기본경비	24
	29.원예연구정보화(정보화, 책임운영)	49
	30.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R&D, 책임, 총액인건비대상)	56
	31.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R&D, 책임운영)	716
	32.원예특작시험연구(R&D, 책임운영)	1,613
	33.작물시험연구(R&D)	1,268
	34.첨단기술융복합 차세대스마트팜기술개발(R&D)	18
	35.차세대바이오그린21(R&D)	560
	36.축산과학원기본경비(R&D, 책임, 총액인건비비대상)	79
	37.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	263
	38.축산과학원인건비(R&D, 책임운영)	542
	39.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	1,351
	40.축산연구정보화(정보화, 책임운영)	3
	41.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182
	42.할랄농식품 및 농산업기술수출지원(R&D)	1
	소계	18,674
전용	1.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	992
	2.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6
	소계	998
합계		19,672

자료: 농촌진흥청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손실보상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한 7년간 이·전용이 발생하였고, 2018년에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42개 사업에서 186억 7,400만원을 이용하고, 2개 사업에서 9억 9,8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발생에 대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예측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이·전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손실보상금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500	900	600	1,320	4,200	2,500	2,502
이·전용	271	400	860	7,930	0	3,468	19,672
이용	0	0	0	7,500	0	2,520	18,674
전용	271	400	860	430	0	948	998
집행액	706	509	1,459	9,234	3,674	5,968	22,174

주: 2016년의 경우 68개 농가(59.9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전용은 발생하지 않음

자료: 농촌진흥청

둘째, 현행 규정으로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 식물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병해충은 그 빈도나 피해 규모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해마다 집행 변동성이 큰 예산을 평균치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우 예산의 이·전용 및 불용이 과다하게 나타날 수 있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예비비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해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부족액은 예비비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예비비란,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헌법」은 제55조제2항⁸⁾에 예비비 근거를 두고,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제

8)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1조⁹⁾),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절차(제52조¹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2018년도 예산총칙 제12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요건 중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¹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규정된 ‘재난’ 또는 ‘재해’를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다¹²⁾. 즉, 「식물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概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10)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12)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8.1, p.139.

방역법」에 의한 ‘식물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은 ‘재난’ 또는 ‘재해’에 포함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수화상병 등 손실보상금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다른 사업의 예산을 통해 충당할 경우 타 사업의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개정¹³⁾이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병해충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3조 제1호 나목에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병해충의 확산 조항 추가, 2018.12.12.)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가. 현 황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¹⁾은 농업경영체의 기술수준과 경영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자립경영역량을 강화하여 강소농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88억 7,800만원 중 86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가경영 개선지원	8,518	8,878	0	△203	8,675	8,668	0	7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강소농 관련 사업은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은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소농육성지원 사업,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사업, 강소농 민간전문가 운영 사업의 3개 내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강소농이란 경영규모는 작으나 경쟁력을 가진 중소규모의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334-301

[2018회계연도 강소농 관련 내역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강소농 육성지원	2,822	2,822	0	0	2,822	2,822	0	0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1,335	1,335	0	6	1,341	1,340	0	1
강소농 민간 전문가 운영	2,338	2,338	0	△209	2,129	2,123	0	6

자료: 농촌진흥청

이 중 내역사업인 강소농육성지원 사업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국고를 지원하여 강소농의 선발 및 교육, 컨설팅, 자율모임체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개소당 3,700만원의 사업비 중 50%를 국고 보조한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사업은 경영관리프로그램이나 경영개선실천교육매뉴얼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3,500만원의 예산 중 8억 8,500만원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국비 지원²⁾하고, 4억 5,000만원은 농촌진흥청(분청)에서 강소농 사업에 대한 평가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3개 사업의 예산은 64억 9,500만원으로 대부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농촌진흥청(분청)은 강소농 사업관리·평가 사업의 일부(4억 5,000만원)를 재원으로 심포지엄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평가하도록 편성되었다.

[2018회계연도 강소농관련 사업의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집행내역
강소농육성지원	○ 시·군농업기술센터(153개소)×37백만원×50% = 2,822백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 농촌진흥청(1개소)×450백만원×100% = 450백만원 ○ 도농업기술원(9개소)×27백만원×50% = 123백만원 ○ 시·군농업기술센터(153개소)×10백만원×50% = 762백만원
강소농 민간전문가 운영	○ 70명×30.33백만원×100% = 2,123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2) 국비지원 비율은 50%이다.

농촌진흥청의 강소농 사업은 개별 농가소득(농업관련소득 포함) 10%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³⁾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교육·컨설팅 참여 전후의 경영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3개 내역사업은 강소농에 대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참여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농촌진흥청은 직전연도까지 강소농 관련 사업의 성과분석을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였던 것과 달리 2018년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이후 매년 ‘강소농대전’을 개최하였지만, 2017년을 제외하고는 강소농대전⁴⁾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강소농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성과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강소농 농가소득 및 현황]

(단위: 만원,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구당 농가소득	9,060	8,540	5,512	5,419	4,793	4,987	4,597	4,766
인원수	15,280	29,294	45,759	55,175	62,636	68,612	73,816	78,013

주: 가구당 농가소득이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자료: 농촌진흥청

참고로 동 내역사업은 강소농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받은 농가로 하여금 농가경영개선 실천노트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도농업기술원이 농업경영체의 기초정보 및 교육추진 내역, 경영·역량 진단결과 등을 자체 시스템(AMIS)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DB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연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농촌진흥청, 「2012년 강소농 프로젝트 추진계획」, 2012

4) 2018년 강소농대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하였다.

둘째,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성과지표가 품목별 농가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의 활용률로 설계되어있으므로 동 사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은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육성지원 사업,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사업, 강소농 민간전문가운영 등 3개 내역사업 이외에 귀농인을 위한 교육 사업, 농업인의 인터넷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품목별 농가경영컨설팅 프로그램 활용률로, 해당 지표는 내역사업인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은 농가가 실제 이행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이 수행하는 하나의 내역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8년 결산 기준 전체 집행액(86억 6,800만원)의 3.8%인 3억 3,000만원이 사용된 상황이다. 또한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세부사업 전체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부운을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⁵⁾, 성과목표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은 새로운 성과지표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측정산식
품목별 농가경영컨설팅 프로그램 활용률	목표	65.7	71.1	78.3	89.8	(컨설팅 분석결과 경영개선 활용수)/품목별농가 경영컨 설팅 프로그램 지원 농가 수)×100]
	실적	67.7	74.9	85.5	-	
	달성도	103	105	109.2	-	

자료: 농촌진흥청

5)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최근 청년강소농 육성 인원을 신규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성과지표는 2019년 12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반면, ‘청년강소농 육성 인원’은 청년강소농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세부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검토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

측정방법(산식)	발표 시기
(청년강소농 육성인원) = Σ (청년농업인 중 강소농 육성프로그램의 심화교육 이상 참여자 수)	2019년 12월 말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 황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¹⁾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을 교육할 교육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5억원 중 500만원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전용하고, 1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	1,500	1,500	0	△5	1,495	1,495	0	0
스마트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 조성	1,442	1,442	0	0	1,442	1,442	0	0
스마트영농구축 지원 및 평가	58	58	0	△5	53	53	0	0

주: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전용함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2018년 신규 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의 경작 품목이 특정 작목에 집중되어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거점으로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과 농업인 교육을 하고, 생육 및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스마트팜 기술과 기자재를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14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개소당 1억 300만원씩 14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2131-306의 내역사업

그러나 당초 각 지역의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과 달리 14개소 중 11개 테스트베드에서 딸기와 토마토를 주로 경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딸기·토마토가 아닌 품목을 경작하는 곳은 경기도 화성, 경상남도 거제와 제주 3곳인 상황이다.

[2018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설치 현황]

시도	시군	품목	유형	시도	시군	품목	유형
경기	화성	포도	연동 비닐	전남	담양	딸기	단동 비닐 연동 비닐
	파주	블루베리, 토마토, 딸기	단동 비닐 연동 비닐 노지		강진	딸기	연동 비닐
					영광	딸기, 옥묘, 아열대작물	연동 비닐
강원	삼척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유리 온실 연동 비닐	경북	청송	토마토, 딸기	연동 비닐 노지
	철원	토마토	연동 비닐				
충북	청주	토마토	연동 비닐	경남	거제	아열대작물	단동 비닐 연동 비닐
충남	홍성	딸기	연동 비닐	제주	서귀포	온주감귤, 만감류	연동 비닐
전북	남원	딸기, 분화	연동 비닐		서부	딸기, 토마토	연동 비닐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은 수급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고 특정 품목으로 경작이 집중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경작 품목을 고르게 지도하고 유망한 작물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의 작목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농촌진흥청이 조성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는 국내 수요량은 높은 수준이나 생산이 되지 않는 열대작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 및 장기적으로 시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민간에서 재배하기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경작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의 작목이 일부 농산물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¹⁾은 등록 농약이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 직권등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26억 9,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년 농자재관리 및 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자재관리 및 평가	13,634	13,634	0	△25	13,609	13,599	0	10
소면적작물 농약직권 등록	12,698	12,698	0	0	12,698	12,698	0	0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2018년 농촌진흥청은 1,670개 농약을 직권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농산물 및 병해충은 적격 농약이 없으므로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역사업인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은 소면적재배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직권등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면적재배작물이란, 재배면적이 작은 농산물로 산채류, 엽채류, 특용작물 등이 이에 속한다.

동 내역사업은 소면적재배작물의 경우 해당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134-300의 내역사업

기 위해 등록된 농약의 수가 적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직접 소면적재배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약해, 약효, 작물잔류성을 시험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농약에 대해 직권등록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대하여 도농업기술원, 대학, 민간시험연구기관 등 농약등록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약효·약해 및 작물잔류성을 시험하는 사업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이하 PLS²⁾)를 단계적으로 시행(2016년 12월부터 시행)하였는데, PLS란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시행 이전까지는 금지 농약 성분을 지정해놓고 해당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이었다면, PLS 방식은 특정 농작물에 대해 허용된 성분의 농약만 사용해야하는 방식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판매금지 및 폐기 조치된다. 2016년 12월 견과류, 열대과일류 등에 한하여 1차적으로 시행했던 PLS는 2019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었다³⁾.

농촌진흥청은 PLS 전면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공모를 통해 43개 기관을 선발하여 12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를 통해 1,670개 농약을 직권등록하였다. 2018년 등록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약은 기장 7품목, 머위 23품목, 양앵두 18품목, 오미자 13품목, 열무 5품목, 해바라기 3품목 등 총 122작물, 191품목이다.

[소면적직권등록 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689	1,151	2,500	3,000	3,000	3,000	2,588	12,698
집행액	689	1,151	2,500	3,000	3,000	3,000	2,588	12,698
참여기관	12	11	41	32	38	42	32	43
품목	44	78	80	110	62	91	200	1,670

자료: 농촌진흥청

2) PLS란, Positive List System을 말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1차 2015-78호(2015.10.29.), 2차 2018-8호(2018.2.22.)

그러나 이러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현재 국내 농산물 분류코드가 있는 농산물 357종 중 등록농약이 1개라도 있는 농산물은 232종으로, 자몽·연근·알로에·야콘 등 125개 농산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실정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작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잔류량(0.01ppm)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 48종 중 50%인 24종도 등록농약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적격 농약이 없는 농작물이나 병해충이 없도록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을 확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록 농약이 없는 국내 유입 외래 해충 현황]

해충명	가해식물	해충명	가해식물
잠두콩바구미	잠두	뒷흰날개밤나방	채소, 화훼
줄알락명나방	저장곡물	난왕바구미	난초
루비깍지벌레	감귤	바나나좀나방	행운목 등
애집개미	옥내해충	포인세티아총채벌레	포인세티아 등
완두콩바구미	완두	잔디왕바구미	잔디
밤나무순혹벌	밤나무	산스베리아깍지벌레	산스베리아
감자뽕나방	가지과식물	나무좀류	고무나무
가루좀벌레	곡물	나무좀류	행복나무
딸기가루이	딸기	총채벌레류	안스리움묘
바나나바구미	바나나	가루깍지벌레류	크로톤묘목
채소바구미	채소류	깍지벌레류	소철
글라디올러스총채벌레	글라디올러스	클로버씨스트선충	배추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 황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기술사업화지원 사업¹⁾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기획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05억 7,000만원을 전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출연하였다.

[2018회계연도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업 실용화기술 R&D지원	12,000	12,000	0	0	12,000	12,000	0	0
농업기술 사업화 지원	10,570	10,570	0	0	10,570	10,570	0	0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2018년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이 지원한 90개 업체 중 52.2%인 47개 업체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은 연구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기획·시제품 및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농촌진흥청 R&D 사업에 투입된 재원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결과, 2018년 결산 기준 농촌진흥청 전체 R&D 집행액의 1.9%까지 확대되었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8-300

[연도별 농업기술사업화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기술사업화 지원 결산(A)	2,000	2,000	4,000	5,500	6,310	7,520	8,320	10,570
농촌진흥청 R&D 결산(B)	486,777	530,889	538,783	568,172	580,238	594,920	591,264	624,360
비율(A/B)	0.4%	0.4%	0.7%	1.0%	1.4%	1.5%	1.7%	1.9%

자료: 농촌진흥청

동 내역사업은 ① 농식품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화 전략의 수립을 지원(이하 사업화기획)하고, ②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자체 보유하거나 이전 받은 농식품산업체를 선발하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개발을 지원(이하 시제품개발)한다. 또한 ③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이전 받은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관련 설비비, 공정개선비용 등을 지원(이하 시장진입)한다. 시장진입 지원을 신청하고자하는 농식품산업체는 사업을 신청할 때 투자기업의 투자협약서(총사업비의 22.5% 이상의 비용을 부담)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선정대상인 농식품산업체는 시제품매출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다²⁾.

[농업기술사업화지원 사업 현황]

① 농식품 R&BD기획지원 : 사업화기획, IP-R&BD전략수립 8억 5,000만원(사업화기획)
② 연구개발성과 사업화지원 : 시제품개발 지원 63억 3,000만원(시제품개발)
③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 : 제품규격화 및 공정개발 33억 9,000만원 (시장진입)

주: R&BD란,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의 약자임

자료: 농촌진흥청

2018년 시제품개발 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매출 현황을 보면, 사업비를 지원받은 80개 업체 중 47개(58.7%)에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발생한 33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5,800만원으로 시제품개발을 지원받은 당해연도의 평균매출액은 2016년 3,600만원, 2017년 1,600만원, 2018년 5,800만원

2) 동 내내역사업은 추진 결과 3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야한다.

수준으로 나타나 2018년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매출이 발생한 33개 업체 중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업체는 20개로, 이 중 국고지원액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는 8개에 불과하다. 즉, 2018년 시제품개발에 참여한 80개 업체 중 47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33개는 매출이 발생했으나 이 중 25개 업체는 국고지원액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상황이다. 동 내역사업은 지난 5년간 총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보조하였으나, 지원받은 업체의 41.1%인 127개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내내역사업의 실적저조는 농업기술의 실용화라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동 내내역사업이 국고지원이 있는 후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시제품개발 및 시장진입 지원 업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매출액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시제품개발 지원 업체의 매출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지원 연도	지원현황				연도별 매출액				
	금액	업체수	매출미발생 업체수	매출발생 업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	2,800	42	15 (35.7%)	27 (64.3%)	1,172	1,897	2,638	2,301	2,893
2015	3,440	48	21 (43.8%)	27 (56.3%)	-	342	622	655	562
2016	4,490	63	21 (33.3%)	42 (66.7%)	-	-	1,527	1,773	1,926
2017	4,700	76	23 (30.3%)	53 (69.7%)	-	-	-	825	4,740
2018	5,768	80	47 (58.7%)	33 (41.3%)	-	-	-	-	1,913
합계	21,198	309	127 (41.1%)	182 (58.9%)	1,172	2,239	4,787	5,554	12,034

주: 2018년은 81건을 선정·협약했으나 1개 업체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자료: 농촌진흥청

가. 현 황

축산시험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산자원개발분야 사업¹⁾은 국가 단위 축종별 (한우, 젓소, 돼지, 닭 등)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과 양질 조사료²⁾의 안정적 생산·이용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축산과학원은 축산자원개발연구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27억 200만원 중 92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조사료 관련 연구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축산시험연구	45,253	45,253	0	△1,351	43,902	43,723	0	179
축산자원개발연구	12,702	12,702	0	△3,411	9,291	9,278	0	13

주: 축산시험연구 사업의 이·전용은 과수화상병 관련 손실보상금 지급(13억 5,100만원) 등으로 인해 발생함

자료: 농촌진흥청

한편, 신품종 지역적응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료작물³⁾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사업⁴⁾은 사료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사업을 통해 ‘조사료 생산지 자급형 동계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술 개발’ 등 6개 과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액 5억 8,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남 회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232-300의 내역사업

2) 조사료란, 식물 섬유소 함량이 18% 이상으로 높고 에너지함량이 낮은 사료로 목초, 건초, 사일리지, 옥수수, 파, 씨 있는 과일의 껍데기 등 섬유질로 에너지함량이 적은 사료를 말한다.

3) 사료작물이란, 조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코드: 일반회계 1133-302의 내역사업

[2018회계연도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품종 지역 적응연구	18,598	18,598	0	△121	18,477	18,476	0	1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590	590	0	△4	586	586	0	0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농촌진흥청은 사료작물 및 조사료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 선정 및 배분 등에 관한 협업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사료 관련 현황을 보면, 조사료의 경작을 확대하여 연 100만톤에 이르는 수입조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쌀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2020년까지 85%로 확대할 계획⁵⁾이다. 반면, 국내산 조사료는 수입조사료에 비해 사일리지⁶⁾ 품질의 균일화 및 규격화 미비⁷⁾로 수요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료작물 및 조사료 확대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을 통한 국산 종자의 품질 향상 및 사료작물의 생산성 증진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

농촌진흥청의 사료작물 및 조사료 관련 연구는 세 개의 기관에서 추진되는데, 이 중 축산과학원은 축산시험연구 사업을 재원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이하 IRG⁸⁾) 신품종 개발과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농촌진흥청(본청)도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사업을 통해 벼,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연중생산체계 구축, 사일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 자급률 개선」, 2018.09.20

6) 사일리지란, 조사료 저장기술의 하나로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용기에 진공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사료를 말한다.

7)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일리지의 수분함량은 90~50%로 수분함량 변이가 매우 크고 사료가치가 불균일하여 사료업체나 축산농가에서 국산 사일리지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된다.

8) IRG란, 9~10월경 파종하여 이듬해 5~6월에 수확하는 겨울철 사료작물의 일종이다.

리지 제조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6개 연구과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식량과학원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사료작물 품종 육성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중점 추진 내용으로 밝히고 5개 연구과제를 시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료작물 및 조사료 관련 연구현황]

세부사업	내역사업	담당기관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 품목
축산시험 연구	축산자원 개발연구	축산과학원	간척지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IRG) 종자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축산과학원	IRG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단기성 벼작 부체계 기술개발	축산과학원	IRG
			내재해 초다수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개발	축산과학원	IRG
			논 타작물재배지에서 귀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혼파재배 현장연구	축산과학원	IRG
			사료용 옥수수의 만파재배 수량증대 기술	축산과학원	옥수수
			방목 초지형 양질 다수성 목초 신품종 개발	축산과학원	기타
신품종 지역 적응연구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사업	농촌진흥청 본청	총체벼 이모작 작부체계 실증 및 브랜드 육성 기반 연구	서울대학교	벼
			동계사료작물 연계 이모작 총체사료용 벼 최적 품종 선정	농촌진흥청	벼
			국내산 옥수수의 사료가치평가 연구	대구대학교	옥수수
			환경변화에 대응한 옥수수 급여 최적화 기술개발	농촌진흥청	옥수수
			지역별 사료작물 가공원료 적합 품종선발	식량과학원	옥수수
			사료작물 원료곡 생산-가공 연계체계 구축	식량과학원	벼
작물시험 연구	-	식량과학원	조사료용 호밀 형질 개량 및 안정채종 연구	식량과학원	호밀
			내염성 유전 인자 보유 사료용 벼 특성 분석 및 간척지 적응 연구	식량과학원	벼
			간척지 등 특수재배지 적응 사료용 벼 선발 집단 육성	식량과학원	벼
			사료용 옥수수 신품종 개발 및 조기보급	식량과학원	옥수수
			돌연변이체 사료용 옥수수의 간척지 적응성 연구(2단계)	식량과학원	옥수수

자료: 농촌진흥청

이들 기관은 사료작물의 재배확대와 생산성 증대를 통해 조사료의 자급률을 향상시킨다는 공통된 목표를 토대로 IRG, 사료용 벼, 옥수수 등 사료 작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작물시험연구 사업과 축산시험연구 사업은 축산과학원의 기관고유사업인 반면, 농촌진흥청(본청)이 주관하는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사업은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연구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다.

국내 사료작물 및 조사료 관련 농업이 IRG 중심으로 전환되어 동계사료작물 재배에서 IRG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며,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⁹⁾ 조사료 관련 연구개발기관으로, 2022년까지 IRG 국산 종자자급률을 31.0%까지 확대¹⁰⁾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연도별 축산과학연구 사업 중 조사료 관련 과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과제수	10	3	3	3	3	3	2	2
IRG	5	6	6	5	1	1	3	4
집행액	992	1,378	1,280	1,094	583	403	176	397
IRG	473	494	564	475	117	80	120	186

주: 1. 과제수는 세부과제 수이다.

2. IRG 이외의 작목은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등이다.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2018회계연도 사업시행결과를 보면, ‘목초 관련 신품종개발’ 연구는 가축 관련 연구기관인 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한 반면, ‘환경변화에 대응한 옥수수 급여¹¹⁾ 최적화 기술개발’은 농촌진흥청(본청)에서 주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특성과 정합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료 및 사료작물 관련 연구과제가 사업추진주체 간 협력없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선정 및 추진되었기 때문이며, 사료작물 및 조사료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과제선정 및 심사기관이 다원

9)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과 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10) 농촌진흥청,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11) 급여(給與)란, 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화될 경우 유사한 과제가 중복 추진될 우려가 있고, 다른 기관에 특화된 과제를 추진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체계적인 배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관련 과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과제선정 주체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진흥청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비농림 분야 중소기업 지원 펀드 출자 지양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58



산림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610억 8,400만원이며, 1조 1,205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4%인 1조 464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740억 8,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0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1,242	91,242	91,242	103,556	80,818	22,711	27	7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4,580	814,580	814,580	954,809	903,607	51,200	3	94.6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179	1,002	177	0	85.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262	55,262	55,262	61,033	61,033	0	0	100.0
합계	961,084	961,084	961,084	1,120,578	1,046,460	74,088	30	93.4

자료: 산림청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8,456억 2,9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2조 7,940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85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9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89,920	1,589,920	1,619,259	1,580,578	16,546	22,134	97.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14,580	814,580	817,977	812,241	256	5,480	99.3
지역발전특별회계	349,211	349,211	350,161	345,734	769	3,658	98.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262	55,262	58,232	55,529	1,009	1,694	95.4
합계	2,808,972	2,808,972	2,845,629	2,794,082	18,581	32,966	98.2

자료: 산림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53억 7,600만원 (8.9%)이 증가한 1조 46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3억 4,700만원 (0.1%)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1,045,113	961,084	961,084	1,046,460	85,376	1,347

자료: 산림청

2018회계연도 산림청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98억 1,300만원(1.0%)이 감소한 2조 25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85억원(1.9%)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2,064,329	2,045,642	2,045,642	2,025,829	△19,813	△38,500

자료: 산림청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산림청의 자산은 24조 7,806억 8,000만원, 부채는 113억 1,500만원으로 순자산은 24조 7,693억 6,5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979억 200만원(2.1%)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865억 7,300만원, 투자자산 3,202억 1,200만원, 일반유형자산 24조 3,256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융자금 예산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436억 4,500만원 증가,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따른 유형자산 4,528억 1,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5억 7,700만원(△4.9%) 감소한 것으로 유동부채 102억 5,800만원, 장기차입부채 5억 4,000만원, 장기충당부채 5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건설관련 미지급금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4억 7,400만원 감소, 금융리스 상황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8,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4,780,680	24,282,778	497,902	2.1
Ⅰ. 유동자산	86,573	85,010	1,563	1.8
Ⅱ. 투자자산	320,212	276,567	43,645	15.8
Ⅲ. 일반유형자산	24,325,604	23,872,794	452,810	1.9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4,062	45,349	△1,287	△2.8
Ⅵ. 기타비유동자산	4,229	3,059	1,170	38.2
부 채	11,315	11,892	△577	△4.9
Ⅰ. 유동부채	10,258	10,732	△474	△4.4
Ⅱ. 장기차입부채	540	623	△83	△13.3
Ⅲ. 장기충당부채	517	537	△20	△3.7
Ⅳ. 기타비유동부채	1	1	-	-
순 자 산	24,769,365	24,270,886	498,479	2.1
Ⅰ. 기본순자산	12,911,856	12,911,856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613,773	△3,873,857	260,084	6.7
Ⅲ. 순자산 조정	15,471,282	15,232,887	238,395	1.6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6,314억 2,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6,665억 5,500만원, 관리운영비 1,784억 8,600만원, 비배분비용 410억 7,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94억 1,100만원, 비배분수익 2,151억 7,200만원, 비교환수익 1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19억 5,800만원(△1.3%) 감소한 1조 6,315억 3,700만원이며, 이는 일반유형자산 채평가손실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261억 1,8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산림자원육성프로그램(6,664억 4,000만원)과 산림자원보호프로그램(5,740억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84억 7,200만원과 감가상각비 171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61억 7,800만원과 기타비용 308억 8,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27,144	1,581,501	45,643	2.9
가. 프로그램 총원가	1,666,555	1,625,569	40,986	2.5
나. 프로그램 수익	39,411	44,068	△4,657	△10.6
II. 관리운영비	178,486	169,007	9,479	5.6
III. 비배분비용	41,079	67,197	△26,118	△38.9
IV. 비배분수익	215,172	164,210	50,962	31.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631,537	1,653,495	△21,958	△1.3
VI. 비교환수익 등	114	49	65	132.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631,423	1,653,445	△22,022	△1.3

자료: 산림청

산림청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24조 2,708억 8,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4조 7,693억 6,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984억 7,900만원(2.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 결과가 1조 6,314억 2,3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8,915억 600만원 및 조정항목 2,383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9,393억 5,4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478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375억 4,1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8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24,270,886	23,715,940	554,946	2.3
II. 재정운영결과	1,631,423	1,653,445	△22,022	△1.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891,506	1,948,511	△57,005	△2.9
IV. 조정항목	238,396	259,881	△21,485	△8.3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4,769,365	24,270,886	498,479	2.1

자료: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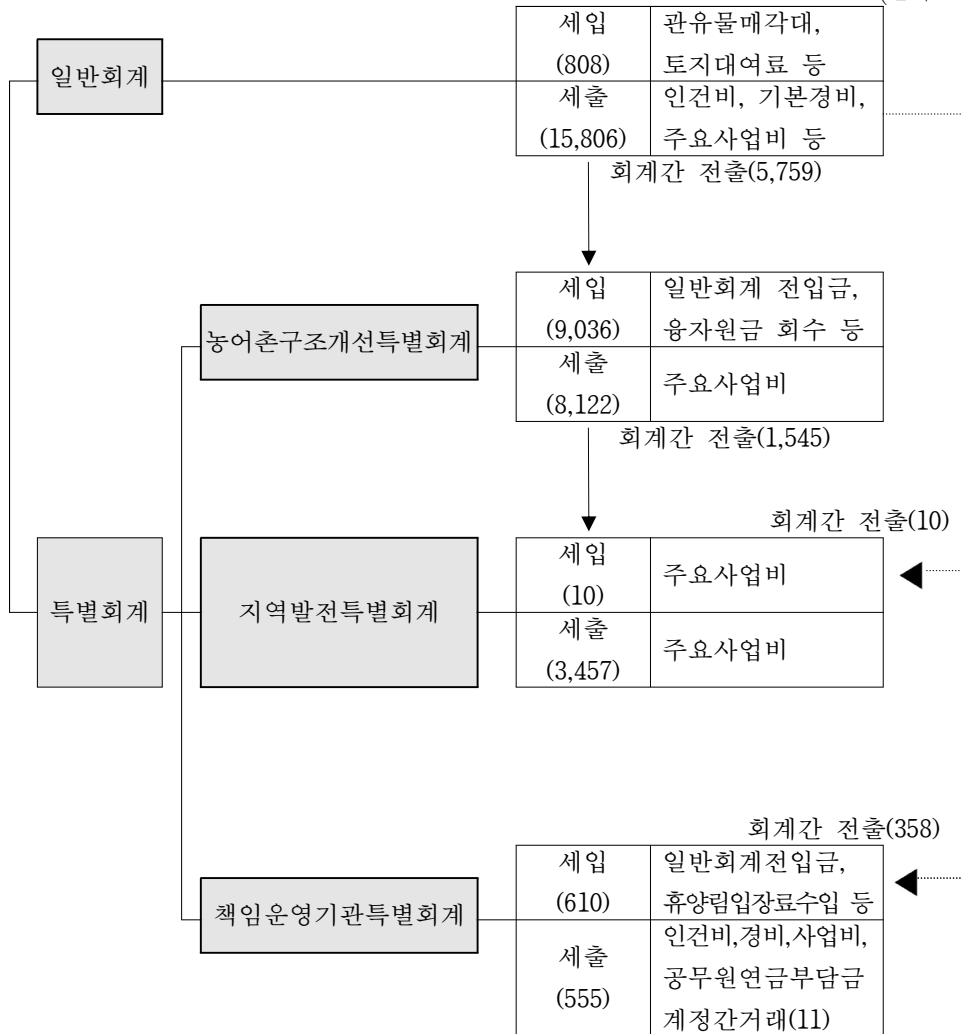
라.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산림청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759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0억원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58억원 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1,545억원이 전출되었다.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청의 2018년도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이 있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은 충북지역 임도시설 조성 예산 67억원을 임도시설 사업에 이전하여 편성하였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지진 및 해일대응 사업**, ②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등이 있다.

지진 및 해일대응 사업은 포항·하동 지역의 땅밀림 복구와 계측기 설치 등을 위하여 98억원이 증액(35억원→133억원)되었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재선충병 우려목 사전 제거 및 나무주사 등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5억원이 증액(92억원→1,107억원)되었다.²⁾

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0.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산림청은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 육성과 임업분야 창업 지원 등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② 목재와 청정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림산업 부가가치 제고**, ③ 산림복지 분야 민간 산업화 지원 등 **산림복지 활성화**, ④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산림보호**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을 통한 산림재해 피해복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 등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목적에 충실하도록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재해대책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집행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이 용지보상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절차가 순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의 문제점

산림재해대책비 사업¹⁾은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분야 피해발생 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은 2018년도 예산현액 350억원 중 91.6%인 32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8,200만원을 이월하고 7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림재해대책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A)	(B)	(B/A)	이월액	
산림재해대책비	35,000	35,000	32	0	35,032	32,090	91.6	2,182	760

자료: 산림청

종전에는 산림재해 발생으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 신청 또는 이·전용 등으로 재해복구비를 마련하였으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015년부터 산림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2015~2018회계연도 산림재해대책비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	30,000	35,000	35,000	35,000
결산	12,965	30,795	25,631	32,090

자료: 산림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931-308

1-1.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적시 집행 필요

가. 현 황

「산림재해대책비 집행 기준」에 따르면, 산림재해대책비는 산사태 발생지 및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산림병해충의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 산림시설의 피해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상피해 등으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복구할 필요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재해 발생 시 적시에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22조²⁾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³⁾할 수 있음에도 산림재해대책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은 예비비 신청 및 배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경우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적시에 피해복구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2015~2018년 산림청의 예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신청에서 배정까지는 평균 20.6일, 보조사업인 경우 예비비 배정에서 교부까지는 평균 29.8일이 소요되었다. 같은 기간 산림재해대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재해발생 시점으로부터 집행 시점까지 1~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예비비로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속히 대처했다고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산림재해대책비가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2018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예비비 3조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 산림청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구분	금액	신청일자	배정일자	집행일자/ 교부일자	실집행액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생활)	숲길조성관리	목적	200	7.12.	8.17	9.17	0
산림휴양녹색 공간조성(생활)	지자체도시숲조성	목적	750	7.12.	8.20	9.17	0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목적	583	9.12	9.28	-	0
지진및해일대응	해안방재림 조성	목적	1,400	9.19	10.12	10.12	39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방 제	목적	2,000	9.11	9.28	11.27	112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일반	1,390	10.24	10.31	-	1,219
산불방지대책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일반	1,848	10.24	10.30	-	1,659

주: 1) 산림청은 2015~2017년 동안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음

2) 교부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직접 사업임

자료: 산림청

[2015~2018년 산림재해대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피해종류	사업방식	금액	재해발생월	집행·교부월	실집행액
2015	병해충방제	보조	1,400	2015.7	2015.10	1,400
2015	병해충방제	보조	465	2015.8	2015.10	437
2015	병해충방제	보조	11,100	2015.8	2015.10	11,020
2016	산사태복구	보조	378	2016.8	2016.10	376
2016	산사태복구	직접	974	2016.10	2017.6	974
2016	산사태복구	보조	9,472	2016.10	2016.11	8,927
2016	병해충방제	보조	10,152	2016.7	2016.10	9,843
2016	병해충방제	보조	4,988	2016.9	2016.11	4,976
2016	병해충방제	직접	1,688	2016.9	2016.12	1,688
2016	병해충방제	보조	3,757	2016.9	2016.11	3,709
2017	산불피해	보조	1,450	2017.5	2017.6	1,441
2017	산불피해	직접	174	2017.5	2017.12	174
2017	산사태복구	보조	5,369	2017.7	2017.9	5,066
2017	산사태복구	직접	6,030	2017.7	2017.12	6,029
2017	산사태복구	보조	50	2017.11	2017.12	46
2017	산사태복구	직접	106	2017.11	2018.2	106
2017	병해충방제	보조	11,870	2017.9	2017.11	11,811
2018	산사태복구	보조	49	2017.11	2018.2	정산중
2018	산사태복구	직접	780	2018.6	2018.8	780
2018	산사태복구	보조	3,009	2018.6	2018.8	정산중
2018	병해충방제	보조	13,886	2018.7	2018.10	정산중
2018	산사태복구	보조	5,548	2018.8	2018.10	정산중
2018	산사태복구	직접	1,229	2018.8	2018.10	681
2018	산사태복구	직접	1,717	2018.10	2018.11	638
2018	산사태복구	보조	4,654	2018.10	2018.12	정산중
2018	병해충방제	직접	2,089	2018.9	2018.11	1,707
2018	병해충방제	보조	1,106	2018.9	2018.11	정산중

주: 실집행액은 각 연도말 기준이며, 2018년 보조사업의 실집행액은 2019년 5월말 기준 정산 중임
자료: 산림청

1-2. 재해대책 관련 사업과의 유사성

가. 현황

산림청은 2015~2018년 동안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피해복구 등의 용도로 산림재해대책비를 집행하였다.

[2015~2018년 산림재해대책비 용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산사태방지	병해충방제	산불대응	기타	합계
2015년	0	12,965	0	0	12,965
2016년	10,855	20,586	0	0	30,795
2017년	11,511	11,870	1,635	649	25,631
2018년	17,219	17,178	0	0	32,090

주: 기타는 산림헬기 외자구매 환차손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한 금액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다른 사업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각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림재해대책비 집행 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급 복구의 종류에는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경관조림(큰나무), 재선충방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산림청의 다른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18회계연도 산림재해 관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방사업	179,547	179,547	0	0	179,547	177,907	0	1,640
지진 및 해일대응	13,304	13,304	0	1,400	14,704	13,786	0	918
산림병해충방제	110,715	110,715	0	2,000	112,715	112,049	256	410

자료: 산림청

사방사업⁴⁾은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댐조성과 계류보전 사업 등을 포함한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적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산사태 2차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방댐 등 시설 보강도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및 해일대응 사업⁵⁾은 지진·땅밀림·해일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에 신규 추진되었으며, 땅밀림 실태조사, 하동·포항 지역 땅밀림 복구 등을 포함한다. 땅밀림 복구 사업은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 복구를 주된 목적으로 편성된 산림재해대책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⁶⁾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한 내용으로, 2018년 예산은 1,107억원이며 예비비 20억원을 배정받았다. 산림청은 2015~2018년 동안 매년 10~12월에 산림병해충방제 용도로 산림재해대책비 예산을 집행하였다.⁷⁾

산림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서 추진할 부분과 다른 사업에서 추진할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등 사업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1931-300

5) 코드: 일반회계 1931-313

6)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32-300

7) 산림청은 태풍·설해 등으로 인한 고사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월동지가 되는데, 이를 적기에 제거하여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목적예비비 배정 사업 실집행 저조

가. 현황

2018회계연도 산림청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사업¹⁾에 9억 5,000만원,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사업²⁾에 5억 8,300만원, 지진및해일대응 사업³⁾에 14억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⁴⁾에 2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았다. 이 중 실집행액은 1억 5,100만원이며, 47억 8,200만원은 이월 또는 교부 후 보조사업자가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목적예비비 배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	신청일자	배정일자	교부일자	실집행액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950	7.12	8.17/8.20	9.17	0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583	9.12	9.28	-	0
지진및해일대응	1,400	9.19	10.12	10.12	39
산림병해충방제	2,000	9.11	9.28	11.27	112

주: 교부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직접사업임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산림청은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산림산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신청하였으나, 연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는 등 실행 실적 미흡하여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1731-330

2) 코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32-301

3) 코드: 일반회계 1931-313

4)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32-300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사업은 통영시에 산림공원과 산림조경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7억 5,000만원, 거제시에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2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으며, 국비 지원비율은 50%이다. 동 사업은 8월에 예비비를 배정받아 9월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자체 추경예산 편성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등산로 정비의 고용창출 효과는 예산 10억원 당 약 2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예비비 배정 사업 모두 연내에 조성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2019년 5월 이후로 지연되어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적기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생활) 예비비 배정 사업 추진일정]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	설계용역기간	조성공사
산림휴양녹색생활공간조성(생활)	950	-	-
통영시 산림공원 조성	500	'19.2.13 ~ '19.5.3	'19.7월 계약(예정)
통영시 산림조경숲 조성	250	'19.1.16 ~ '19.2.24	'19.5.21 ~ '19.8.8
거제시 등산로 정비	200	'18.11.9 ~ '19.3.7.	'19.5.30 ~ '19.8.27

자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사업은 군산시에 조성 중인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의 총사업비 증액(86→230억)에 따른 설계비 5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전액 2019년으로 이월되었다. 동 사업의 예비비 사용목적은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 증액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일정]

사업단계	추진일정
총사업비 증액(86억원→230억원) 반영 정부안 확정	'18.8.23.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당초) '18.8.20. ~ '18.11.27. (변경) '18.8.20. ~ '19.3.20.
실시설계 용역	(당초) '18.9.20. ~ '18.12.8. (변경) '18.9.20. ~ '19.6.1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평가 사전협의	(계획) '19.4~7월

자료: 산림청

지진및해일대응 사업은 울산·해남 지역에 해안방재림 10ha를 각각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70% 지원분인 14억원을 배정받았으나 2018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울산 해안방재림 설계비 3,900만원에 불과하고, 2019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 추진일정]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국비 (교부액)	지방비 (매칭규모)	공사기간	집행내역
울산광역시	700	300	'19.3.14. ~ '19.6.25	'18.12.26. 설계비 39 집행 '19.3.26. 선급금 439 집행 '19.6.27. 감리비 12 집행 준공금 920 집행
전라남도	700	300	'18.12.26. ~ '19.5.24	'19.4.15. 선급금 318 집행 '19.5.27. 준공금 470 집행

자료: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창원, 통영, 고성, 거제, 군산 지역에 예방나무주사, 훈증더미 수집·파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비 70% 지원분인 2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2018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억 1,200만원이다. 산림청은 2018년 11월말 보조금 교부 후 지자체 추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3월까지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산림청은 목적예비비 배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적시에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¹⁾은 경북 영주·예천에 이어 전북 진안에 국립 산림 치유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2022년 동안 총사업비 827억원(국비 662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2018년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예산 49억원 중 4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4,400만원을 이월, 29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4,900	4,900	0	0	4,900	465	1,444	2,991

자료: 산림청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연차별 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산림청	4,900	4,300	1,700	27,387	27,913	66,200
지자체	1,200	1,300	500	6,700	6,800	16,500

자료: 산림청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740-311

나. 분석의견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2018년에 용지보상 등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후속 절차가 순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기본조사 및 설계, 2019년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할 예정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에 용지보상 관련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기본계획 수립용역('18.10~'19.6)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18.12~'19.10)이 연내 완료되지 못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8.3.22. ~ 2019.6월 현재	토지매입	○ '18.3. 부지매입 관련 회의개최 ○ '18.3~6. 토지소유주와 3차례 협의 ○ '18.8. 토지 매도승낙서 접수 ○ '18.12.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 '19.1. 매수지 내 입목조사 ○ '19.3. 감정평가 완료 및 감정가격 안내
2018.10.29. ~2019.6.14.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계약('18.10.) - 1차 변경('19.4.) - 2차 변경('19.5.)
2018.12.27. ~2019.10.29.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20.4. ~2020.11.	실시계획 수립	
2021 ~2022	건축공사	
2023	개원 및 운영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계획된 기간 내에 조성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수립용역 체결, 용지보상 관련 협의 또는 수용절차 이행²⁾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본

2)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 이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에 대한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산림사업³⁾ 제도에 따라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부지조성·조경공사를 위하여 지방비 1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조성공사 전체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지방비를 확보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동산림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이하 "공동사업수행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이하 "공동산림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가. 현 황

남북산림협력 사업¹⁾은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및 대북지원용 양묘장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 사업 2018년도 예산액 3억 6,000만원 중 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은 국내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생산하는 기존 국립 양묘장과 별도로 북측 기후에 맞는 대북지원용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양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당초 2개년(2016~2017)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4개년(2016~2019)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18회계연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북산림협력	360	360	0	0	360	358	0	2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산림청은 북측 기후대에 맞는 양묘기술개발 등 대북지원용 양묘장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종자 및 묘목 직접 지원 외에 북측 양묘장 현대화 지원, 양묘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조합을 고려하여 대북지원용 양묘장에서 직접 생산·지원할 수종·물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²⁾ 인건비, 운송비, 기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양묘기술이전 및 북측 양묘장 시설 현대화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산림청은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533-304

2) 2019년 5월 말 기준 대북 묘목 지원수량 등은 미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북측의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년)」은 연간 약 17만ha를 조림할 계획이며, 산림청은 경제수 조림 밀도를 고려할 때 연간 약 5억본 정도의 묘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활착률이 높은 묘목³⁾을 직접 지원하여 양묘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북측 양묘수종은 잣, 낙엽송 등 제한적이며 유실수, 접목묘 등의 생산기술이 낮다고 설명하였으나, 대북지원용 양묘장의 2019년 시범운영 시 낙엽송 24천본, 밤나무 13천본, 리기다소나무 7천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유실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기존 국유양묘장 주요생산수종은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으로 2019년 시범운영 생산 수종과 유사하다.

산림청은 유실수 등 북측 수요를 고려한 수종 생산, 북측 기후대에 맞는 양묘 기술개발 등 대북지원용 양묘장의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양묘기술이전 진전 등으로 묘목 직접지원 수요가 감소할 경우 대북 지원용 양묘장의 대체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유양묘장 및 민유 지정양묘장 현황]

(단위: 개소, 천본)

기관	양묘장	주요생산수종	묘목생산량
계	87	-	50,727
국유양묘장	15	-	8,509
북부지방청	4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등	2,127
동부지방청	5	낙엽송, 소나무, 물푸레 등	2,882
남부지방청	2	소나무, 잣나무, 들메 등	1,091
중부지방청	2	낙엽송, 소나무, 해송 등	1,084
서부지방청	2	편백, 낙엽송, 소나무 등	1,324
민유 지정양묘장	72	-	42,218
경기도	11	낙엽송, 백합, 자작 등	2,896
강원도	10	낙엽송, 소나무, 자작 등	6,606
충청북도	7	소나무, 상수리, 낙엽송 등	5,051
충청남도	7	소나무, 편백, 낙엽송 등	8,328
전라북도	6	편백, 백합, 소나무 등	6,342
전라남도	13	편백, 백합, 황칠 등	5,467
경상북도	11	낙엽송, 편백, 자작 등	4,194
경상남도	5	편백, 헛개, 상수리 등	3,275
제주도	2	편백, 상수리, 황칠 등	60

자료: 산림청

3) 산림청에 따르면 북측 생산 묘목의 활착률은 30% 수준인데 반해 남측 생산 묘목의 활착률은 93% 수준이다.

가. 현 황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산림경영인증 사업¹⁾은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산림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행²⁾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 1억 6,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산림경영인증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22,920	22,920	0	0	22,920	22,920	0	0
산림경영인증	161	0	0	0	161	161	0	0

자료: 산림청

산림정책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경영인증림 관리 사업³⁾은 국유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임지를 개발·관리하였음을 인증하는 산림경영인증 취득·유지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국유림 약 53만ha의 산림경영인증 취득·유지를 위하여 2018년 예산 2억 7,900만원 중 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542-300의 내내역사업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3) 코드: 일반회계 1532-300의 내역사업

[2018회계연도 산림경영인증림 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림정책개발	3,740	3,740	0	0	3,740	3,702	0	38
산림경영인증림 관리	279	279	0	0	279	272	0	7

자료: 산림청

산림청은 종전 국제 NGO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산림경영인증을 획득하여 왔으나, 2018년 6월 한국산림인증제도가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e) 상호인정을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됨에 따라 FSC인증기간 만료 시 한국산림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취득하고 있다.

[산림경영인증제도 비교]

구분	FSC 산림경영인증	PEFC 산림경영인증	KFCC 한국산림인증
제도 운영국가	독일	스위스	대한민국
출범시기	1993	1999	2015
획득비용 (천원/ha)	26,125	-	10,406
갱신주기	5년	5년	5년
국내 취득현황 (개소, 천ha)	5개소, 264천ha	-	10개소, 274천ha

주: 1. 인증 취득비용은 보은국유림관리소의 '11년 FXD 취득비용 및 '18년 KFCC 취득비용을 기재한 것임

2. PEFC와 한국산림인증 간 상호인정(18.6)으로 획득비용 및 취득현황은 상호 동일함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산림청은 공·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인증 취득 독려방안을 마련하고, 산림경영인증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소비증진 등 인증 취득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말 기준 산림경영인증 면적은 국유림 53만ha, 사유림 7천ha로 전체 산림(630만ha)의 약 8.4%에 해당한다. 이 중 약 99%가 국유림이며, 사유림의 경우 4개소, 7천ha에 불과하다.

공·사유림에서 산림경영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펄프·목재 수출 시 산림경영인증이 필수인 경우가 많고 산림경영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는 목재 자급률 15%의 목재수입국으로 수출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소유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유인은 낮을 수 있다.

[연도별 산림경영인증 면적]

(단위: 천ha)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400	387	455	556	538
국유림	384	385	454	553	531
공유림	0	0	0	0	0
사유림	16	2	1	3	7

주: 2018년 말 기준 FSC인증 취득은 5개소, 26만ha, 한국산림인증 취득은 10개소, 27만ha임
자료: 산림청

산림경영인증 제도의 근거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⁴⁾에 따르면 제도 운영취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림청은 향후 국유림 외에 공·사유림에 대하여도 산림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산림인증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산림청은 대규모 선도경영단지 중심으로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림경영인증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산림인증 홍보비를 2020년 신규예산으로 요구·반영하여 산림경영인증 마크를 부착한 임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가. 현 황

국유재산관리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사유림 매수 사업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26%에서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의 2018년도 예산 548억원 중 538억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불용하였다.

임도시설 사업²⁾은 산림경영·관리의 필수적 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하고, 기존 임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은 임도시설 사업의 2018년도 예산 1,558억원 중 1,521억원을 집행하고 30억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관리	63,668	63,668	0	0	63,668	62,295	0	1,373
사유림 매수	54,788	54,788	0	0	54,788	53,796	0	992

자료: 산림청

[2018회계연도 임도시설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임도시설 합계	155,805	155,805	0	0	155,805	152,055	769	2,981
임도시설(생활)	82,988	82,988	0	0	82,988	82,988	0	0
임도시설(경제)	71,501	71,501	0	0	71,501	67,751	769	2,981
임도시설(제주)	700	700	0	0	700	700	0	0
임도시설(세종)	616	616	0	0	616	616	0	0

자료: 산림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1543-302

2)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1536-301, 1536-302, 1536-305

나. 분석의견

예산 편성 시 책정한 사유림 매수단가와 임도단가와 실제 단가 차이로 연례적으로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유림 매수단가와 임도단가를 현실화하고 계획 달성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유림 매수 사업의 경우 국유림 확대 계획 상 연도별 매수계획(25,000ha)에 비하여 실제 예산 확보(10,075ha)는 저조한 수준이며, 실제 매수단가는 ha당 860만원 수준으로 예산편성 단가인 ha당 500만원을 크게 상회하여 매수면적은 예산 편성 당시 계획의 60%인 6,028ha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6%대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사유림 매수단가는 2009년부터 10년 간 동결되어 지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유림 확대 계획 상 연도별 매수계획과 실적 비교]

(단위: ha)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면적	국유림 확대 계획	13,000	20,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예산편성	12,642	12,514	15,657	13,776	13,216	9,122	11,780	11,508	10,075	10,075
	실적	10,052	8,793	10,871	10,529	9,268	7,055	8,271	7,741	6,484	6,028

자료: 산림청

[경영임지 매입단가 및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단가	예산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실적	7.5	7.4	7.1	6.7	6.9	6.8	7.3	8.0	8.1	8.6
개별공시지가 증가율		△0.81	3.03	2.07	4.47	3.41	4.07	4.63	5.08	5.34	6.28

자료: 산림청, 국토교통부

임도시설 사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임도밀도는 3.3m/ha³⁾로 주요 임업선진국의 임도밀도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2000년 이후 증가추세⁵⁾를 유지할

3) 국유임도 4.03, 민유임도 3.08

경우 2030년까지 8.5m/ha의 목표밀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간 임도 확충실적을 살펴보면, 예산단가가 실제단가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어 매년 예산상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임도시설 예산편성 대비 확충실적]

(단위: km)

구분	평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775	721	808	809	728	774	810
실적	675	667	693	651	616	720	705

자료: 산림청

[연도별 임도단가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간선임도	예산	188	188	188	188	223	223	223	223	223	223
	실적	187	232	227	251	246	242	259	271	275	274
작업임도	예산	80	80	80	80	135	135	135	135	135	135
	실적	-	-	93	107	138	134	152	133	156	140
구조개량	예산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실적	52	54	55	57	51	52	60	67	63	60

자료: 산림청

예산단가를 실제단가와 괴리되게 편성할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산림청은 향후 사유림 매수단가와 임도단가를 현실에 맞게 편성하고 사업계획 상 사유림 매수 및 임도건설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일본 13m/ha, 캐나다 12m/ha, 독일 46m/ha, 오스트리아 45m/ha 등

5) 2000년 2.24m/ha → 2010년 2.61m/ha → 2017년 3.32m/ha

※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비전센터 임대료 수입 등의 자체수입 반영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64
2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산림인턴 사업의 취업률, 취업에 대한 영향 저조 등 개선 방안 강구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78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침을 위반한 무기계약 직을 차별한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 부적정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82
4	한국수목원관리원과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연구 기능의 차별화 필요 등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386



해양경찰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4억 8,600만원이며, 220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1.0%인 68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152억 3,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486	4,486	4,486	22,081	6,839	15,238	4	31.0

자료: 해양경찰청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3,044억 8,2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1조 2,60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62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9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68,744	1,268,744	1,304,482	1,260,303	16,234	27,945	96.6

자료: 해양경찰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5,300만원 (52.5%)이 증가한 68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6억 1,900만원 (31.0%)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5,220	4,486	4,486	6,839	2,353	1,619

자료: 해양경찰청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4억 4,100만원(△ 0.7%)이 감소한 1조 2,603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44억 7,700만원(2.0%)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235,826	1,268,744	1,268,744	1,260,303	△8,441	24,477

자료: 해양경찰청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해양경찰청의 자산은 3조 4,236억 4,100만원, 부채는 167억 7,9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4,068억 6,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05억 3,4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3,784억 4,300만원, 사회

기반시설 112억 8,300만원, 무형자산 103억 7,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0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11억 900만원(0.9%)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건물 및 선박항공기 등의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19억 7,100만원 증가, 장기임차보증금 유동성대체 등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40억 5,7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9억 9,600만원, 장기차입부채 101억 3400만원, 장기충당부채 6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6억 9,000만원(19.1%)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성금융리스부채 및 선수수익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15억 7,300만원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8,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423,641	3,392,532	31,109	0.9
Ⅰ. 유동자산	20,534	16,356	4,178	25.5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3,378,448	3,346,477	31,971	1.0
Ⅳ. 사회기반시설	11,283	12,768	△1,485	△11.6
Ⅴ. 무형자산	10,374	9,873	501	5.1
Ⅵ. 기타비유동자산	3,002	7,059	△4,057	△57.5
부 채	16,779	14,089	2,690	19.1
Ⅰ. 유동부채	5,996	4,423	1,573	35.6
Ⅱ. 장기차입부채	10,134	9,104	1,030	11.3
Ⅲ. 장기충당부채	649	562	87	15.5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406,862	3,378,443	28,419	0.8
Ⅰ. 기본순자산	1,661,821	1,661,821	-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269,712	1,227,675	42,037	3.4
Ⅲ. 순자산 조정	475,329	488,947	△13,617	△2.8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4,027억 4,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671억 4,200만원, 관리운영비 9,984억 9,000만원, 비배분비용 561억 5,200만원으로 구성되

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90억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146억 7,900만원(138.5%) 증가한 1조 4,027억 4,7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및 경비 증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990억 5,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해상경비및안전활동 프로그램(3,265억 3,800만원)과 정비창운영 프로그램(298억 4,500만원), 해양오염관리 프로그램(94억 9,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869억 1,600만원과 경비 3,115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3억 5,2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8,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67,142	181,795	185,347	102.0
가. 프로그램 총원가	367,142	181,795	185,347	102.0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998,490	399,439	599,051	150.0
III. 비배분비용	56,152	8,371	47,781	570.8
IV. 비배분수익	19,038	1,537	17,501	1,138.6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402,747	588,068	814,679	138.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02,747	588,068	814,679	138.5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3조 3,784억 4,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조 4,068억 6,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84억 1,900만원(0.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8,146억 7,9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1억 2,2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8,149억 3,7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

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1조 4,493억 3,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70억 8,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36억 1,800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감 25억 2,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378,443	3,347,161	31,282	0.9
II. 재정운영결과	1,402,747	588,068	814,679	138.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442,255	627,318	814,937	129.9
IV. 조정항목	△11,089	△7,967	△3,122	△39.2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406,862	3,378,443	28,419	0.8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지방관서인건비 사업이 있다. 지방관서인건비 사업은 해양경찰 증원분의 일부인 31억원이 감액(6,354억원→6,323억원)되었다.¹⁾

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해양경찰청은 ① 해양 영토 경비활동,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 ②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및 해양재난 대비를 통한 **해양재난 안전관리**, ③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입·출항 관리 등 **해양교통질서 확립**, ④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정보 활동과 국제성 범죄 단속을 통한 **해양범죄 수사**, ⑤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해양오염 예방·점검 등 **해양오염 예방·방제**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14년 항만 VTS센터 운영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 5월 현재 연안·항만 VTS센터의 관제인력은 해양경찰청 소속 인원과 해양수산부 소속의 파견 인원이 혼재하고 있어 해양수산부 소속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 만료 이전에 조속히 인력을 통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함정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도 검사 결과를 노후함정대체건조 및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VTSG구축운영 사업 인력통합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VTSG구축운영 사업¹⁾은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요 항만·연안해역에 선박을 탐지하거나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주요 장비로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 초단파 무선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도 VTS 구축운영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53억 9,400만원 중 12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VTS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VTSG 구축 운영	15,394	15,394	0	0	15,394	12,388	2,554	452
VTSG 구축	1,000	1,000	0	△113	887	413	434	40

자료: 해양경찰청

중전에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을 관제하는 항만 VTS는 해양수산부 소관,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관제하는 연안 VTS는 해양경찰청 소관이었으나 2014년 항만 VTS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여 통합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 말 기준 항만 VTS센터 15개소, 연안 VTS센터 5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현재 구축 중인 군산·목포 2개소를 포함하여 연안 VTS센터 6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4138-303

나. 분석의견

해양경찰청은 VTS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VTS 관제인력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년 8월 기준 관제인력은 현원 413명으로 해양경찰청 소속은 299명, 해양수산부 소속은 114명²⁾이며,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이 318명, 경찰직 공무원이 95명이다. 관제인력의 소속과 신분의 상이하게 구성되어 구성원의 소속감 고취³⁾, 명령체계 일원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TS 관제인력 일원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⁴⁾ 부처 간 협의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르면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2019년 11월 해양수산부 파견공무원 중 78명의 파견기간이 5년에 도달하여 소속 변경 또는 복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까지 파견공무원의 소속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처 간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관제인력이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일원화될 경우에도 관제업무에 계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⁵⁾ 항만관리주체에 입출항선박 정보 공유 등 업무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해양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다.

3) 해양경찰청이 2018년 수행한 「해상교통관제(VTS) 인력 효율적 증장기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관제인력 37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과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6.9%, 신분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과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2%로 나타났다.

4) 2017년 국정감사,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되었다.

5) 해양수산부 소속 관제사와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관제사는 근무기간 동안 관제업무만을 담당하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직 공무원인 관제사는 수사·구조 등을 담당하는 다른 보직을 오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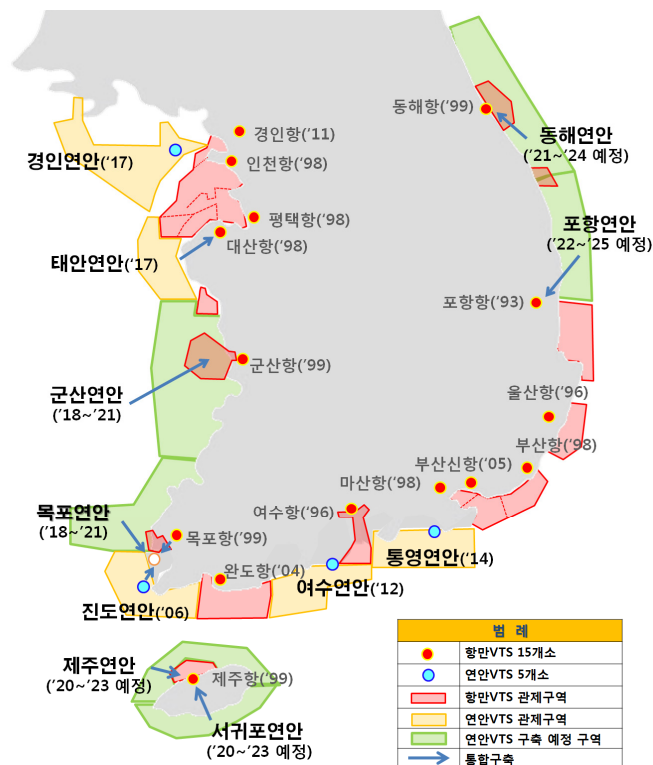
[VTS 관제인력 일원화 주요 추진경과]

일자	추진경과
2014.11월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간 항만 VTS 공동운영 업무협약서 체결
2015.5월~8월	관련부처 협의 결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검토 합의
2015.7월~2017.3월	항만 VTS 운영협의회 3회 및 정책협의회 1회 개최
2017.11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협의 실시하였으나 합의 미도출
2018.11월	해양수산부 과건관제사 과건기간 관련 업무협의
2018.12월	해양수산부 과건관제사 대상 간담회 실시

자료: 해양경찰청

둘째, 군산연안·목포연안 VTS센터 구축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TS 구축 현황 및 계획]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5년까지 연안 VTS센터 6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군산과 목포에 연안 VTS센터를 구축 중이다. 군산연안 VTS센터는 군산항 VTS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사용하고, 목포연안 VTS센터는 관제센터를 신축하여 진도연안·목포항 VTS센터와 공동 사용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각각 105억원, 16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2021년이다. 2018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4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다.

군산연안·목포연안 VTS구축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4월말 공고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 8억 2,600만원의 5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였다. 서해지역 해상관제를 담당할 VTS센터 구축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신축 센터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제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희망자 중 VTS 관제경험이 있는 자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순환보직으로 관제·수사·구조·조업 감시 등에 업무에 종사하여 전문성 축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기존 근무인력의 활용을 포함한 업무 숙련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함정계획정비 사업¹⁾은 정비기준 시간에 따른 엔진 분해수리 및 연간 함정수리 계획에 의거한 기본정비 및 응급수리를 수행하여 경비함정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경찰청은 함정계획정비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87억 5,200만원 중 276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300만원을 이월, 3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함정계획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함정계획정비	28,300	28,300	452	0	28,752	27,611	833	308

자료: 해양경찰청

나. 분석의견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노후함정의 수리계획 또는 대체건조계획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노후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계획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의 경우 20년, FRP선²⁾과 알루미늄선의 경우 15년으로 정하고, 제5조는 내구연한에 도래한 함정에 대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³⁾에 1억원, 함정정비유지 사업⁴⁾에 7,6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함정 7척, 6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4231-301

2) 선체의 재질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함정

3) 코드: 일반회계 4131-301

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함정계획정비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해 노후함정 3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내구연한 도래 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 현황]

(단위: 백만원, 척)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부사업	함정계획정비	함정정비유지	노후함정 대체건조	함정정비유지	함정계획정비
비목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액	0	0	100	76	0
집행액	45	22	98	71	60
검사 함정 수	1	2	7	6	3

주: 2014, 2015, 2018년도에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관련 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함
자료: 해양경찰청

[2018년말 기준 내구연한 도래 함정의 안전도 검사 실시 현황]

(단위: 척)

구분	실시 함정	미실시 함정
강 선 (선령 20년 기준)	13	23
FRP선 / 알루미늄선 (선령 15년 기준)	6	1
합계	19	24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14~2018년 동안 총 19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말 기준 내구연한에 도래한 함정 43척 중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함정은 24척(55.8%)에 달한다. 해양경찰청은 함정계획정비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내구연한 도래 함정의 노후 정도, 정비 일정⁵⁾ 등을 고려하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검사 대상 함정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정 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을 시정요

4) 코드: 일반회계 4135-301

5) 내구연한 도래 함정이 계획정비 등을 위하여 부산에 위치한 해양경찰정비창에 입고될 때 안전도 검사를 함께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구하였음에도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8년 예산에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안전도 검사 결과]

연도	대상함정	선박 종류	선령	검사등급		
				선체	기관	전기
2014	1501함	강선	32년	4등급	4등급	4등급
2015	P-117정	FRP선	23년	4등급	4등급	4등급
	P-113정	FRP선	23년	5등급	5등급	5등급
2016	301함	강선	29년	4등급	4등급	4등급
	303함	강선	29년	5등급	4등급	4등급
	P-118정	FRP선	22년	4등급	4등급	4등급
	P-119정	FRP선	22년	4등급	3등급	3등급
	방제9호	강선	27년	5등급	5등급	4등급
	방제10호	강선	27년	4등급	4등급	4등급
	105정	강선	25년	5등급	4등급	4등급
2017	109정	강선	24년	5등급	4등급	4등급
	T-01정	강선	26년	5등급	5등급	4등급
	T-02정	강선	25년	5등급	5등급	4등급
	방제13호	강선	23년	5등급	4등급	4등급
	P-121정	알루미늄선	21년	5등급	4등급	4등급
	P-122정	알루미늄선	21년	5등급	4등급	4등급
2018	300함	강선	25년	5등급	4등급	4등급
	103정	강선	25년	4등급	4등급	4등급
	106정	강선	24년	5등급	4등급	4등급

주: 검사 결과는 1~5등급으로 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자료: 해양경찰청

2014~2018년 실시한 안전도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 항목(선체·기관·전기)에서 4~5등급을 받았으며, 일부 함정의 경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운항정지 및 퇴역예비 함정 지정 요청 및 운항정지 승인⁶⁾은 3건이다.

6)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6조(내구연한 도래 함정의 운항)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도 검사결과 운항이 불가하다고 판명된 함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안전운항을 위한 수리를 요청하거나 운항정지 및 퇴역예비 함정 지정을 요청하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내구연한 도래 함정의 수리 또는 운항정지 처분 현황]

(단위: 척)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해양경찰서장	안전운항을 위한 수리 요청	1	2	7	6	3
	운항정지 및 퇴역예비 함정 지정 요청	0	0	0	0	1
해양경찰청장	운항정지 승인	0	0	0	0	2

자료: 해양경찰청

2019년 기준 내구연한에 도래하였으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함정은 총 37척이나 안전도 검사를 위한 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해양경찰청은 2019년도 안전도 검사 실시 계획은 100톤급 함정 총 3척으로, 2018년과 마찬가지로 함정계획정비 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반영하여 내구연한에 도래한 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전도 검사 결과를 수리계획 및 대체건조계획에 반영하여 함정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복지역량강화 사업¹⁾ 중 마음돌봄 프로그램은 사건·사고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액은 3억 600만원이며 해당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복지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복지역량강화 사업	5,671	5,671	64	170	5,905	5,815	0	90
마음돌봄 프로그램	306	306	0	39	345	345	0	0

자료: 해양경찰청

나. 분석의견

불법조업 어선 단속, 수색구조 등 고위험 상황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의 특성상 심리상담 및 치유 필요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심리상담 이용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직무 성격에 따라 우선 대상자²⁾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우선 대상자의 경우 2년 주기, 그 외의 경우 4년 주기로 부서별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연도 상담 대상자가 아닌 직원 중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7231-302

2) 공상직원, 구조대, 수사·형사경찰관, 해양특수기동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수 있다. 주기적 상담 대상자에 대하여는 상담사가 경찰서, 파출소, 함정 등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하며, 상담 희망자의 경우 지정 상담센터(전국 245개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8년 마음돌봄 프로그램 이용자는 우선 대상자 552명, 우선 대상 외 상담자 1,957명, 상담 희망자 193명으로 총 2,702명(현원의 25.6%)이다.

[2018년도 마음돌봄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우선 대상자 (해양특수기동대, 중양해양특수구조단)	우선 대상 외 상담자 (서해청, 서해청 소속기관 및 교육원)	상담 희망자
552	1,957	193

자료: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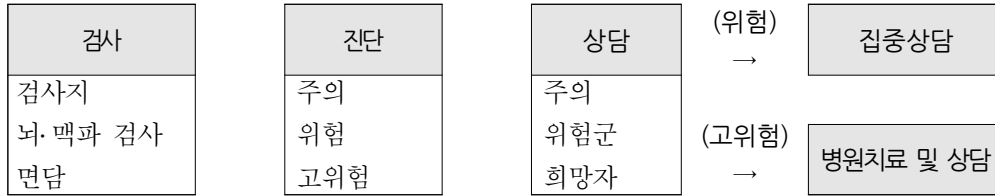
현행과 같이 2년 또는 4년 주기 상담 시 보직변경 등에 따라 적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주기적 상담 대상이 아닌 자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한계, 함정 탑승일정 등으로 심리상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심리상담 주기를 단축하는 등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경우 상주 상담사를 채용하고, 소방청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심리상담을 시행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비교]

구분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최초운영	2014년	2012년	2015년
정원	약 1만명	약 12만명	약 5만명
상담주기	전 직원 4년 주기	없음	전 직원 2년 주기
2019예산	3억원	30억원	42억원 (정부 27억, 지자체 15억)
주요사업	○ 희망자 자발상담 ○ 우선대상자 상담	○ 희망자 자발상담 ○ 충격사건 경험자 의무상담 ○ 마을돌봄 강사 양성 등	○ 소방서별 통합교육 ○ 개인별 1:1상담 ○ 심층심리상담 실시

자료: 해양경찰청

[마음돌봄 프로그램 심리상담 절차]



자료: 해양경찰청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으로 진단된 경우 병원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약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2016년~2018년 동안 실제 병원 진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없다. 해양경찰청은 고위험 진단자에게 병원치료와 상담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부정적 사회인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병원 진료를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2016~2018년도 병원치료 이용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2016	2017	2018
병원치료 인원	0	0	0
(고위험군 해당 인원)	(4)	(6)	(18)
협약 병원 수		18	13

자료: 해양경찰청

현재 사업의 주된 내용이 1회적 상담 제공에 그치고 있어 외상후스트레스 치유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진단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자 또는 공상자·재난현장 출동자 등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1

현황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2017.3.21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2017.7.7부터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2018.8.6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위원회를 해산하고 2018.11.6 잔존사무처리를 완료 후 청산하였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과]

일자	경과	비고
2017.7.7	○ 조사개시 결정 ¹⁾ (활동기간 2017.7.7~2018.1.6)	○ 2017.7.13 위원회 활동비용으로 예비비 115억 4,400만원 배정
2017.10.20	○ 활동기한 4개월 연장 결정 (활동기간 2018.1.7~2018.5.6)	○ 2018.1.17 위원회 활동비용으로 예비비 30억 8,300만원 배정
2017.10.27	○ 세월호 선체직립 추진 결정 (2017.12.29 선체직립용역 입찰공고)	○ 2017.12.14 선체직립 비용으로 예비비 176억 5,200만원 배정
2018.5.7	○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 활동 ²⁾ (2018.5.7~2018.8.6)	○ 2018.1.17 종합보고서 작성기간은 조사 종료 후 3개월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 통보 ○ 2018.5.23 위원회 활동비용으로 예비비 15억 4,600만원 배정
2018.11.6	○ 잔존사무처리 완료 ³⁾ (2018.8.7~2018.11.6)	

자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하정희 예산분석관(jhha@assembly.go.kr, 788-4631)

- 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로 2억 2,752만원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228	228	0	0	100.0

자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2017~2018년 기간 동안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2017년에 2차례, 2018년에 2차례 배정받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에는 7월 13일 위원회 활동비용으로 예비비 115억 4,400만원을, 12월 14일 선체직립 비용으로 예비비 176억 5,200만원을 배정받고 인건비 10억 9,100백만원, 기본경비 18억 4,200백만원, 사고원인조사 17억 300만원 등 48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선체직립 비용 전액⁴⁾ 등 220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없고, 1월 17일과 5월 23일에 위원회 활동비용으로 각각 30억 8,300만원, 15억 2,400만원을 배정받았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66억 5,396만원이다. 선체직립 용역 175억 6,700만원 등 252억 4,8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등 14억 57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로 이월액은 없다.

[2018회계연도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26,654	25,248	0	1,406	94.7

자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4) 선체직립 용역을 2017.12.29.에 입찰공고함에 따라 예산 176.5억원 전액이 이월되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4억 7,464만원⁵⁾, 기본경비 12억 4,704만원, 사고원인분석및조사 38억 5,841만원, 세월호선체직립 175억 6,700만원 등을 지출하였다.

[단위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상세 집행내역
기관운영	인건비	1,534	1,475	59	○ 인건비(총액) 14억 7,464만원
	기본경비	1,742	1,247	495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2억 6,709만원 ○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9억 7,995만원
세월호 선체조사지원	사고 원인조사	21,712	21,425	287	○ 사고 원인 분석 및 조사 38억 5,841만원 ○ 세월호 선체직립 175억 6,700만원
	미수습자 수습	474	255	219	○ 인양과정 지도 점검 2억 5,528만원
	세월호 선체 처리	243	219	24	○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 수립 1억 9,150만원 ○ 세월호 선체활용 여론조사 2,728만원
	자료 보존서고 설치 운영	189	66	123	○ 자료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 6,596만원
	종합보고서 발간 등	759	561	198	○ 종합보고서 기획 및 발간 4억 1,921만원 ○ 위원회 활동백서 기획 및 발간 1억 4,192만원

자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5) 단위사업인 인건비 사업의 지출액이며, 기본경비 등 다른 사업에 계상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비목은 상임위원 3명과 별정직공무원 35명 등에 대해 총 15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하 정 희 예산분석관
남 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윤 혜 정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88-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